

www.mifaff.go.kr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

2008



농림수산물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ontents

- ③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08.2.12) / 1
- ③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08.4.15) / 21
- ③ DDA 농업협상 및 민감품목 소비량데이터 제출관련 동향('08.5.9) / 41
- ③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08.5.23) / 51
- ③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대응('08.7.14) / 71
- ③ WTO/DDA 각료회의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08.7.28) / 113
- ③ WTO/DDA 농업협상 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08.8.8) / 131
- ③ DDA/FTA 농업협상 동향('08.9.30) / 153
- ③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 동향('08.12.9) / 169

'08. 제1차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2.12)

DDA / 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I. WTO / DDA 농업협상 동향

II. FTA 농업협상 동향





I. WTO / DDA 농업협상 동향

1.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개요

- ▶ DDA 협상은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 * 다자간 무역협상 :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상과는 달리 151개 WTO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
 -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개발문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라운드(round)’라는 명칭 대신에 ‘개발아젠다(development agenda)’로 명명
 -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협상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협상방식(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을 채택
 - 당초에는 2004년 12월 협상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수립하였으나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중단되는 고비를 겪기도 하였고, 현재는 2008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
 - ※ 2004년 8월 기본골격 채택, 2005년 12월 향후 협상일정 채택,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 배포, 2008년 2월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 ** 세부원칙(Modalities) :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등을 포함한 협상결과로, 각 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 이행계획서(양허안, C/S=Country Schedule)를 작성하게 됨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시장접근 분야

가. 관세감축

- ▶ 관세율을 4개구간으로 나누고,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감축율이 커지는 구간별 감축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 관세 75%이상인 품목은 [66] [73]% 감축이, 개도국의 경우 관세 130% 이상인 품목은 [44] [49]%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UR협상 평균관세감축률(선진국 36%, 개도국 24%)보다 높은 수준

	선진국		개도국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20%	[48] [52]%	0~30%	[32] [35]%
2구간	20~50%	[55] [60]%	30~80%	[37] [40]%
3구간	50~75%	[62] [65]%	80~130%	[41] [43]%
4구간	75%이상	[66] [73]%	130%이상	[44] [49]%

[세부원칙 수정안('08.2)]

-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이행기간 8년
 -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 36%

나. 민감품목

- ▶ 일부 중요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 감축율 대비 1/3, 1/2, 2/3 만큼 감축을 적게 할 수 있으며, 관세감축 예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
- TRQ 증량수준은 선진국 기준시 소비량대비 [3], [6]%, 개도국 기준시 [2],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명시적인 관세상한이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고관세 품목에 대하여 저율관세수입물량 (TRQ)을 추가 증량하는 방안을 논의 중

[세부원칙 수정안('08.2)]

- 관세 감축 후 100%이상 관세 비중이 4%이상일 경우 민감품목의 TRQ []% 추가 증량
 - * 관세상한 :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설정할 수 없도록 상한치를 설정하는 것
 - ** 저율관세수입물량 : 수입기회를 주기위해 기준물량 이하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기준물량 이상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

다. 특별품목

-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필요를 감안하여 일부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감축율보다 낮은 감축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세부원칙 수정안('08.2)]

- 특별품목 개수는 최소 8%, 최대 [12], [20]%, 특별품목을 2개 구간으로 분리하고 구간별 평균 감축률은 각각 [8], [15]%, [12], [25]%
 - 감축면제(전체 세번의 [8]%)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면제 불가 대안도 동시에 제시

라. 열대작물

- ▶ 열대작물을 수출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반품목보다 더 큰 감축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세부원칙 수정안('08.2)]

- ① 무세화, 85% 감축(관세 25% 기준) ② 무세화, [66][73]%(관세 10% 기준)감축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쌀·고추·인삼 등이 포함된 열대작물 목록 제시)

<참고> 감축후 관세율 분석(예시)

- 개도국 감축률 적용, 구간별 감축(특별품목) - 민감품목 - 경사관세 - 열대작물 - 관세상한 순으로 적용

1) 고추

HSK	품명	관세율	감축후	민감품목		기타이슈		관세상한 (100%)	비고
				감축후	TRQ증량(톤)	경사	열대		
0709.60.1000	고추류(단고추/벨타입/신선/냉장)	270	144.5 (46% 감축)	188.2	5,831	-	28.2	(100)	현재 TRQ
0709.60.9000	고추류(기타/신선/냉장)			(30.36%	(소비량의 3%)		(85% 감축)		
0904.20.100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않은것)			감축, 1/3	* C/S TRQ :				
0904.20.200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것)			deviation)	7,185				
0711.90.5091	고추의 것(일시저장처리)								

※ 고추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 : 229.5% (15% 감축 가정)

2) 마늘

H S K	품 명	관세율	감축후	민감품목		기타이슈		관세상한 (100%)	비고
				감축후	TRQ 증량	경사	열대		
0703.20.9000	마늘(신선/냉장/기타)	360	194.4 (46% 감축)	250.9 (30,36% 감축, 1/3 deviation)	7,604 (소비량의 3%) ※ C/S TRQ : 14,467	-	-	(100)	현재 TRQ
0703.20.1000	마늘(신선/냉장/탈피)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처리)								
0712.90.1000	마늘(건조)								

※ 마늘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 : 306.0% (15% 감축 가정)

국내보조 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개별보조(AMS, De-minimis, Blue box)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이중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보조금의 구성 내용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감축면제보조 (De-minimis)	④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 (Blue Box)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DDA협상에서 새로 생긴 개념으로 AMS, De-minimis, Blue box 등 개별보조를 합산한 총액
 -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금
 - ③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무역왜곡효과는 있으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
 - ④ 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Blue box) : 무역왜곡효과는 있으나 생산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
 - ⑤ 허용보조(Green box)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
- OTD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속한 기타 구간의 경우 선진국은 50 또는 60%, 개도국은 34 또는 40% 감축이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기준 적용시 현행 OTDS한도 56,454억원에서 49,582 ~ 55,119억원으로 줄어들 전망

OTDS 구간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600억불 이상 (EU)	[75] [85]%	선진국의 2/3 감축
100~600억불 (미·일)	[66] [73]%	
100억불 이하 (기타)	[50] [60]%	

나. 감축대상보조(AMS)

- ▶ AM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속한 기타 구간의 경우 선진국은 45%, 개도국은 30% 감축이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기준 적용시 현행 AMS 14,900억원에서 10,43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

AMS 구간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400억불 이상 (EU)	70%	선진국의 2/3 감축
150~400억불 (미·일)	60%	
150억불 이하 (기타)	45%	

[세부원칙 수정안('08.2)]

- OTDS 및 AMS 감축 관련 선진국 이행기간 5년(개도국 이행기간 8년)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선진국은 농업생산의 5%, 개도국은 10%까지 인정되는 현행 De-minimis를 선진국의 경우 [50] [60]%, 개도국의 경우 [34] [40]%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기준 적용시 현행 De-minimis 52,346억원에서 31,408~35,072 억원으로 줄어들 전망

라. 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Blue box)

- 생산제한 요건이 없는 새로운 기준의 Blue box가 도입될 예정이며, 선진국의 경우 '95 ~ '00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2.5%, 개도국의 경우 5%로 상한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

마. 허용보조(Green box)

- 수혜자격 기준을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기간 변경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

[세부원칙 수정안('08.2)]

- 예외적인 기준기간 변경 요건 중 '예산제약 조건' 삭제

수출경쟁 분야

-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

[세부원칙 수정안('08.2)]

- 개도국은 2016년까지 철폐(단, 수출물류비는 2021년까지 유지 가능)

3. 최근 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 ▶ '07. 7월 의장 세부원칙 초안 제시 이후 '08년 1월까지 집중적인 다자협약이 진행되었으며,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황
- '08. 2월 의장은 그 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세부원칙 수정안을 배포하였고 동 수정안은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
 - 라미 WTO 사무총장은 '08년내 DDA 협상 종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고위급 또는 각료급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
 - ※ 향후 협상일정에 대하여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08년 미국 대선 등 회원국의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08년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 ▶ 2008년 말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
- 이해관계가 유사한 수입국그룹 (G10), 개도국그룹 (G33)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

-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농산물 분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작성에 대비

- ▶ 세부원칙 타결시 본격 진행될 양자협상에 대비 국별·품목별 입장 및 대응전략을 준비
 - 국별 양허협상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

- ▶ 국회·언론·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노력 강화

참고 ①

세부원칙 수정안과 초안 비교

쟁 점		세부원칙 초안('07년 7월)	세부원칙 수정안('08년 2월)												
시 장 접 근	관세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66] [73]</td> </tr> <tr> <td>50% ~ 75%</td> <td>[62] [65]</td> </tr> <tr> <td>20% ~ 50%</td> <td>[55] [60]</td> </tr> <tr> <td>20%이하</td> <td>[48] [5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 구간경계 30/80/130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 [73]	50% ~ 75%	[62] [65]	20% ~ 50%	[55] [60]	20%이하	[48]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8년) 구간경계 및 감축률은 초안과 동일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 36%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 [73]													
	50% ~ 75%	[62] [65]													
	20% ~ 50%	[55] [60]													
	20%이하	[48] [52]													
관세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나, 감축 후 관세가 100%이상 세번이 5%가 넘는 경우 TRQ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 세번이 4%가 넘는 경우 민감품목의 TRQ 증량 													
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세번의 [4] 또는 [6]%(개도국 [5] [8]%) 대우 : 국내소비량의 [3] [6]% TRQ증량 (개도국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및 대우는 초안과 동일 													
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원칙 초안에서는 논의방향만 제시(의장 작업문서('08.1) : 특별품목 개수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는 [8] [20]%, 관세감축 면제(세번의 8%)가능성 제시 													
열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원칙 초안에서는 논의방향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대작물 목록 제시(쌀, 고추 등 포함) 													
국 내 보 조	무역왜곡보조 총액 (OTDS)1) 감축대상보조 (AMS)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75][85]</td> <td>[70]%</td> </tr> <tr> <td>미국·일본</td> <td>[66][73]</td> <td>[60]%</td> </tr> <tr> <td>그외 국가</td> <td>[50][60]</td> <td>[45]%</td> </tr> </tbody> </table>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그외 국가	[50][6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OTDS 구간별 감축률은 초안과 동일 AMS 구간별 감축률 괄호 ([]) 제거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8년)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그외 국가	[50][60]	[45]%													
허용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보조 수혜자격기준 강화(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변경) 단, 예산제약 등을 조건으로 예외적인 기준기간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격기준 강화 및 기준기간 변경 가능성은 초안과 동일 기준기간 변경 시 예산제약 조건 삭제 													
수출 경쟁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2013년까지 철폐 (개도국 []까지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 2016년 철폐 (단, 수출물류비는 2021년까지 유지 가능) 												

1)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 : DDA 협상에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OTDS=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e-minimis)+블루박스 금액을 합산한 개념임

참고 ②

DDA 협상 경과

- ▶ '01년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 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 당초 협상일정 :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 3)
 -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 9, Cancun 각료회의)
 - ③ 협상완료('04말)
- ▶ '03.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 7월말까지 우선 기본 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 8. 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 '05.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 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 유지
- ▶ '06.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종단을 선언
- ▶ '06.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진전을 위해 두 차례 의장 문서를 제시('07.4월, 5월)
- ▶ '07.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 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 ▶ '07.7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 세부원칙 초안 배포
- ▶ '08.2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 ※ 동 수정안은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

참고 3

UR · 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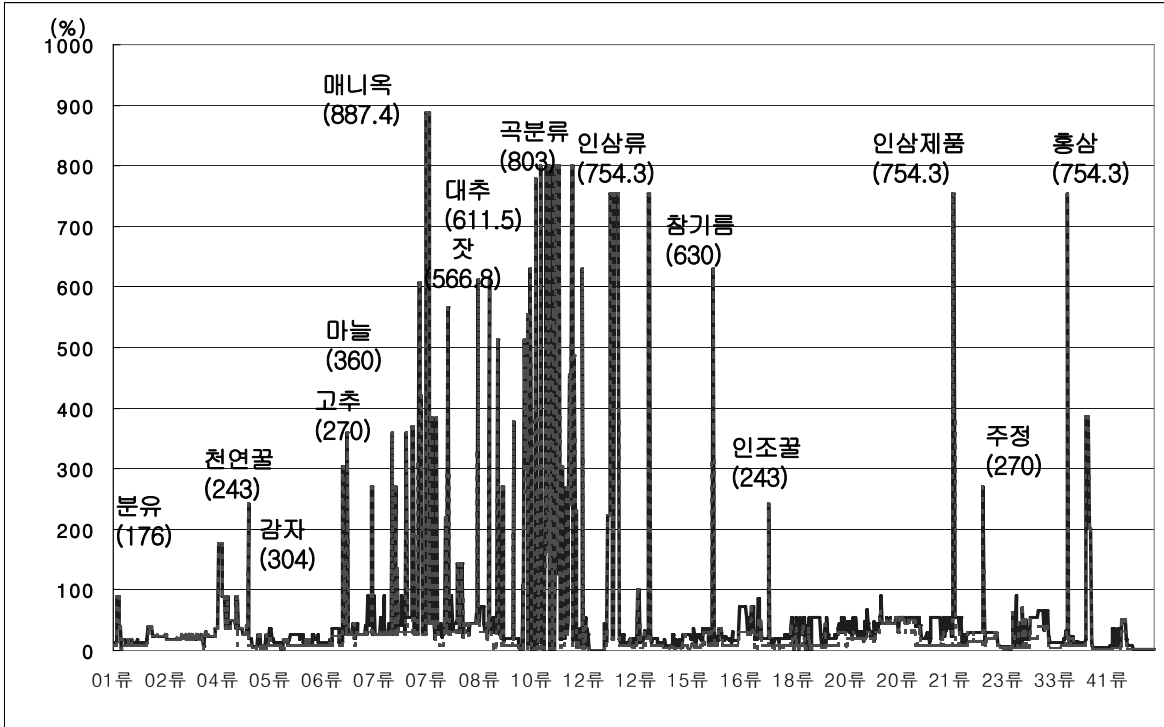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라셀각료회의 결렬) ※ 브라셀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2003.2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쿤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 : 시한연장) ※ 홍콩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2006.11월 (라미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7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초안 제시) 2008.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미 · EU 합의 (블레어하우스합의*)	1992.1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어하우스 합의'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 (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참고 4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구조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구조 |

양허관세	품목수	품목예시
500%이상	46	매니옥, 곡분류, 참깨, 인삼류, 맥주보리 등
200~499	62	대두, 전분,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 밤 등
100~199	18	분유, 감귤, 양파, 보리분, 사료용근채류 등
50~99	189	오렌지, 과일혼합주스, 면류, 당면, 고추장 등
40~49	132	과일류, 쇠고기, 버섯류, 수박, 오이, 당근 등
30~39	147	치즈,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등
20~29	249	닭고기, 냉동채소류, 돼지고기, 식용유 등
10~19	381	곡물조제품, 물, 과당, 포도당, 과수묘목 등
0.1~9.9	183	섬유원료, 원피, 모피, 밀, 당밀류 등
0	29	종자류, 가축정액 등
미양허	16	쌀 관련 품목
계	1,452	



II. FTA 농업협상 동향

1. 한·EU FTA

가. 추진경과

- ▶ 협상 출범('07.5.6) 이후 6차례 협상을 개최했으며, 양측 입장차가 큰 상품 양허협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 6차 협상(1.21~2.1, 서울)에서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 논의
 - * 제7차 협상은 4월중 개최 예정

| 일정별 주요 논의 내용 |

일 정	주 요 내 용
제1차 협상 ('07.5.7-11, 서울)	○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 논의
제2차 협상 (7.16-20, 브뤼셀)	○ 상품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
제3차 협상 (9.17-21, 브뤼셀)	○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 품목별 협상 시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시
제4차 협상 (10.15-19, 서울)	○ 품목별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민감품목 중심으로 양허안 작성 배경을 설명 - 곡물, 과일, 채소 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다양한 예외적 조치를 요구, 특히 돼지고기, 낙농품 등 일부 축산물은 국내 업계의 불만을 설명 ○ EU측 수출보조금 문제를 지적
제5차 협상 (11.19-23, 브뤼셀)	○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공산품 원산지 기준이 쟁점으로 부각됨 ○ 농산물은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에 대한 우리측 요구사항을 양허 개선안과 함께 묶어 조건부 일괄타결안을 제시
제6차 협상 ('08.1.28-2.1, 서울)	○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도입에 합의하고, 기존의 WTO 특별긴급관세(SSG)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 지역화 인정 절차, 일반 농식품 지리적 표시 등록 방식에 논의 일부 진전

나. 제6차 협상 주요결과

▶ 상품 · 무역구제

- 우리가 제안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조항을 EU측이 수정 의견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원안대로 합의함
 - ASG 적용 품목은 사전에 정한 발동물량을 초과해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관세를 자동으로 높이기로 합의
 - 다만, ASG 발동기준, 발동세율 등 품목별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WTO 농업협정의 특별긴급관세(SSG), 수입부과금(mark-up) 등 WTO 협정상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추진

▶ 위생 · 검역(SPS)

- 지난 협상에서 협정문의 대부분 조항에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며, 이번에는 지역화 인정,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를 주로 논의
- 우리는 EU측이 5차 협상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우리 의견을 반영한 재수정문안을 작성하여 제시
 - 지역화 인정절차 관련 문안*은 EU측 취지와 근접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인정 절차를 마련하되, 2년 정도 상호 이해 제고 활동(세미나개최 등)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
- 육류 수출작업장은 EU측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여 우리측이 전면 삭제를 요구,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원산지 기준

- 신선 농산물(1~14류)의 경우 자국에서 기른 것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양측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
- 우리는 가공식품(15~24류)의 대EU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도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 아직 EU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다음 임시회의에 논의 예정(3월초)

▶ 지리적 표시(GI)

-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GI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품목의 범위에 관해서만 다소의 진전

- 양측은 일반 농식품의 경우 각기 상대국에 GI 보호를 요청하는 품목요약서를 상호 제공하고, 문제가 없으면 각자 해당 법규*에 따라 등록한 후 보호하기로 합의
- * 우리는 일반 농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주류는 주세법으로 보호
- 포도주·증류주는 EU측의 보호품목이 우리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순차적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
-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EU에 제공할 예정

▶ 국가보조(state aid)

- 양국이 향후 지급을 금지하는 악성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모든 농업관련 보조금은 동 협정문이 규정하는 금지대상 보조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다. 평가 및 대응방향

- ▶ 이번 협상은 중요한 쟁점 분야인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분야 협상이 개최되지 않아 외견상 큰 진전은 없었음
 - 입장 차이가 큰 공산품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 우리측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EU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종료
- ▶ 상품 이외 분야 협정문 논의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었으며, 협상 마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단계임
 -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EU측이 구체적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우리도 최종단계 전략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
 - EU측이 관심품목 리스트를 제시하면 곧 품목 담당자 및 업계와 협의를 개시하고, 우리측 최종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
 - EU측 요구는 주요 품목에는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하라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
 - EU측이 수용하겠다고 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 등 예외적 조치 운영을 위한 상세 사항도 재검토 추진
 - 위생·검역 분야는 작업장 승인과 관련한 우리 입장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3월 이전 EU측이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타결을 시도해 올 가능성에 대비 필요
 - 지리적 표시는 보호수준 및 상표와의 관계에 관해 특허청과 아직도 이견이 있으므로, '08. 2월말까지 우리 입장을 확정할 필요

2. 한·멕시코 FTA

▶ '05. 9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SECA* 협상 추진에 합의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

▶ '06. 2월 협상개시 후 3차례 SECA 협상 진행

- 당초 '06년 타결 목표로 SECA협상 추진중 제3차 협상('06. 6월) 이후 양허의 범위에 있어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협상 중단
- 우리측이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공산품의 일부만을 포함한 양허안 제시

▶ '07. 7월 멕시코측이 SECA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 추진을 희망하여 양국은 제1차 FTA협상 개최('07. 12. 5~7)

- 이번 협상에서는 멕시코 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을 검토하고, 양허협상 일정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 제2차 협상은 '08. 3월중 서울에서 잠정 개최 예정

- 상품양허 협상에 대비, 멕시코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 대멕시코 농산물 수입실적('06) : 4천만불

* 주요 수입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맥주, 데킬라, 커피 등

3. 한·캐나다 FTA

가. 추진 현황

- ▶ '05.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협상 진행
 - 두 차례 상품분야 실무협상('07.6월, 9월) 개최 포함
- ▶ 1,451개 세번 중 1,419개에 대한 합의 도달
 - 쌀(16개 세번), 일부 낙농품·가금육, 고추·마늘, 양파, 인삼 등 192개 세번에 양허제외 합의
 - 현재 쇠고기·돼지고기의 양허기간, 보리, 감자, 대두, 천연꿀, 사료용 근채류 등의 무관세물량에 대해 미합의된 상태

나. 평가 및 향후 전망

- ▶ 캐나다는 한미 FTA 협상과의 형평성 및 같은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지연요인으로 작용
- ▶ 보리, 대두, 감자, 천연꿀, 사료용 근채류 등에 대한 무관세물량(ASG, TRQ)은 국내수급 상황, 과거수입실적, 여타 FTA와 협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협의할 계획
-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캐측 최대관심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최종단계까지 우리측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 캐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자국관심품목에 대해 최소한 한미FTA 수준의 대우를 요구

4. 한·인도 CEPA

가. 추진 현황

- ▶ '06. 3월 1차협상 개최 이후 10차례 협상 개최 (1차례 실무협의 포함)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논의
 - 2차~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상품 자유화 방식을 논의
 - '07.7 제7차 협상시 양측 제시 상품양허안에 대한 일반적 입장 교환
 - '07.8 인도측은 서한을 통해 우리 쌀·육류·사과·배·감귤 등 민감농산물 포함, 732개 농산물에 대해 양허개선 요구
 - '07.12월 제9차 협상시 우리측은 인도측 양허개선 요구품목에 민감 농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양허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 표명
 - 이에 따라 인도측은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참깨·캐슈넛·망고·홍차 등 77개 농산물을 핵심품목으로 축소하여 양허개선을 요청

나. 평가 및 향후 전망

- ▶ 제9차 협상시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낮춰 양허개선 대상 농산물 품목수를 대폭 감소시킨 것은 성과로 평가
 - 다만, 핵심 양허개선 대상품목에 쌀·쇠고기·양념 채소류 등 초민감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대응 필요
- ▶ 우리 농산물 양허개선안은 품목별 민감성, 개방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인도의 농업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계획
- ▶ 제10차 협상은 '08. 4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5. 한·중 FTA 양국간 공동연구

가. 진행경과

- ▶ '05. 3 ~ '06. 10월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완료
- ▶ '07. 3월 양국간 공동연구 그룹을 발족
 - 현재까지 총 5회 공동연구 회의개최(분회의 3회 및 전문가회의 2회), '08.2월 최종회의 개최 예정
- ▶ 공동연구 종료이후 정식협상 시작여부가 결정될 전망

나.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 ▶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소비자 선호 및 생산구조의 유사성 등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민간공동연구 결과 농산물 관세철폐시 주요 채소 및 과일류 등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 '07. 12월 농업전문가 회의까지 우리측은 한국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농업의 민감성 반영 후 정식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
 - 중국측은 양허제외 관련 문안은 공동연구 단계가 아닌 정식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 우리측은 공동연구 단계부터 민감성 반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주요농산물 양허제외 문안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

'08. 제2차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4.15)

DDA / 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I. WTO / DDA 농업협상 동향

II. FTA 농업협상 동향





I. WTO / DDA 농업협상 동향

1. 협상동향 및 향후전망

- ▶ UR협상 이후 추가적 시장개방을 위하여 '01년 DDA 협상 출범, '04년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일정보다 협상 지연
 - ※ '04년 기본 골격 타결, '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협상일정 마련
 -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06.7월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07.1월 주요국 각료회의를 계기로 DDA 협상 본격 재개
- ▶ 팔코너 의장은 그 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08.2.9일 세부원칙 수정안을 배포하였고 집중적인 다자협의를 진행중
 - 최근 핵심쟁점인 민감품목 TRQ 물량 산출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특별품목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4월 하순경 2차 수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 ▶ 4월말~5월초경부터는 농산물과 비농산물부분을 동시에 협의하는 고위급 동시협상 (horizontal process)이 예상되며, 동 논의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5월 중순 ~ 말경 각료회의 개최도 가능할 전망
 -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경우에는, 각국은 이에 기초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 (약 6개월)

2. 주요쟁점

- ▶ 관세 감축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 (관세가 100% 이상 세번 비중 9%)
 - 관세상한
 - G10(수입국그룹)과 공조하여 관세상한 및 관세상한 대안(고관세가 많을 경우 TRQ 증량으로 보상)에 적극적 대처
 - ※ 의장은 관세상한 대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세상한이 도입 될 수도 있다고 지적

- 민감품목
 -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되며 관세를 적게 감축하는 대신 TRQ를 증량하여야 하므로 G10(수입국 그룹)과 공조하여 민감품목 개수 확대 및 TRQ 증량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 특별품목
 - 특별품목은 민감품목보다 시장개방폭이 작게 될 것이므로 G33(수입 개도국그룹)과 공조하여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감축최소화에 중점적으로 대응
 - ※ 향후 쌀 등 핵심품목의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요
- 개도국 지위 확보
 - 개도국 지위 확보 문제는 이행계획서 제출 후 양자협의 단계에서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G33과 적극 공조하여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개도국 우대조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

3. 최근 중점 논의사항

- ▶ 민감품목 이슈에 있어 지정단위(품목단위 vs. 세번단위)와 TRQ 증량기준(소비량 vs. 수입량)이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
 - 수입국들은 민감품목을 세번단위(품목내 세번 중 일부만 가능)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TRQ 물량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증량할 것을 주장
 - 수출국들은 민감품목을 품목단위(품목 전체세번)로 지정하면서 TRQ 물량도 소비량을 기준으로 증량할 것을 주장
- ▶ 수입국과 수출국 입장의 절충안으로 민감품목 지정은 세번별 단위로, TRQ 물량은 소비량 기준으로 산출할 것으로 예상
 - 민감품목을 세번별로 지정하면 세번별 TRQ 증량물량을 정해야하므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 세번별 소비량통계 산출 필요
- ▶ 최근 민감품목 TRQ물량의 기초가 되는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해 주요 6개국은 일정수준 합의 도출(4.3)
 - 품목별 소비량 계산결과를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 이전 세부원칙 논의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형성
 - ※ 2.9일 세부원칙수정안에 따르면 세부원칙 채택 전에 민감품목 소비량자료 제출 및 검증을 완료하여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이에 4월 말 전까지 품목별 소비량 계산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차질이 없도록 현재 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해나가고 있음
- 소비량 계산 관련 작업지침을 마련하고 품목국과의 협의를 통해 소비량 관련 기초자료 작성 추진중

4. 향후 대응계획

- ▶ 향후 예상되는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자료 제출에 대비,
 - 「민감품목 작업팀」을 구성(4.8)하고 4월말까지 민감품목 후보군 대상 선정 및 소비량 계산작업 등 기초자료 작성 추진중
- ▶ 고위급회의(4월 말), 각료급회의(5월 말)개최에 대비하여,
 -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주요 핵심사항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쟁점별 대응입장을 재점검하고 대응전략 수립
 -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 등 이해유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 국회·농민단체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농민단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계획
- ▶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타결에 대비하여 이후 이행계획서(C/S) 작성을 위한 품목별 입장 및 대응전략을 준비

참고 1**세부원칙 수정안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가. 시장접근****▶ 관세감축**

- 관세율을 4개구간으로 나누고,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감축율이 커지는 구간별 감축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 관세 75%이상인 품목은 최소 [66]% 감축이, 개도국의 경우 관세 130% 이상인 품목은 최소 [44]%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UR협상 평균관세감축률(선진국 36%, 개도국 24%)보다 높은 수준
 -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이행기간 8년
- ⇒ 구간별 감축률 수치 중 최소치가 선정되도록 노력

	선진국		개도국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20%	[48] [52]%	0~30%	[32] [35]%
2구간	20~50%	[55] [60]%	30~80%	[37] [40]%
3구간	50~75%	[62] [65]%	80~130%	[41] [43]%
4구간	75%이상	[66] [73]%	130%이상	[44] [49]%

▶ 관세상한

- 의장은 관세상한 대신 관세 감축 후 100%이상 관세 비중이 4%이상일 경우 민감품목의 TRQ를 () % 추가 증량하는 보상 방안 제시
 - ⇒ 관세상한에 대한 원칙적 반대입장은 유지하되, 의장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TRQ 추가 증량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중심에 두고 대응
 - ※ 우리의 경우 현재 관세 100%초과 세번 비중 9%
 - * 관세상한 :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설정할 수 없도록 상한치를 설정하는 것
 - ** 저율관세수입물량 : 수입기회를 주기위해 기준물량 이하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기준물량 이상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

▶ 특별품목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필요를 감안하여 일부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감축율보다 낮은 감축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특별품목 개수는 최소 8%, 최대 [12] [20]%, 특별품목을 2개 구간으로 분리하여 구간별 평균 감축률은 각각 [8] [15]%, [12] [25]%

- 관세감축면제(전체 세 번의 [8]%)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관세감축면제 불가 대안도 동시에 제시
- ⇒ G33과 공조하여 쌀 등 핵심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면제 확보 및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최소화를 위해 협상력을 집중

▶ 민감품목

- 일부 중요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 감축율 대비 1/3, 1/2, 2/3 만큼 감축을 적게 할 수 있으며,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해야함
 - 민감품목 수는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세 번(무세제외)의 [4] or [6]%,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 개수의 1/3만큼 추가 인정
 - TRQ 증량수준은 관세감축 격차(deviation)와 연계하여 선진국 기준시 소비량대비 [3] [6]%, 개도국 기준시 [2]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 주요품목들의 개방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G10과 공조하여 민감품목 개수는 최대한 확보하고, TRQ 증량 폭은 최소화되도록 대응

▶ 열대작물

- 열대작물을 수출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반품목보다 더 큰 감축률 제시(쌀, 고추, 인삼류 등 우리 주요농산물에 포함된 목록 제시)
- ⇒ G10과 공조하여 쌀 등 우리의 핵심품목이 열대작물 대우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

나. 국내보조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개별보조(AMS, De-minimis, Blue box)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
- ⇒ '05년 공공비축제 도입 등 감축대상보조 정책개편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 감축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향후 FTA 대책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확대를 감안하여 낮은 수준의 감축률이 채택되도록 노력
- 허용보조 수혜자격 등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도록 논의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 보조금의 구성 내용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감축면제보조 (De-minimis)	④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 (Blue Box)	

-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 등 개별보조를 합산한 총액
- *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 최소허용보조(DM) : AMS 보조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 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BB) : 생산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
- *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OTD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속한 기타 구간의 경우 선진국 기준으로는 50 또는 60%, 개도국 기준으로는 34 또는 40% 감축이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기준 적용시 현행 OTDS한도 91,855억원에서 55,113 ~ 61,240억원으로 줄어듦 전망
- 이행기간은 선진국인 경우 5년, 개도국인 경우 8년으로 설정하고 이행 초년도에 큰 감축 부담 부여

OTDS 구간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600억불 이상 (EU)	[75] [85]%	선진국의 2/3 감축
100~600억불 (미·일)	[66] [73]%	
100억불 이하 (기타)	[50] [60]%	

▶ 감축대상보조(AMS)

- AM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속한 기타 구간의 경우 선진국은 45%, 개도국은 30% 감축이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기준 적용시 현행 AMS 14,900억원에서 10,430억원으로 줄어듦 전망
 -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이행기간 8년

AMS 구간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400억불 이상 (EU)	70%	선진국의 2/3 감축
150~400억불 (미·일)	60%	
150억불 이하 (기타)	45%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선진국은 농업생산의 5%, 개도국은 10%까지 인정되는 현행 De-minimis를 선진국의 경우 [50] 또는 [60]%, 개도국의 경우 [34] 또는 [40]%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기준 적용시 현행 De-minimis 농업총생산액의 20%에서 12 ~ 13.4%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Blue box)

- 생산제한 요건이 없는 새로운 기준의 Blue box가 도입될 예정이며, 선진국의 경우 '95 ~ '00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2.5%, 개도국의 경우 5%로 상한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

▶ 허용보조(Green box)

- 수혜자격 기준을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 기간 변경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

다. 수출경쟁

-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출보조금을 선진국의 경우 2013년까지, 개도국의 경우 2016년까지 철폐하기로 기 합의된 바 있음
 - 단, 수출물류비는 2021년까지 유지 가능

※ 논의동향을 감안, 단계적으로 운송비 등의 수출보조 감축 검토

참고 2

세부원칙 수정안과 초안 비교

쟁점		세부원칙 초안('07년 7월)	세부원칙 수정안('08년 2월)												
시장 접근	관세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66] [73]</td> </tr> <tr> <td>50% ~ 75%</td> <td>[62] [65]</td> </tr> <tr> <td>20% ~ 50%</td> <td>[55] [60]</td> </tr> <tr> <td>20%이하</td> <td>[48] [5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구간경계 30/80/130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 [73]	50% ~ 75%	[62] [65]	20% ~ 50%	[55] [60]	20%이하	[48]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8년) - 구간경계 및 감축률은 초안과 동일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 36%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 [73]													
	50% ~ 75%	[62] [65]													
	20% ~ 50%	[55] [60]													
20%이하	[48] [52]														
관세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나, 감축 후 관세가 100%이상 세번이 5%가 넘는 경우 TRQ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 세번이 4%가 넘는 경우 민감품목의 TRQ 증량 													
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세번의 [4] 또는 [6]%(개도국 [5] [8]%) 대우 : 국내소비량의 [3] [6]%(개도국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및 대우는 초안과 동일 													
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원칙 초안에서는 논의방향만 제시(의장 작업문서('08.1) : 특별품목 개수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는 [8] [20]%, 관세감축 면제(세번의 8%)가능성 제시 													
열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원칙 초안에서는 논의방향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대작물 목록 제시(쌀, 고추 등 포함)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 총액 (OTDS)1 감축대상보조 (AMS)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75][85]</td> <td>[70]%</td> </tr> <tr> <td>미국·일본</td> <td>[66][73]</td> <td>[60]%</td> </tr> <tr> <td>그외 국가</td> <td>[50][60]</td> <td>[45]%</td> </tr> </tbody> </table>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그외 국가	[50][6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OTDS 구간별 감축률은 초안과 동일 AMS 구간별 감축률 괄호 ([]) 제거 -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8년)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그외 국가	[50][60]	[45]%													
허용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보조 수혜자격기준 강화(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변경) - 단, 예산제약 등을 조건으로 예외적인 기준기간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격기준 강화 및 기준기간 변경 가능성은 초안과 동일 - 기준기간 변경 시 예산제약 조건 삭제 													
수출 경쟁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2013년까지 철폐 (개도국 []까지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 2016년 철폐 (단, 수출물류비는 2021년까지 유지 가능) 												

1)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 : DDA 협상에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OTDS=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e-minimis)+블루박스 금액을 합산한 개념임

참고 3

DDA 협상 경과

- ▶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출범
 - ※ 당초 협상일정 :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 3)
 -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 9, Cancun 각료회의)
 - ③ 협상완료('04말)
- ▶ '03.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 7월말까지 우선 기본 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 8. 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 '05.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 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 유지
- ▶ '06.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종단을 선언
- ▶ '06.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진전을 위해 두 차례 의장 문서를 제시('07.4월, 5월)
- ▶ '07. 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 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 ▶ '07.7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 세부원칙 초안 배포
- ▶ '08.2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 ※ 동 수정안은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

참고 4

UR · 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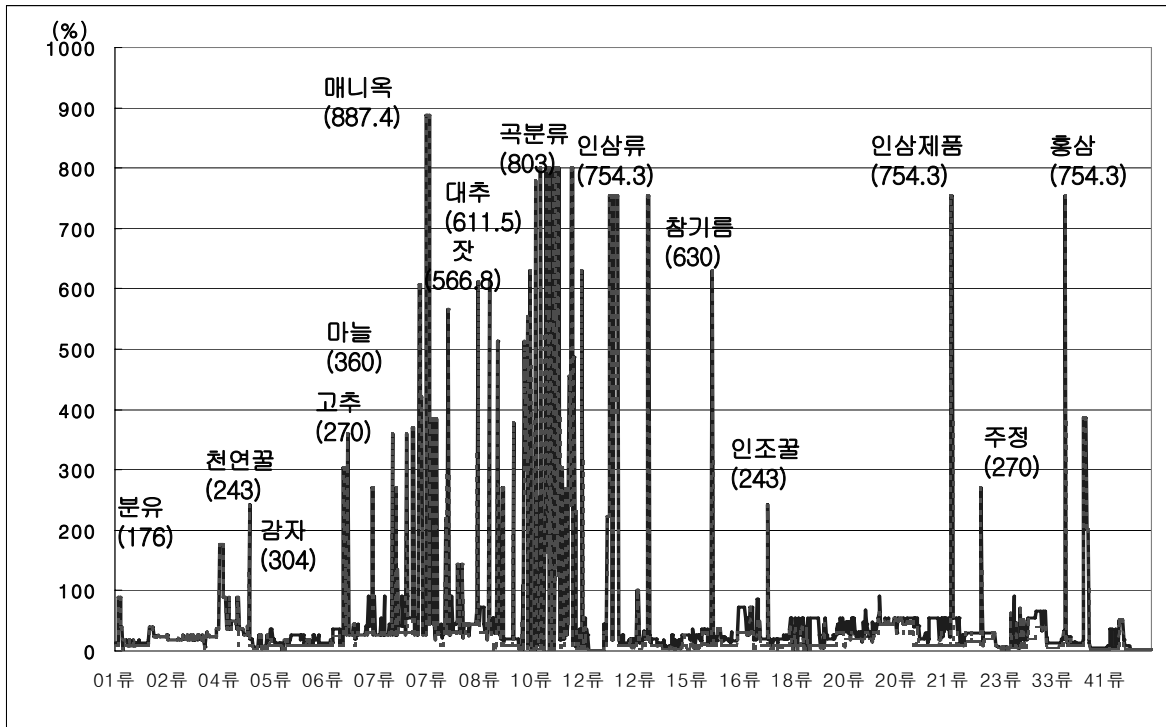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라셀각료회의 결렬) ※브라셀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2003.2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쿤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 : 시한연장) ※홍콩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2006.11월 (라미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7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초안 제시) 2008.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미 · EU 합의 (블레어하우스합의*)	1992.1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어하우스 합의'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 (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참고 5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구조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구조 |

양허관세	품목수	품목예시
500%이상	46	매니옥, 곡분류, 참깨, 인삼류, 맥주보리 등
200~499	62	대두, 전분,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 밤 등
100~199	18	분유, 감귤, 양파, 보리분, 사료용근채류 등
50~99	189	오렌지, 과일혼합주스, 면류, 당면, 고추장 등
40~49	132	과일류, 쇠고기, 버섯류, 수박, 오이, 당근 등
30~39	147	치즈,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등
20~29	249	닭고기, 냉동채소류, 돼지고기, 식용유 등
10~19	381	곡물조제품, 물, 과당, 포도당, 과수묘목 등
0.1~9.9	183	섬유원료, 원피, 모피, 밀, 당밀류 등
0	29	종자류, 가축정액 등
미양허	16	쌀 관련 품목
계	1,452	



II. FTA 농업협상 동향

1. FTA 협상 개요

- ▶ 교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추진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 * ('06.9), 아세안('07.6)과 협정 발효
 -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미 FTA 는 '07.4 타결하고 6월말 협정문에 서명, 현재 양국이 비준동의절차 진행 중 ('07.9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캐나다, 인도, EU와는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쟁점이 압축되고 있음
 - 멕시코와는 SECA * 로 추진('06.2~6)하다가 FTA로 전환('07.12)
 - *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 : FTA 보다 자유화 정도가 낮은 지역협정
- ▶ FTA 대상국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한 준비작업 병행
 - 한중 FTA 양국간 공동연구회의는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예정
 - 한일 FTA는 '04.11월 이후 농수산물 양허수준 입장 등 차이로 중단되었으나 최근 협상 재개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 중
 - 걸프협력회의 * (GCC)는 금년 하반기부터 협상개시 예정
 - *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가 체결한 관세동맹
 -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FTA 협상 전단계인 공동연구 진행 중

2. 한·EU FTA

가 추진 현황

- ▶ 협상 출범('07.5.6) 이후 6차례 협상을 개최했으며, 양측 입장 차이가 큰 상품 양허협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 자동차 기술표준, 공산품 원산지 기준도 입장 차이가 큰 쟁점
- ▶ 농산물은 민감성 반영을 위한 예외적 조치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 등에 대한 논의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음

나 분야별 주요결과

[농 업(상품양허)]

- ▶ 우리측은 농산물 수정양허안과 함께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를 묶어서 제시하는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을 제시('07.11)
 -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EU FTA는 농산물 민감성 고려 원칙에 이미 합의했음을 강조
- ▶ EU측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양허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우리측의 예외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 특히, EU측은 상업적 이익이 있는 품목은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을 강하게 요구
- ▶ 농산물 양허협상은 EU 기대수준을 낮추면서 우리 민감품목의 예외적 조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 냉동돼지고기 등 품목은 협상 최종 단계까지 신중하게 대응

[위생 · 검역(SPS)]

- ▶ 협정문 대부분 조항에 이견을 해소한 상황이며, 앞으로 지역화 인정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분쟁해결 절차 논의에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
- 지역화 인정절차는 2년간 상호 이해도 제고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은 위원회 논의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

[지리적 표시(GI)]

- ▶ 보호범위는 일반 농식품은 양측 기등록 품목을 약식절차를 거쳐 상호 인정하되, EU 보호 품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포도주 · 증류주는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 추진
- 보호수준은 지리적 표시를 상표에 우선하자는 EU 입장을 적극 수용하되, 특허청과 협의 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

[원산지 기준]

- ▶ 원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완전생산기준)으로 의견이 수렴
- 원산지 표시제도와 같이 모든 국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해야 하는 제도는 기존의 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을 적용하는데 합의

다 향후 계획

- ▶ 제7차 협상은 5월 중순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그동안 분야별로 소규모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
- ▶ 농산물 양허와 관련한 EU측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농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3. 한·캐나다 FTA

가 추진 현황

- ▶ '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5차례 협상 진행
 - 두 차례 상품분야 실무협상('07.6월, 9월) 포함
 - 2005년 이래 3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 왔으므로 협상 전체적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

- ▶ 농산물 1,451개 품목중 1,426개에 대한 양허유형에 합의
 - 쌀(16개 세번), 일부 낙농품·가금육, 고추·마늘, 양파, 인삼 등 193개 세번에 양허제외 합의
 - 현재 쇠고기·돼지고기의 양허기간 및 대두·천연꿀·사료용 근채류·맥주맥의 수입쿼타(TRQ) 물량 등 미합의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강하게 요구
- ▶ 협상 최종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대안을 검토
 -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및 수입쿼타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수급, 수입실적, 여타 FTA와 협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안 마련
- ▶ 제14차 협상은 '08. 6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4. 한·인도 CEPA

가 추진 현황

- ▶ '06. 3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10차례 협상 개최 (1차례 실무협의 포함)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논의
 - 2차~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상품 자유화 방식을 논의
 - '07. 7월 7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에 대한 논의 시작
 - '07.8 인도측은 서한을 통해 쌀·육류·사과·배·감귤 등을 포함한 732개 농산물에 대해 양허개선 요구
 - '07.12월 제9차 협상시 우리측이 민감 품목의 양허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자 인도측은 77*개 핵심품목으로 축소하여 양허개선 요청
 - *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참깨·캐슈넛·망고·심황·홍차 등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제9차 협상시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낮춰 양허개선 대상 농산물 수를 대폭 감소시킨 것은 성과로 평가
 - 다만, 핵심 양허개선 대상품목에 쌀·쇠고기·양념 채소류 등 초민감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허제외 반영을 위한 신중한 대응 필요
- ▶ 농산물 양허개선안은 품목별 민감성, 개방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인도의 농업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계획
- ▶ 제10차 협상은 '08. 5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5. 한·멕시코 FTA

▶ '05. 9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SECA* 협상 추진에 합의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

▶ '06. 2월 협상개시 후 3차례 SECA 협상 진행

- 당초 '06년 타결 목표로 SECA협상 추진중 제3차 협상('06. 6월) 이후 양허의 범위에 있어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협상 중단
- 우리측이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공산품의 일부만을 포함한 양허안 제시

▶ '07. 7월 멕시코측이 SECA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 추진을 희망하여 양국은 제1차 FTA협상 개최('07. 12. 5~7)

- 이번 협상에서는 멕시코 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을 검토하고, 양허협상 일정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 제2차 협상은 '08. 5.13~16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

- 상품양허 협상에 대비, 멕시코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 대멕시코 농산물 수입실적('06) : 4천만불

* 주요 수입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맥주, 데킬라, 커피 등

6. 한·중 FTA 양국간 공동연구

가 추진 현황

- ▶ '05. 3 ~ '06. 10월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완료
- ▶ '07년 3월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총6회 회의 개최 (본회의 4회 및 농업 전문가 회의 2회)
 - '08. 2월 제4차 전체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 보고서 대부분 문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08. 상반기중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예정
 - 농업분야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쟁력 비교 및 다양한 통계수치 등을 활용하여 한국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
- ▶ 공동연구 종료이후 정식협상 시작 여부가 결정될 전망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농업분야는 공동연구 보고서에 농업분야 민감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문제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양국 입장이 대립 중
 - 우리측은 FTA 협상개시 이전부터 농업 민감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 중국측은 공동연구 단계가 아닌 정식 협상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
- ▶ 공동연구 단계부터 우리 농업의 민감성관련 문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력 집중
- ▶ '08. 4월 농업 전문가회의, 5~6월 제5차 회의 개최 예정

'08. 제3차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5.9)

DDA 농업협상 및 민감품목 소비량데이터 제출관련 동향

- I. DDA 협상동향
- II. 민감품목 논의동향
- III. 민감품목 후보군 검토
- IV. 데이터 제출
- V. 향후 계획



1. DDA 협상동향

- ▶ UR협상 이후 추가적 시장개방을 위하여 '01.11월 DDA협상을 개시한 이후, 특히 농업협상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지연
 - 이에 따라 세부원칙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기본골격에만 합의('04.8)하였으며 '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 철폐에 합의하여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을 유지
- ▶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08.2.9일 세부원칙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이를 기초로 집중적인 다자협의를 진행되었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차이가 좁혀지는 등 진전이 있는 상황
 - 최근 핵심쟁점인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 및 열대작물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 인바, 의장은 동 논의에 진전이 있을시 5월 중순경 2차 수정안을 제시될 것으로 예상
 - * 세부원칙(Modalties) :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등을 포함한 협상결과로, 각 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 이행계획서(C/S=Country Schedule)를 작성하게 됨
- ▶ 농업 및 공산품 분야의 의장 수정안이 제시되면 5월말 ~ 6월초경 농업과 공산품 부문을 동시에 협의하는 고위급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이 예상되며, 동 논의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각료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음
 -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경우 각국은 이에 기초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 (약 6개월)
 - * 한편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으로 연내 타결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

2. 민감품목 논의동향

- ▶ 세부원칙 수정안에 따르면 민감품목 범위(개수)는 전체 세번의 4 ~ 6%(개도국은 5.3 ~ 8%)수준이며, TRQ물량은 소비량의 3 ~ 6%(개도국은 2 ~ 4%)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회원국은 TRQ물량 산출기준이 되는 소비량 데이터를 세부원칙 합의 전까지 WTO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동 데이터 제출 품목에 한하여 민감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토록 규정
 - *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의 관세감축률보다 작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대신 TRQ (저율관세쿼터)물량을 증량 또는 신규지정해야 함

- ▶ 최근 주요 6개국(미국, EU, 일본 등)은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와 관련하여 품목범위 및 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한 문서를 제시
 - 민감품목 품목범위를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 이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진행중
 - * 민감품목 품목범위는 민감품목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품목을 망라, 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는 향후 민감품목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이에 따라 민감품목 품목범위를 우선 확정하기 위해 6개국 제출 품목범위에 대해 추가할 품목리스트 제출이 요청된 상황
 - 품목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정된 후, 품목별 소비량 데이터 제출시기는 5월 말경으로 전망

3. 민감품목 후보군 검토

- ▶ 민감품목 소비량데이터 작업팀을 구성(4.10)하여 민감품목으로 우선 검토가 필요한 품목과 소비량 데이터 계산 등 기초 자료 작성추진
- ▶ 품목국 중심으로 품목단체와 협의하여 민감품목 후보군을 검토
 - 생산액, 관세율, 교역가능성, 가격경쟁력, FTA 체결에 따른 개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비 TRQ품목이라도 관세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는 품목도 일단 검토대상에 포함
 - * 비TRQ 품목의 민감품목 가능여부는 아직 협상 쟁점으로 남아있으나, 세부원칙(modality)에서 TRQ품목만 민감품목으로 지정 가능한 것으로 결정시 기존 TRQ 품목 내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할 필요성 있음
 - 민감품목 선정에 따른 신규 TRQ 설정 또는 추가증량 등의 효과를 검토하여 실익이 큰 품목 중심으로 검토
 - * NAMA(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에 따라 김 등 해조류(52개 세번)가 농업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율(20%)이 낮고 실익이 크지 않아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미포함
- ▶ 29개 품목(221개 세번, 전체 농산물의 15.2%)에 우선순위를 두고 후보군으로 검토 중

4. 데이터 제출

- ▶ 협상 전략상 제출범위를 다소 넓게 가져가는 방안 검토
 - 다만, 과다 제출시 수출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개도국 우대 등 추후 협상의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도 고려
- ▶ 데이터 제출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
 - 우선, 주요 6개국이 제시한 검토대상품목 리스트에 추가할 관심품목을 제출
 - 인삼, 단감 등 12개 품목(38개세번)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
 - * 주요 6개국은 민감품목 검토대상 품목으로 120개품목 476개세번 (HS6단위)을 제시 (4.30)
 - 2단계로 소비량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며, 여타국가들의 제출동향을 고려하여 최종 제출

5. 향후 계획

- ▶ 고위급회의, 각료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주요 핵심사항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쟁점별 대응입장을 재점검
-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 등 이해유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실익을 확보 하도록 적극 노력

참 고

주요 6개국어 제출한 품목범위(attachment A)

▶ 실품목 : 120개, 세번수(HS 6단위 기준) : 476개

분류	품목	세번수	해당 세번
곡류	보리	14	100300, 110290, 110319, 110320, 110419, 110429, 110710, 110720, 190120, 190190, 190410, 190420, 190490, 210690
	옥수수	5	100510, 100590, 110220, 110313, 110423
	변성전분	4	290543, 290544, 350510, 382460
	귀리	4	100400, 110412, 110422, 230240
	쌀	18	100610, 100620, 100630, 100640, 110230, 110319, 110320, 110419, 110429, 190120, 190190, 190219, 190410, 190420, 190490, 190590, 210690, 220600
	호밀	2	100200, 110210
	수수	1	100700
	전분	7	110812, 110813, 110814, 110819, 110820, 190120, 190190
	라이밀	3	100890, 110290, 110319
	밀	28	100110, 100190, 110100, 110311, 110320, 110419, 110429, 110430, 110811, 110900, 190120, 190190, 190211, 190219, 190220, 190230, 190240, 190410, 190420, 190430, 190490, 190510, 190520, 190531, 190532, 190540, 190590, 210690
낙농품	버터	3	040510, 040520, 040590
	버터밀크/사워크림	1	040390
	카세인/염	2	350110, 350190
	치즈	5	040610, 040620, 040630, 040640, 040690
	가당연유/무가당연유	2	040291, 040299
	액상우유	2	040110, 040120
	아이스크림	4	180620, 180690, 190190, 210500
	기타 낙농품	20	040130, 040390, 040410, 040490, 170490, 180620, 180631, 180632, 180690, 190110, 190120, 190190, 210112, 210120, 210610, 210690, 220290, 230990, 350220, 350400
	탈지분유	1	040210
	유장분말	1	040410
	전지분유	2	040221, 040229
	요구르트	1	040310
달걀	난각이 있는 달걀	1	040811
	가공란	9	040811, 040819, 040891, 040899, 190220, 190230, 210690, 350211, 350219
	부화란 & 살아있는 병아리	2	040700, 010511

분류	품목	세번수	해당 세번
청과류	아몬드	2	080211, 080212
	사과	5	081330, 080810, 200971, 200979, 200899
	살구	3	081310, 080910, 200850
	양영경귀	4	070910, 071080, 200190, 200590
	아스파라거스	2	070920, 200560
	애버카도우	1	080440
	콩	11	071350, 070820, 071022, 071333, 071390, 200490, 200590, 071332, 071331, 071339, 200551
	브라질호두	2	080121, 080122
	방울다다기양배추 (신선)	1	070420
	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신선)	1	070490
	당근, 무(신선)	1	070610
	캐슈넛	2	080131, 080132
	꽃양배추, 브로콜리(신선)	1	070410
	샐러리(신선)	1	070940
	버찌	6	081340, 080920, 081190, 200980, 081210, 200860
	밤	1	080240
	이집트콩	1	071320
	치커리	2	070529, 070521
	클레멘타인	2	080520, 200830
	코코넛	2	080111, 080119
	서양호박	1	070990
	오이	3	070700, 071140, 200110
	대추야자	1	080410
	가지	1	070930
	무화과	1	080420
	마늘	2	071290, 070320
	자몽	3	080540, 200921, 200929
	포도	5	080620, 080610, 200961, 200969, 220430
	헤즐너트	2	080221, 080222
	균질화채소	1	200510
	잼/퓨레	2	200791, 200799
	키위	1	081050
	곤약	2	121299, 210690
	리크(부추)	1	070390
레몬	4	080550, 200931, 200939, 200830	
렌즈콩(건조)	1	071340	

분류	품목	세번수	해당 세번
	상치(신선)	2	070511, 070519
	매니옥	1	071410
	혼합 과일	1	200892
	혼합 주스	1	200990
	혼합 가공 채소	1	200590
	혼합 채소	1	071090
	버섯, 아가리쿠스속	5	071231, 070951, 071080, 071151, 200310
	올리브	2	071120, 200570
	양파	3	071220, 070310, 071190
	오렌지	8	080510, 200911, 200912, 200919, 210690, 220290, 081290, 200830
	복숭아	2	080930, 200870
	배	4	081340, 080820, 200980, 200840
	완두	3	070810, 071021, 071310
	고추	1	070960
	파인애플	5	080430, 081190, 200941, 200949, 200820
	피스타치오	1	080250
	자두	2	081320, 080940
	감자	10	071290, 110510, 110520, 190590, 070110, 070190, 071010, 071090, 200410, 200520
	나무딸기	3	081020, 081120, 081290
	샐러드용 근대뿌리, 기타(신선)	1	070690
	시금치	2	070970, 071030
	딸기	4	081010, 081110, 081290, 200880
	스위트 옥수수	3	071040, 200190, 200580
	고구마	1	071420
	토마토	7	071290, 070200, 071080, 200950, 200210, 200290, 210320
	호도	2	080231, 080232
	효모	3	210210, 210220, 210230
섬유	실크	2	500100, 500200
육류	쇠고기, 송아지고기	13	010210, 010290, 020110, 020120, 020130, 020210, 020220, 020230, 021020, 021099, 160100, 160210, 160250
	설육	12	020610, 020621, 020622, 020629, 020630, 020641, 020649, 020680, 020690, 020734, 160220, 160290
	돼지고기, 멧돼지고기	16	020311, 020312, 020319, 020321, 020322, 020329, 020900, 021011, 021012, 021019, 021099, 160100, 160210, 160241, 160242, 160249
	가금육	25	010511, 010512, 010519, 010592, 010593, 010599, 020711, 020712, 020713, 020714, 020724, 020725,

분류	품목	세번수	해당 세번
			020726, 020727, 020732, 020733, 020735, 020736, 020900, 021099, 160100, 160210, 160231, 160232, 160239
	순록고기	2	010619, 020890
	면양고기	10	020410, 020421, 020422, 020423, 020430, 020441, 020442, 020443, 020450, 021099
유지류	유채유	8	120510, 120590, 151411, 151419, 151491, 151499, 230641, 230649
	피마자유	2	120730, 151530
	코프라	3	120300, 151311, 151319
	옥수수유	2	151521, 151529
	면실유	3	120720, 151221, 151229
	낙화생유(땅콩유)	6	120210, 120220, 150810, 150890, 200811, 230500
	아마인유	3	120400, 151511, 151519
	마가린	1	151710
	올리브유	3	150910, 150990, 151000
	기타 지방종자유	4	151590, 151620, 151790, 151800
	참깨유	2	120740, 151550
	대두유	3	120100, 150710, 150790
	해바라기씨유	3	120600, 151211, 151219
		인조기름	7
감미료	과당	3	170250, 170260, 170290
	포도당	2	170230, 170240
	꿀	1	040900
	유당	2	170211, 170219
	단풍당	1	170220
	당밀	2	170310, 170390
	설탕	22	170111, 170112, 170191, 170199, 170290, 170410, 170490, 180610, 180620, 180631, 180632, 180690, 190110, 190120, 190190, 190410, 190531, 190590, 210112, 210120, 210690, 220290
와인&주정	에틸알콜	2	220710, 220720
	럼	1	220840
	와인주정	1	220820
	와인	6	220410, 220421, 220429, 220510, 220590, 220600
합계	120개	476	

'08. 제4차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5.23)

DDA / 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I. WTO / DDA 농업협상 동향

II. FTA 농업협상 동향





I. WTO / DDA 농업협상 동향

1. 협상동향 및 향후전망

- ▶ 5.19(월) WTO/DDA 농업 및 비농산물(NAMA)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2차 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 이번 농업분야 수정안은 지난 2.9일 1차 세부원칙 수정안이 배포된 이후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된 것으로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 등 최근 논의를 반영
 - 민감품목 개수 및 TRQ(저울관세수입물량) 증량수준, 특별품목 개수 등 구체적인 수치와 핵심적 내용은 2월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유지한 것으로 평가
- ▶ 5.26일 주간부터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농업 분야의 주요국 다자협회가 개최될 예정
- ▶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 및 각료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음
 - *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 : 부문간 주고 받기식의 협상으로 두가지 이상의 협상 의제 전체에 대한 동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
 -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경우 각국은 이에 기초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 (약 6개월 소요)
- ▶ 다만, 부문간 협의 추진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아직 있고, 미국 대선 등 주요 회원국의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2. 세부원칙 수정안 주요 내용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률

- 관세감축률은 최상위구간(4구간)을 제외하고는 중간수치를 제시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기존 수정안과 동일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기존	수정안	구간경계	기존	수정안
1구간	0~20%	48~52%	50%	0~30%	32~35%	33.3%
2구간	20~50%	55~60%	57%	30~80%	37~40%	38.0%
3구간	50~75%	62~65%	64%	80~130%	41~43%	42.7%
4구간	75%이상	66~73%	66-73%	130%이상	44~49%	44-49%

- 선진국은 최소 평균감축률 [54]%를 적용(단, 민감품목과 경사관세 및 열대작물도 포함)하여 동 감축률 이하일 때 추가 감축
- 개도국은 최대 평균감축률 [36]%를 적용(단, 민감품목 포함)하여 동 감축률 이하일 경우 구간별 감축률 하향 조정

나. 관세상한

- 관세상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고관세품목 유지에 대한 쿼터 제공 보상방안은 유지
 - 감축후 관세가 100% 이상인 세번수가 4%이상인 경우는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만큼 추가 증량
 - 개도국은 능력있고 원하는(in a position to do, and wishing) 경우에 적용되는 개도국 우대내용을 추가
- ※ 개도국은 감축후 관세가 150% 이상인 세번수가 5.3%이상인 경우 적용

다. 민감품목

-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번의 4~6%로 기존 수정안과 수치가 동일하나, 무세제외 세번 문구를 삭제하여 세번수 실질적 증가효과
 - 개도국은 1/3만큼 더 인정하여 민감품목 개수는 5.3~8%
 - ※ 우리의 경우 농산물 1452개 세번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감품목 세번수는 선진국 기준시 58-87개, 개도국 기준시 77~116개로 예상
- TRQ 증량수준은 관세감축격차(deviation)에 따라 소비량의 3~6% 수준으로 기존 수정안과 동일하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 증량 이외 이행기간 조정 등 대안 추가(아래의 (안) 중 선택 가능)
 - (1안)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연장
 - (2안) 일반 감축률의 3/4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2년 단축(단, 민감품목 수의 2/3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 관세감축격차에 따른 TRQ 증량물량소비량대비 % |

조 건		선진국	개도국
Deviation 1/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2/3수준 적용)		[3] [5]	[2] [3.3]
감축	단,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이상일 경우	[2.5] [4.5]	[1.7] [3.0]
조정	단,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이상일 경우	[2] [4]	[1.3] [2.7]
Deviation 1/2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2수준 적용)		[3.5] [5.5]	[2.3] [3.7]
감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이상일 경우	[3] [5]	[2] [3.3]
조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이상일 경우	[2.5] [4.5]	[1.7] [3.0]
Deviation 2/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3수준 적용)		[4] [6]	[2.7] [4]
감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이상일 경우	[3.5] [5.5]	[2.3] [3.7]
조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이상일 경우	[3] [5]	[2.0] [3.3]

- TRQ증량은 이행첫날 총 증량분의 1/3만큼 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3씩 추가 증량토록 하여 이행초기 부담이 다소 증가
 - ※ 기존 : 이행첫날 소비량의 1% 증량, 매 12개월마다 1%씩 추가
- TRQ증량기준이 되는 소비량 산출방식은 최근 논의내용을 반영
 - ※ 수출국들이 주로 주장하는 품목단위 소비량 계산방식과 함께 주로 수입국이 주장하는 세번단위 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한 G6 안을 동시에 첨부

라. 특별품목(SP : Special Products)

- 특별품목 개수는 8%를 기준으로 G33(수입 개도국 그룹)이 주장하는 최대 20% 지정은 괄호로 처리하여 SP의 전체 개수가 8%로 제한될 가능성을 암시
- 관세감축은 평균 15%(최소12%, 최대20%) 감축방식을 제시하면서 일부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감축면제가능성을 유지

구분	SP 품목중	대우(감축율)
1	[40][no] %	[0]%
2	나머지	평균 15%, 최소 12%, 최대 20%

* 1차 수정안에서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형 감축방식을 제시

마.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 기존 세부원칙수정안 내용을 대부분 유지한 가운데, G33 제안과 수출국제안을 나누어 기술하여 양자 택일하는 구조로 단순화
 - SSM의 연간발동 가능 품목범위는 3 ~ 8개 품목(HS 6단위 1개를 1개 품목으로 정의)으로 명시
 - 물량기준 및 가격기준 SSM(기존 내용과 동일)

		발동기준	구제조치
물량 기준 SSM	1안 (G33)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 ~ 110%	50% 또는 40%p 중 높은 것
		110% ~ 130%	75% 또는 50%p 중 높은 것
		130% ~	100% 또는 60%p 중 높은 것
	2안 (수출국)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30% ~ 135%	20% 또는 20%p 중 낮은 것
		135% ~ 155%	25% 또는 25%p 중 낮은 것
		155% ~	30% 또는 30%p 중 낮은 것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70]% 이하로 하락시	기준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50%]	

※ 추가관세부과시 UR 양허관세 등 한도 설정 규정은 수출국제안(2안)에서만 유지

바. SSG(긴급수입관세)

- 선진국의 경우 SSG를 모두 삭제하거나 전체 세번의 1.5%로 설정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
 - ※ 1차 수정안에서 제시되었던 선진국에 대한 단계별 폐지방안과 운용 조건(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수정사항이 삭제
- 개도국의 경우 1차 수정안과 같이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적용 품목을 총 세번 기준 3%로 축소하는 방안을 새로이 제시

사. TRQ 관리방안

- 1차 수정안('08.2)과 비교할 때, 절차적 측면을 규정한 내용(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은 거의 동일하며 미소진 쿼터 해결 매커니즘을 일부 수정
 - 시장상황 등 미소진 사유에 대해 수출국들을 이해시킬 경우, 미소진 매커니즘의 문제가 해결

아. 관세단순화

- 수출국이 주장하는 모든 세번을 단순종가세로 양허하도록 규정하는 안은 전체가 괄호로 처리
 - ※ 매우 복잡한 관세구조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단순화 하도록 함

자. 경사관세

- 경사관세 감축률 규정은 1차 수정안과 동일(차상위 구간 감축률 적용, 단 최상위 구간은 6%p 추가 적용)하나, 해당 리스트에 곡물(쌀, 보리, 옥수수, 밀 등)이 새로 추가
 - ※ 선진국과 능력있는 개도국(in a position to do so)으로 선언하는 국가에게 의무 부담

차. 열대작물

- 열대작물 리스트 및 관세감축 내용은 1차 수정안 그대로 유지
 - 리스트*는 케언즈 그룹 제안(HS 6단위 기준 94개 세번) 및 UR협상에서 사용된 리스트(HS 4단위 기준 95개)을 모두 제시
- * 쌀, 고추, 인삼류, 마늘, 양파, 녹차, 감귤, 참깨 등이 포함
- ※ 단, 열대작물 감축부담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우 능력있는 개도국으로 선언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적용

카. In-quota 세율

- 기존 수정안을 대폭 수정하여 두가지 방법을 병렬적으로 제시
 - (1안) 쿼터 밖 세율 구간감축율을 적용하되,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구간감축률을 최상위구간으로부터 10/7.5/5/2.5%p 작게 적용
 - ※ 개도국의 경우는 13.3/ 10/ 6.6/ 3.3 %p 작게 적용
 - (2안) 선진국은 쿼터내 세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철폐하고, 5%이상 세율은 5%로 감축 또는 쿼터밖 세율 구간감축율 적용방안 중 더 큰 감축률 적용
 - ※ 개도국은 민감품목 TRQ 증량의 대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쿼터 밖 세율의 구간감축율의 1/3 적용

국내보조 분야

- 보조금 감축률은 기존 수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75][85]%	70%	[50][60]%
미국·일본	[66][73]%	60%	
그외 선진국	[50][60]%	45%	
개도국	[33.3][40]%	30%	[33.3][40]%

※ 보조금의 구성 내용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감축면제보조 (De-minimis)	④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 (Blue Box)	

-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 등 개별보조를 합산한 총액
- *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 최소허용보조(DM) : AMS 보조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 생산제한요건 직접지불(BB) : 생산제한을 전제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
- *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다만, OTDS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인 농업총생산액과 품목특정 AMS 한도 및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한도를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
 - ※ 단, 품목특정 AMS 한도 첨부는 선진국에 한함
- 블루박스도 1차 수정안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생산제한 요건이 없는 새로운 기준의 블루박스 도입)
 - 선진국의 경우 '95~'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의 경우 '95~'00 또는 '95~'04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로 상한 설정
- 허용보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지불과 관련하여 요건을 강화
 - 직접지불 수혜자격을 정하는 기준년도를 고정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이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바, 변경요건으로 『예산의 유지 및 감축의무』 내용이 다시 포함
 - ※ '07.7월 세부원칙초안에서는 예산유지 요건이 있었으나 '08.2월 수정안에서는 동 요건은 삭제되고 '상당히 긴 기간'의 요건만 규정

3. 향후 대응계획

- ▶ 고위급회의, 각료회의 개최에 대비한 협상대응전략 수립
 -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주요 핵심사항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쟁점별 대응입장을 재점검
 -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 등 이해유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실익을 확보 하도록 적극 노력

- ▶ 세부원칙 타결전에 미리 제출토록 되어 있는 농업생산액, 민감품목 소비량 등 자료 제출 준비
 - 소비량 계산 관련 작업지침을 마련하고 품목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소비량 관련 기초 자료 작성 추진중
 - 국내보조 관련 생산액 자료 등 제출에 대비한 검토 및 품목국과의 협의 등 추진
 - ※ 세부원칙수정안에 따르면 세부원칙 채택 전에 민감품목 소비량자료 제출 및 검증을 완료하여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국회·언론·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노력 강화
 - 주요 협상단계별로 언론보도,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

- ▶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타결에 대비하여 이후 이행계획서(C/S) 작성을 위한 품목별 입장 및 대응전략을 면밀히 검토

참고 1

세부원칙 수정안과 2차 수정안 주요내용 비교

쟁점		세부원칙 수정안('08.2)		세부원칙 2차 수정안('08.5)																															
시장접근	관세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경계 및 감축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66-73</td> </tr> <tr> <td>50% ~ 75%</td> <td>62-65</td> </tr> <tr> <td>20% ~ 50%</td> <td>55-60</td> </tr> <tr> <td>20%이하</td> <td>48-52</td> </tr> </tbody> </table> 이행기간 :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 36%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2-65	20% ~ 50%	55-60	20%이하	48-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상위의 구간 감축률 단일수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66-73</td> </tr> <tr> <td>50% ~ 75%</td> <td>64</td> </tr> <tr> <td>20% ~ 50%</td> <td>57</td> </tr> <tr> <td>20%이하</td> <td>50</td> </tr> </tbody> </table> 이행기간 및 평균 감축률은 유지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2-65																																	
20% ~ 50%	55-60																																		
20%이하	48-52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관세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상한의 명시적 언급 없음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 세번수가 4%가 넘는 경우 민감품목의 TRQ []% 추가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은 100% 및 4% 동일, 추가증량수준 0.5%로 제시 능력있는 개도국의 경우 150% 및 5.3% 적용 																																
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선진국 4 or 6% TRQ증량 : 소비량의 3-6% *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및 TRQ 증량수준 동일 개도국의 경우는 TRQ 증량외 다른 대안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감축을 적용하되 3년 연장 구간감축율의 3/4 적용하되 2년 단축(단, 민감품목 수의 2/3로 한정) 소비량 계산방식 논의내용 반영 																																
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최소 8%, 최대 12-20% 감축률 : (6%)8-15%, (6%)12-25% * 단, 관세감축 면제가능성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최소] 8%, [최대 20%] SP의 [40%] [no] 감축면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머지는 평균 15%, 최소 12%, 최대 20% 감축 																																
국내보조	무역왜곡보조 총액 (OTDS) 감축대상보조 (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감축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75][85]</td> <td>70%</td> </tr> <tr> <td>미국·일본</td> <td>[66][73]</td> <td>60%</td> </tr> <tr> <td>기타국가</td> <td>[50][60]</td> <td>45%</td> </tr> <tr> <td>개도국</td> <td>[33.3][40]</td> <td>30%</td> </tr> </tbody> </table>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국가	[50][60]	45%	개도국	[33.3][4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75][85]</td> <td>70%</td> </tr> <tr> <td>미국·일본</td> <td>[66][73]</td> <td>60%</td> </tr> <tr> <td>기타국가</td> <td>[50][60]</td> <td>45%</td> </tr> <tr> <td>개도국</td> <td>[33.3][40]</td> <td>30%</td> </tr> </tbody> </table>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국가	[50][60]	45%	개도국	[33.3][40]	30%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국가	[50][60]	45%																																	
개도국	[33.3][40]	30%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국가	[50][60]	45%																																	
개도국	[33.3][40]	30%																																	

참고 ②

DDA 협상 경과

- ▶ '01년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 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 당초 협상일정 :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 3)
 -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 9, Cancun 각료회의)
 - ③ 협상완료('04말)
- ▶ '03.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 7월말까지 우선 기본 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 8.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 '05.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 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 유지
- ▶ '06.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종단을 선언
- ▶ '06.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진전을 위해 두 차례 의장 문서를 제시('07.4월, 5월)
- ▶ '07.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 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07.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08.2월 세부원칙 수정안을 제시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08.5월19일 세부원칙 2차 수정안 배포

참고 3

UR · 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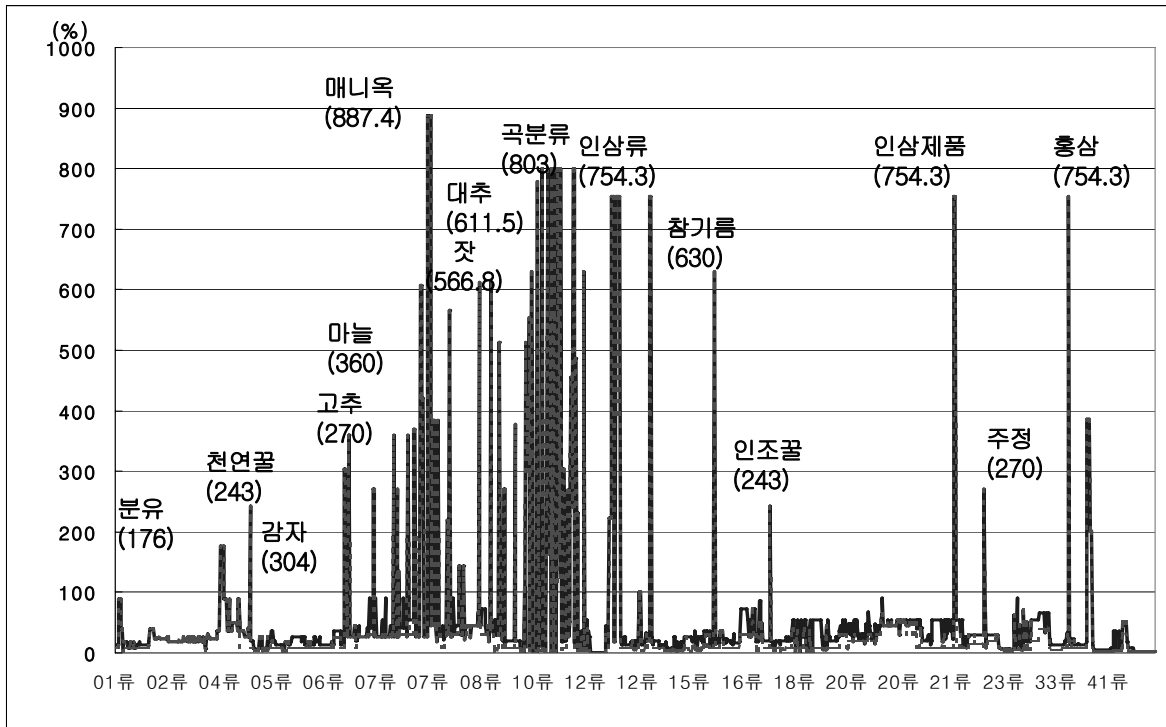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라셀 각료회의 결렬) ※브라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 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 총장 초안제시)	2003.2월 (하빈슨 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쿰 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 각료회의 : 시한연장) ※홍콩 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 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 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2006.11월 (라미 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7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 초안 제시) 2008.2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2008.5월 (팔코너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제시)
미 · EU 합의 (블레어 하우스 합의*)	1992.1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어 하우스 합의'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 (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참고 4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구조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구조 |

양허관세	품목수	품목예시
500%이상	46	매니옥, 곡분류, 참깨, 인삼류, 맥주보리 등
200~499	62	대두, 전분,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 밤 등
100~199	18	분유, 감귤, 양파, 보리분, 사료용근채류 등
50~99	189	오렌지, 과일혼합주스, 면류, 당면, 고추장 등
40~49	132	과일류, 쇠고기, 버섯류, 수박, 오이, 당근 등
30~39	147	치즈,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등
20~29	249	닭고기, 냉동채소류, 돼지고기, 식용유 등
10~19	381	곡물조제품, 물, 과당, 포도당, 과수묘목 등
0.1~9.9	183	섬유원료, 원피, 모피, 밀, 당밀류 등
0	29	종자류, 가축정액 등
미양허	16	쌀 관련 품목
계	1,452	



II. FTA 농업협상 동향

1. FTA 협상 개요

- ▶ 교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 * ('06.9), 아세안('07.6)과 협정 발효
 -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미 FTA 는 '07.4 타결하고 6월말 협정문에 서명, 현재 양국이 비준동의절차 진행 중 ('07.9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08.2. 통외통위 상정)
 - 캐나다, 인도, EU와는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쟁점이 압축되고 있음
 - 멕시코와는 SECA * 로 추진('06.2 ~ 6)하다가 FTA로 전환('07.12)
 - *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 : FTA 보다 자유화 정도가 낮은 지역협정

- ▶ FTA 대상국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한 준비작업 병행
 - 한중 FTA 양국간 공동연구회의는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예정
 - 한일 FTA는 '04.11월 이후 농수산물 양허수준 입장 등 차이로 중단되었으나 최근 협상 재개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 중
 - 걸프협력회의 * (GCC)는 금년 하반기부터 협상개시 예정
 - *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가 체결한 관세동맹
 -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FTA협상 전단계인 공동연구완료('08.4)

2. 한·EU FTA

가 추진 현황

- 협상출범('07.5.6) 이후 모두 7차례 협상을 개최
- 제7차 협상(5.13 ~ 15, 브뤼셀)에서는 6개 분과 협상(서비스,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및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진행
-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관세와 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
- 다만, 일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했고, 전반적으로는 협상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평가

나 분야별 주요결과

▶ 농업(상품양허) (제6차 협상까지)

- 우리측은 농산물 수정양허안과 함께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를 묶어서 제시하는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을 제시('07.11)
 -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EU FTA는 농산물 민감성 고려 원칙에 이미 합의했음을 강조
- EU측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양허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자율관세물량(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우리측의 예외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 EU의 상업적 이익이 있는 품목은 한·미 FTA와 동등한 대우 요구

▶ 위생·검역(SPS)

- 지역화 인정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분쟁해결절차 논의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음
- 지역화 인정절차는 2년간 상호 이해 제고 등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수출작업장 승인은 위원회 논의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 중

▶ 지리적 표시(GI)

- 보호범위는 일반 농식품은 양측 기등록 품목을 약식절차를 거쳐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의견이 접근되고 있으나, EU측 보호품목이 많은 포도주·증류주에는 대해서는 입장조율 중
- 보호수준은 지리적 표시를 상표에 우선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우리 상표법 및 제3국의 상표와의 관계 설정이 주요 변수
 -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법률상 쟁점이 될 요소를 점검해 대응할 예정

다 향후 계획

- 제8차 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시기는 미정이며,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소규모 협의 추진
- 앞으로 분야별 협의를 통해 농산물 양허 등과 관련한 EU측의 구체적 요구가 있을시 농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3. 한·캐나다 FTA

가 추진 현황

▶ '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6차례 협상 진행

- 세 차례 상품분야 실무협상('07. 6월, 9월, '08. 5월) 포함
- 2005년 이래 3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 왔으므로 협상 전체적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

▶ 농산물 1,451개 품목중 1,426개에 대한 양허유형에 합의

- 쌀(16개 세번), 일부 낙농품·가금육,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193개 세번의 양허제외 합의
- 현재 쇠고기·돼지고기의 양허기간 및 대두·천연꿀·사료용 근채류·맥주맥의 수입쿼타(TRQ) 물량 등 미합의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강하게 요구
- ▶ 협상 최종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대안을 검토
 -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및 수입쿼타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수급, 수입실적, 여타 FTA와 협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협의
- ▶ 제14차 협상은 '08. 6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4. 한·인도 CEPA

가 추진 현황

- ▶ '06. 3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10차례 협상 개최 (1차례 실무협의 포함)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논의
 - 2차 ~ 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상품 자유화 방식을 논의
 - '07. 7월 7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에 대한 논의 시작
 - '07.8 인도측은 서한을 통해 쌀·육류·사과·배·감귤 등을 포함한 732개 농산물에 대해 양허개선 요구
 - '07.12월 제9차 협상시 우리측이 민감 품목의 양허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자 인도측은 77*개 핵심품목으로 축소하여 양허개선 요청
 - *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참깨·캐슈넛·망고·심황·홍차 등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제9차 협상시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낮춰 양허개선 대상 농산물 수를 대폭 감소시킨 것은 성과로 평가
 - 다만, 핵심 양허개선 대상품목에 쌀·쇠고기·양념 채소류 등 초민감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허제외 반영을 위한 신중한 대응 필요
- ▶ 민감 농산물의 양허방향은 품목별 민감성, 개방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인도의 농업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계획
- ▶ 제10차 협상은 '08.5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5. 한·멕시코 FTA

- ▶ '05. 9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SECA* 협상 추진에 합의
 -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
 - '06.2월 협상을 개시, 연내 타결 목표로 추진하다가 제3차 협상('06.6) 이후 양허범위에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협상 중단
 - 우리측이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공산품의 일부만을 포함한 양허안 제시
- ▶ '07. 7월 멕시코측이 SECA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 추진을 희망하여 양국은 제1차 FTA협상 개최('07.12.5 ~ 7)
 - 1차 협상에서는 멕시코 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을 검토하고, 양허협상 일정 등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
- ▶ 제2차 협상은 '08.6.9 ~ 11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
 - 이번 협상에서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으며, 상품협정문, 무역구제, 원산지, 지재권 등 농업관련분야 협상에 참여할 계획
 - 상품협정문/무역구제 논의에서는 농산물세이프가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산지 분야에서는 제3국산의 우회 수출 가능성 차단에 주력
 - * 대멕시코 농산물 수입실적('06) : 4천만불
 - * 주요 수입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맥주, 데킬라, 커피 등

6. 한·중 FTA 양국간 공동연구

가 추진 현황

- ▶ '05. 3 ~ '06. 10월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완료
- ▶ '07년 3월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총7회 회의 개최(본회의 4회 및 농업 전문가 회의 3회)
 - '08.2월 제4차 전체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 보고서 대부분 문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08. 상반기중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예정
 - 농업분야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쟁력 비교 및 다양한 통계수치 등을 활용하여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
- ▶ 공동연구 종료이후 정식협상 시작 여부가 결정될 전망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농업분야는 공동연구 보고서에 농업분야 민감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문제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양국 입장이 대립 중
 - 우리측은 FTA 협상개시 이전부터 농업 민감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 중국측은 공동연구 단계가 아닌 정식 협상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
- ▶ 공동연구 단계부터 우리 농업의 민감성관련 문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력 집중
- ▶ '08.6.11 ~ 13일 기간중 북경에서 제5차 전체회의 개최 예정

'08. 제5차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7.14)

DDA / 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대응

- I. WTO / DDA 농업협상 동향
- II. WTO/DDA 농업협상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 관련 추진동향
- III. FTA 농업협상 동향





I .WTO/DDA 농업협상 동향

1. 협상동향 및 향후전망

- ▶ '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주요국들 간의 대립으로 '06년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07년 7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안)이 배포되면서 논의가 활성화됨
 - 특히, 올해 들어 EU·미국·브라질 등 주요국들은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 * 세부원칙 :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될 경우 회원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함
 - 논의의 진전을 반영하여 '08년 2월 세부원칙 수정안이, '08년 5월에는 2차 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를 앞두고 7.10(목) 의장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이 제시
 - 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세상한 및 특별품목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최근 진행된 소규모 고위급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반영
 - * 핵심이슈에 대해서 10여국 내외의 주요국을 초청하여 논의하는 회의로 5월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관세상한(9개국) 및 특별품목 소그룹(13개국)에 참여하여 입장을 개진함

- ▶ 7월 21일부터는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을 토대로 농업 및 NAMA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기 위한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
 -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경우 각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양자협약의 등 검증절차를 거침
 - 다만,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 차이와 미국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DD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2. 협상의 구도 및 분야

- ▶ DDA 협상은 그 명칭이 시사하는 것처럼 개도국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며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개도국 우대조치*(S&D)를 강조
 - 이에 따라 UR 당시의 미국·EC의 양강 구도와 달리 인도·브라질 등 개도국의 영향력이 커짐
 - *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작은 의무 부담과 예외조치 등이 인정됨
 - 개도국의 영향력 강화는 기존의 수출국·수입국 간의 대립 외에 선진국·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를 부각시켜 DDA 농업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
- ▶ DDA 협상은 미국·EC 외에는 주요 이슈별로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그룹을 결성하여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일반적임
 - 우리나라는 수입국으로 구성된 G10*과 특별품목 및 특별긴급관세를 중시하는 개도국 그룹인 G33**에 적극 참여
 - * G10 :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등 **G33 : 인니, 인도, 중국, 필리핀 등
- ▶ DDA 농업협상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의 3분야로 나뉨
 - 시장접근 분야는 품목별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TRQ)*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며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큼
 - * 저율관세수입물량 : 고추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입량 이내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데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TRQ라고 함
 - 국내보조 분야는 각국이 농업분야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및 감축에 대해 논의
 - 수출경쟁 분야는 수출보조금 및 식량원조 등을 다루며 논의가 상당히 정리된 것으로 평가

3. 분야별 주요내용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 ▶ 관세감축은 구간 및 구간별 감축률을 정하여 현재의 양허관세*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tiered formula : 구간별 감축방식)
 - 민감품목, 특별품목, 경사관세, 열대작물 등 다른 관세감축 공식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사용(관련내용 후술)
 - TRQ 품목의 경우 TRQ 물량 초과시에 부과되는 세율(out quota tariff)에 적용(in-quota 세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
 - 전체적인 관세감축 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감축률(민감, 경사, 열대 포함) 최소 54%, 개도국은 평균감축률(민감 포함) 최대 36%
 - 선진국은 동 수치 이하일 경우 추가 감축하고 개도국은 동 수치이상일 경우 감축률을 하향 조정

| 관세 감축공식 |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2차 수정안	구간경계	2차 수정안
1구간	0< 양허관세 ≤20%	50%	0< 양허관세 ≤30%	33.3%
2구간	20< 양허관세 ≤50%	57%	30< 양허관세 ≤80%	38.0%
3구간	50< 양허관세 ≤75%	64%	80< 양허관세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0%	[66 ~ 73%]	양허관세 > 130%	[44 ~ 49%]

* 양허관세(bound tariff) : WTO 회원국은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는데 이를 양허관세라고 함. 즉 양허관세보다 작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양허관세보다 높은 관세는 부과할 수 없음. 이 때 양허관세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를 실행관세라고 함

- 이행은 선진국의 경우 5년, 개도국은 8년간 균등감축

▶ 주요품목 감축 후 관세율수준

품목	현행 관세율 (%)	선진국 기준		개도국 기준	
		감축률	감축후 관세	감축률	감축후 관세
쌀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고추	270	69.5	81.0	46.5	144.5
돼지고기	25	57	10.6	33.3	16.6
쇠고기	40	57	17.0	38	24.6
분유	176	69.5	52.8	46.5	94.2
마늘	360	69.5	108.0	46.5	191.9
감귤류	144	69.5	43.2	46.5	77.0
가공용 대두	487	69.5	146.1	46.5	260.5
인삼	754	69.5	226.3	46.5	403.6
닭고기	20	50	10.0	33.3	13.3
참깨·참기름	630	69.5	189.0	46.5	337.1
양파	135	69.5	40.5	46.5	72.2
밤	219	69.5	65.8	46.5	117.4
감자	304	69.5	91.2	46.5	162.6
보리	324	69.5	97.2	46.5	173.3
고구마	241	69.5	72.3	46.5	129.0
오리·거위	18	50	9.0	33.3	12.0
표고버섯	90	69.5	27.0	42.7	52.2
대추	612	69.5	183.5	46.5	327.2
천연꿀	243	69.5	72.9	46.5	130.0
녹두·팥	608	69.5	182.3	46.5	325.0
생강	377	69.5	113.2	46.5	201.9
땅콩	231	69.5	69.2	46.5	123.3
옥수수	630	69.5	189.0	46.5	337.1
녹차	514	69.5	154.1	46.5	274.8
메밀	256	69.5	76.8	46.5	137.0
잣	567	69.5	170.0	46.5	303.2
신선과일	45	57	19.1	38	27.7
유제품	89	69.5	26.7	42.7	51.6

* 최상위 구간 감축률은 중간수치 적용

나 민감품목

- ▶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해야 함

- 선진국은 농산물 세번*의 4% 또는 6%, 개도국은 5.3% 또는 8%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준시 58-87개, 개도국 기준시 77-116개로 예상
- * 세번(관세선 : tariff line) : 관세율표에 품목별로 분류되어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단위. 우리나라는 10개의 숫자를 사용(10단위). 우리나라의 농산물 세번은 1,452개임(HS 2002, 10단위 기준)
- 관세감축률을 낮춰주는 정도(deviation)에 따라 선진국(개도국)은 국내 소비량의 3~6%(2~4%)의 TRQ 증량
 - 이행첫날 총 증량분의 1/4만큼 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4씩 추가 증량

| 민감품목의 TRQ 증량(국내 소비량대비 %) |

조 건	선진국	개도국(선진국 2/3)
구간별 감축률의 2/3(1/3 Deviation 적용)	[3] [5]	[2] [3.3]
구간별 감축률의 1/2(1/2 Deviation 적용)	[3.5] [5.5]	[2.3] [3.7]
구간별 감축률의 1/3(2/3 Deviation 적용)	[4] [6]	[2.7] [4]

※ 현행 TRQ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30)% 이상일 경우에는 TRQ 물량을 0.5(1)% 감축

▶ 개도국의 경우 민감품목에 대하여 TRQ 증량외의 옵션 선택가능

-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연장
- 일반 감축률의 3/4를 적용하되 TRQ 증량 없이 이행기간 2년 단축(단, 민감품목 수의 2/3에 한해서 적용 가능)

| 관세 감축 시나리오 |

- 양허관세 300%, 세번의 국내소비량 100만톤인 품목A (개도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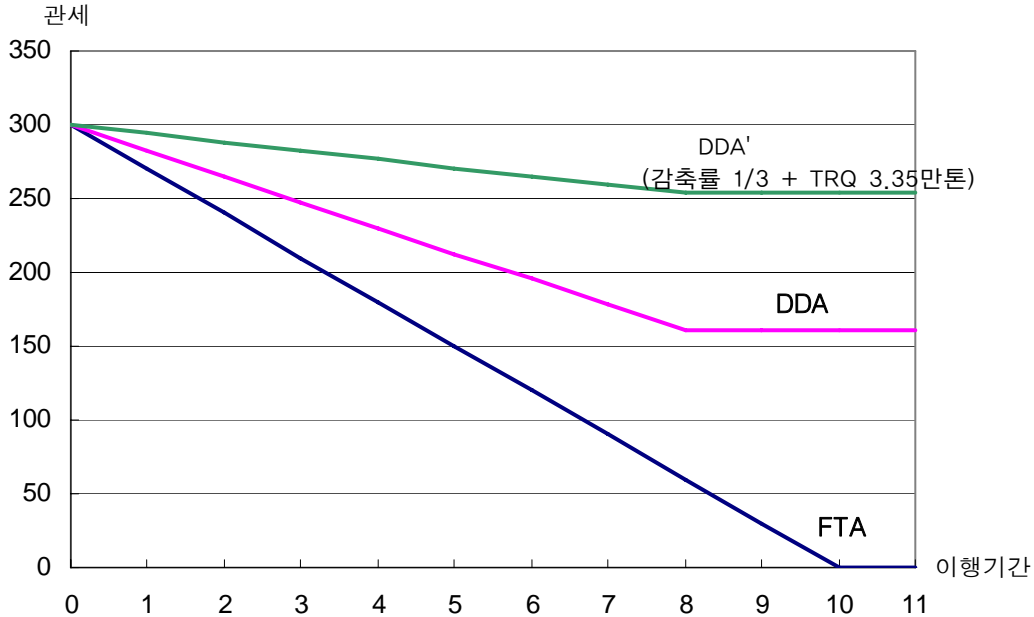
조 건	감축 후 세율	TRQ 증량 수준
일 반 감 축	(감축률 46.5%) 160.5%	없음
민감 품목	①일반감축률의 2/3 (감축률 31%) 207%	2.65만톤 증량
	②일반감축률의 1/2 (감축률 23.2%) 233.4%	3만톤 증량
	③일반감축률의 1/3 (감축률 15.5%) 253.5%	3.35만톤 증량
	④일반감축률의 3/4 (감축률 34.8%) 195.6%	없음 (민감품목 2/3만 사용가능)
	⑤일반감축률 적용 (감축률 46.5%) 160.5%	없음 (이행기간 8+3년)

※ TRQ 증량기준, 최상위구간의 감축률은 중간값을 적용

- 품목A의 현행 TRQ가 10(30)만톤 이상인 경우 TRQ 0.5(1)만톤 적게 증량

| FTA, DDA 관세감축 효과 비교 |

품목 A : 현행 양허관세 300%, 세번의 국내소비량 100만톤



다 특별품목(SP)

-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 관련 지표*를 기초로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
 - 특별품목은 민감품목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관세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TRQ 증량 의무도 없는 방향으로 논의
 - * 열량공급도, 자급률, 생산액 비중, 고용 비중 등이며 최소 세번에 대해서는 특별품목 지정시 지표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음
- ▶ 최근 SP의 관세감축면제 인정여부가 핵심쟁점으로 집중 논의됨
 -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인도 등 G33 국가들은 관세감축면제가 SP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하며 적정수의 관세감축면제 SP를 별도로 보장할 것을 촉구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SP의 관세감축면제에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이며 (최소 감축률 없는) 평균감축방식을 선호

- 의장은 SP의 관세감축면제는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
- ▶ 세부원칙 3차 수정안에 따르면 세번의 10 ~ 18%까지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특별품목은 평균 10 ~ 14% 감축해야함
- 전체 세번의 0 ~ 6%까지 감축면제 가능(감축면제 불가 옵션도 제시)

| SP의 개수 및 관세감축 |

개 수	관세 감축율
세번의 10 ~ 18%	평균 10 ~ 14% - 관세감축면제는 세번의 6% 또는 불인정

라 관세상한

- ▶ 관세상한(capping)은 일정 수준(예 100%)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관세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 큰 부담
 - 미국, EU 및 호주를 비롯한 수출국 중심의 캐언즈 그룹과 브라질·인도 등 수출 개도국으로 구성된 G20 등 대부분 국가들이 관세상한 도입을 강하고, 일관되게 주장
 - G20는 선진국 100%, 개도국 150%의 관세상한 수치를 제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 국가들은 관세상한 도입에 강한 반대 입장
- ▶ 세부원칙 3차 수정안에 관세상한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100% 이상 고관세 유지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
 - 민감품목 : 감축후 관세가 100%(개도국 150%) 초과시 TRQ 추가 증량
 - 비민감품목 : 감축후 관세 100% 초과 세번수를 한정(1-2%)하고 모든 민감품목의 TRQ 추가 증량, 이행기간 단축, 추가적인 관세감축등 부담규정(단, 적용가능 국가를 고관세 비중이 높은 국가 등으로 한정)
 - *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의장은 괄호로 묶어 각료회의시 결정토록 제시
 - 특별품목 : 적용배제(보상없이 관세 150% 이상 유지 가능)

| 관세 상한 대안 적용 시나리오 |

※ 개도국 기준임. 단, TRQ 증량기준, 최상위구간의 감축률은 중간값을 적용

- 현행 관세 300%, 국내소비량 100만톤인 품목 A
 - ↳ 민감품목으로 지정(구간감축률 2/3)시 관세 207%로 감축, TRQ 2.65만톤
 - 감축후에도 150% 초과하므로 관세상한 대안 조항 적용
 - ⇒ 세율 207% 유지하되 TRQ 0.33만톤 추가증량 필요(전체2.98만톤 증량)
 - ↳ 특별품목으로 지정(10% 감축가정)시 관세 270%(TRQ 증량의무 없음)
 - ⇒ 감축후에도 150% 초과하나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 대안의 적용이 면제되므로 추가의무 없음

마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 ▶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최근 3년 평균 수입량과 월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물량기준 SSM, 가격기준 SSM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 기준 및 구제 조치 |

	발동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 실행관세에 부과)
물량기준 SSM	최근 3년 평균 수입량 기준 110%초과 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초과 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월평균가격의 85% 이하로 하락시	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85%

- UR 양허관세 범위 내에서만 추가관세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UR 양허관세 이상으로 추가관세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나누어 규율

| UR 양허관세 초과한도 및 발동가능 품목 수 |

UR 양허관세 초과한도		발동 가능 품목 수
UR 양허관세 이내 부과		품목수 제한 없음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LDC : 제한없음
	양허관세의 20% 또는 20%p 중 높은 것	[SVE] : 세번의 10 ~ 15%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것	[일반개도국] : 2 ~ 6개 품목*

바 특별긴급수입관세(SSG)

- ▶ SSG는 UR 당시 관세화*(tariffication)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급증이나 수입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호주 등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SSG 철폐 주장이 제기됨
 - 우리나라의 SSG 대상품목은 120개(세번의 8.3%)이나 '95 ~ '07년간 실제 발동된 품목은 녹두, 팥, 인삼 등 27개(1.9%) 수준
 - *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관세로 전환하는 것
 - 선진국은 SSG 완전 폐지 또는 전체 세번의 1.5%로 감축
 - 개도국은 발동기준 및 초과관세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적용품목을 총 세번의 3%로 축소하거나 현행대로 유지

사 관세 단순화

- ▶ 관세 형태의 복잡성이 관세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수출국들의 주장에 따라 관세 단순화가 논의됨
 - 수출국들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단순증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EU·G10 등은 관세 형태의 다양성 인정을 주장
 - ※ 증가세는 수입가격의 일정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종량세는 수입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매기는 것임. 복합세는 증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임. 우리의 경우 혼합세(76개 5.2%)가 있는데 이는 증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되 더 큰 것을 부과하는 것임
 - 현재 양허 내용보다 복잡한 형태로 양허 금지 및 고도의 복합세의 종량세/증가세로 전환 의무 부과
 - 모든 세번을 단순 증가세로 양허해야할 가능성도 있음

아 in-quota 세율

- ▶ TRQ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in-quota)가 부과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율관세(out-of-quota)가 적용되는데 in-quota 세율에 대해서는 tiered formula 외의 관세감축 방식이 제시됨
-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in-quota 세율의 완전 철폐 등 in-quota 세율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음
 - 우리나라의 TRQ 품목은 고추, 마늘, 대두, 감자, 유제품 등 205개 세번이며 in-quota 세율은 0 ~ 50%에 분포

| 쿼터내 관세 감축 방법 |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 70)% 감축과 (0 ~ 15)%로 감축 중 결과가 낮은 것을 적용 • 구간감축공식 적용시와 동일한 이행기간(5년) 단, 5% 이하의 쿼터내 세율은 이행 첫째 말에 철폐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 35)% 감축 : 선진국의 1/2 • 구간감축공식 적용시와 동일한 이행기간(8년)

| 쿼터내 관세 감축 시나리오 |

※ 감축률은 중간값, Trigger는 최고값을 적용

- 쿼터내 관세가 50%인 품목 B
 - ☞ 선진국기준
 - 60% 감축후 쿼터내관세 20%이므로 15%까지 추가감축 (이행기간 5년)
 - ☞ 개도국기준
 - 30%(선진국의1/2) 감축하므로 35% (이행기간 8년)
- 쿼터내 관세가 5%인 품목 C
 - ☞ 선진국기준
 - 쿼터내 관세가 5%이므로 0%으로 감축 (이행첫해 말)
 - ☞ 개도국기준
 - 30%(선진국의1/2) 감축하므로 3.5% (이행기간 8년)

자 TRQ 관리방안

▶ TRQ 관리가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TRQ 관리 방식에 관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출국 중심으로 제기되어 논의가 진행

-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적용하되 아래의 추가적 규정들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 공표는 최소한 쿼터 개시 90일 전까지(현규정 21일) ■ 신청 처리기간은 선착순 배분의 경우는 30일, 모든 신청서를 동시에 검토할 경우는 60일 이내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은 TRQ 소진율을 공개해야함 ■ 쿼터 미소진에 대한 합리적 경제적 이유가 없는 경우, 수입국은 영업자에게 미사용 쿼터를 다른자에게 이양하도록 요청

- 쿼터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방식 또는 비조건적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함

* TRQ underfill :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TRQ 물량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

- 미소진 메커니즘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동됨

- ① 소진율이 연속 3년 65% 미만
- ② 매년 소진율 증가율이 8%p(소진율 40%이상), 12%p(소진율 40%미만) 미만
- ③ 미소진 이유에 대해 수출국들과 미합의, ④ 수출국들의 메커니즘 발동 요구

| TRQ 소진율(%) |

0	40	65	100
소진율 12%p 증가	소진율 8%p 증가	미발동	
종유(1.4), 전지분유(33.8), 연유(0), 골분(0), 잣(39), 감귤(2), 육설분(13.3)	생사(49)	탈지분유(68), 밤(70), 녹차(73), 보리(77), 인삼(78) 등 총 37 품목	

* 지정된 비율만큼 소진율 증가하지 않으면 TRQ 관리방식 변경 필요

* 선착순 배정방식인 18개 품목은 제외

차 경사관세

▶ 선진국들이 원료농산물보다 가공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농산물 가공산업을 보호하는바 개도국의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가공품 관세를 추가로 감축

- 토마토, 오이, 밀, 고추, 쌀 등의 원료농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목록을 제시
- 가공품은 차상위 구간의 감축률(최상위구간은 +6%p)을 적용

- 일반 감축 후 원료농산물과 가공품의 관세차 5%p 미만시 적용면제
- 추가감축결과 가공품관세가 원료농산물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조정
- 민감품목에는 경사관세 감축 적용 배제
- 선진국과 여건이 가능한 것으로 선언한 개도국에 적용

| 경사 관세 적용 시나리오 |

※구간감축률은 개도국 기준으로 적용

- 레몬(양허관세 30%) - 레몬주스(양허관세 54%)
 - * 레몬은 원료농산물, 레몬주스는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 ☞ 구간감축공식에 따라 감축 : 레몬 18.6%, 레몬주스 33.48%
 - ☞ 레몬과 레몬주스의 관세차가 14.8% 이므로 경사관세 추가감축 필요
 - ☞ 레몬주스는 30.94%까지 추가감축
 - * 레몬주스는 현재 2구간에 속해 38%의 감축률 적용되므로 차상위 구간(3구간)의 감축률인 42.7% 적용해야 함
 - * 만약 레몬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추가 감축 없음

카 열대작물

- ▶ 열대작물*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열대국가의 우대 측면에서 촉발되어 개발을 강조하는 DDA 협상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됨
 - * 열대작물은 일반적으로 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마약류를 대체하여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 품목으로 이해되나 합의된 정의는 없음
- 열대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남미국가들*이 강하게 주장
 - *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파나마, 페루로 열대작물 자유화 논의에서 캐언즈 그룹과 연대하고 있음
-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류, 참깨 등 주요품목이 포함된 열대작물 목록을 제시
- 매우 높은 감축률이 적용되나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의무로 논의됨

1 안	2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감축 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관세 ≤ 25% ⇒ 무세화(관세 : 0) • 양허관세 > 25% ⇒ 85%감축 - 민감품목으로 지정 불가 - 이행기간 : 4년 - 선진국의 의무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감축 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관세 < 10% ⇒ 무세화(관세 : 0) • (양허)관세 ≥ 10% ⇒ 66-73%감축 *단, 최상위구간은 경사관세감축율에 2%p 추가 - 민감품목으로 지정여부에 관한 언급 없음 - 이행기간 : 5년(일반감축시와 동일) - 여건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개도국은 추가감축 장려

| 열대작물 감축 시나리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나나(신선또는 건조)의 현행 양허관세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적용시 현행 양허관세가 25% 이상이므로 85% 감축해 13.5%(이행기간 4년) ↳ 2안적용시 현행 양허관세가 10% 이상이므로 66-73% 감축해 24.3-30.6%(이행기간 5년)
--

국내보조 분야

| 보조금의 체계 |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 GB)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 DM)	④블루박스 (Blue Box : BB)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③ 최소허용보조(DM) : AMS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④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
- ⑤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OTD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속한 기타 구간의 경우 선진국 기준으로는 50 또는 60%, 개도국 기준으로는 33 또는 40% 감축이 예상

- 감축구간 및 감축률, 이행기간
 - 이행기간은 선진국인 경우 5년, 개도국인 경우 8년으로 설정하고 이행 초년도에 큰 감축부담 부여

구 간	OTDS규모 (억달러)	OTD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600 초과	[(75)(85)]%	첫날 총 OTDS의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선진국의 2/3, [33.3] [40]%
2구간(미국, 일본)	600~100	[(66)(73)]%		
3구간(기타 국가)	100억 미만	[(50)(60)]	첫날 총 OTD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첫날 총 OTDS의 20% 감축,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

※ OTDS 감축기준

선진국	최종 양허 AMS + De minimis ('95 ~ '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10%) + Blue box ('95 ~ '00년에 통보한 평균 BB 실적 or 같은 기간 농업총생산액의 5% 중 높은 것)
개도국	최종 양허 AMS + De minimis('95~'00년 or '95~'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0%) + Blue box('95~'00년 혹은 '95~'04년에 통보한 평균 BB 실적 or 같은 기간 농업총생산액의 5% 중 높은 것)

- OTDS 감축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인 농업총생산액을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

나 감축대상보조(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AM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속한 기타 구간의 경우 선진국은 45%, 개도국은 30% 감축이 예상

- 선진국 이행기간 5년, 개도국 이행기간 8년

구간	AMS규모 (억달러)	AM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 초과	70%	첫날 총 AM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30%(선진국의 2/3)
2구간(미국, 일본)	400~150	60%		- 첫날 총 AMS의 3.3% 감축, 나머지는 8년동안 균등 감축
3구간(기타 국가)	150억 미만	45%	첫날 총 AMS의 7.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 AMS 총액뿐 만 아니라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하며, 이행 첫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기준기간 동안 AMS 지원품목 뿐만 아니라 기준기간 이후 AMS지급품목과 기준기간 동안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하로 지급된 품목에 대해서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특정 AMS로 지원 가능

※ 품목특정 AMS상한

기준기간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	기준기간 이후 품목특정 AMS 지급 실적	품목특정 AMS 상한
있음	무관	기준기간 품목특정 AMS 평균액 (선진국 '95~'00년)
없음 (또는 최소허용 보조 기준 이하로 지급)	있음	세부원칙 합의 직전 최근 2년간 품목특정 AMS 평균액
	없음 (또는 최소허용 보조 기준 이하로 지급)	최소허용보조 수준 (선진국 5%)

- 개도국은 ① '95 ~ '00년 혹은 '95 ~ '04년 평균 통보된 AMS지급액, ② '95 ~ '00년 혹은 '95 ~ '04년 평균 생산액의 20%, ③ 해당연도 총 AMS의 20%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품목별 AMS 상한 설정 가능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de minimis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이상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이행은 이행 첫날부터 적용

- ▶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 불특정 de minimis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이상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
- 개도국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이행은 선진국보다 3년 긴 이행기간 부여

라 블루박스

- ▶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 외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비생산시에도 지급)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도입
- ▶ 선진국은 '95 ~ '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은 '95 ~ '00년 또는 '95 ~ '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를 한도로 블루박스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전체 한도는 이행 첫날부터 적용
- ▶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
 -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을 한도로 설정하고 이를 세부 원칙에 첨부
 - 품목특정 AMS를 BB로 전환시 품목별 BB 지급한도는 초과 가능(전체 BB한도는 유지) 하나 전환된 만큼 품목특정 AMS 감축
 - *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BB로 전환시 BB 전체 상한 초과 가능

마 허용보조(Green Box)

- ▶ 현행 보다 개도국의 신축성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직접지불 관련 요건을 강화
- 수혜자격 기준을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 기간 갱신을 인정

[개도국 신축성 확대]

- 정부 서비스-일반서비스(para 2)
 -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관련한 항목 추가

-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para 8)
 - 개도국의 경우 손실이 과거 5개년 평균 생산액 혹은 5개년 중 3개년 평균 생산액의 30%이하인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직접지불제 관련 규정 강화]

- 비연계소득보조(para 6),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보조(para 11), 지역지원 직접지불(para 13)에서 수혜자격 기준을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하여 기준기간 갱신 인정
 - 수혜자격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된 고정불변기간 내의 여러 기준(생산자의 소득, 지위, 생산요소 등)에 의해 결정
 - 기준기간 갱신은 생산자의 생산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재배면적당 지급단가 증가와 연관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보조 및 가격보조와 관련된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수출경쟁분야

가 수출보조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홍콩각료회의 합의사항)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원칙)

나 식량원조

- 일반규정
 - 식량원조는 완전 무상공여로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재수출 금지
 - 수혜국의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

다 수출신용

-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이행 첫날 또는 2010년(개도국 2013년)말 중 빨리 도래하는 시기부터 180일 적용
 - 개도국은 180일로 하되 4년에 걸쳐 phase-in
 - 이행첫날 360일, 이행 2년말 270일, 4년말 180일

4. 향후 대응계획

- ▶ 7.21(월)부터 개최 예정인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
 -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핵심쟁점 중심으로 대응
 -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 그룹(G33)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의 실익 확보 추구
 - 특히, 우리의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 적극 대응
- ▶ 각료회의 전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협상동향 설명회, 전문가 세미나, 세부원칙 타결시 세부원칙 순회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
- ▶ 효과적인 이행계획서(C/S) 작성을 위한 세부원칙상의 옵션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 및 양자협상 전략 수립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별 관심사항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등
 - * 세부원칙 타결 후 이행계획서 작성 및 검증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

참고자료 1

세부원칙 2차/3차 수정안 주요내용 비교

쟁점	세부원칙 2차 수정안('08.5)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시장접근	관세감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colspan="2">구간별 감축률(선진국 5년, 개도국 8년)</th> </tr>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r> <td>75% 초과</td> <td>66 ~ 73</td> </tr> <tr> <td>50% ~ 75%</td> <td>64</td> </tr> <tr> <td>20% ~ 50%</td> <td>57</td> </tr> <tr> <td>20%이하</td> <td>50</td> </tr> </table>	구간별 감축률(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 ~ 73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감축률과 이행기간 등 동일 			
	구간별 감축률(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 ~ 73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관세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상한의 명시적 언급 없음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 세번수가 4%가 넘는 경우 민감품목의 TRQ 0.5% 추가 증량 * 개도국의 경우 150% 및 5.3%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상한의 명시적 언급 없으나, 보상방안 내용 일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초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0.5% 추가 증량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0% 초과범위를 1~2%로 한정하면서 추가부담 규정(단, 적용국가 한정) 한편 개도국 특별품목의 경우는 보상없이 150% 이상 유지 가능 															
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선진국 4 or 6% TRQ증량 : 소비량의 3-6% *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 2/3수준 개도국에 TRQ 증량외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감축을 적용하되 3년 연장 구간감축율의 3/4 적용하되 2년 단축(단, 민감품목수의 2/3에 한정) TRQ이행은 이행첫날 1/3, 2년간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및 TRQ증량수준은 동일 단, TRQ이행기간 부담 다소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 첫날 1/4, 3년 동안 증량 															
특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최소] 8%, [최대 20%] SP의 [40%] [no] 감축면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머지는 평균 15%, 최소 12%, 최대 20%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10-18% 6% 감축면제 또는 감축면제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SP를 평균 10-14% 감축 															
국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감축률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r> <tr> <td>EU</td> <td>[75][85]</td> <td>70%</td> </tr> <tr> <td>미국·일본</td> <td>[66][73]</td> <td>60%</td> </tr> <tr> <td>기타국가</td> <td>[50][60]</td> <td>45%</td> </tr> <tr> <td>개도국</td> <td>[33.3][40]</td> <td>30%</td> </tr> </table> * 최소허용보조 : 50 or 60% 감축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국가	[50][60]	45%	개도국	[33.3][4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허용보조 감축률 외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허용보조는 50%감축하되 이행첫날 감축토록 규정 * 단, 개도국은 33.3% 감축(3년간)
국가	OTDS	AMS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기타국가	[50][60]	45%															
개도국	[33.3][40]	30%															

참고자료 ②

DDA 협상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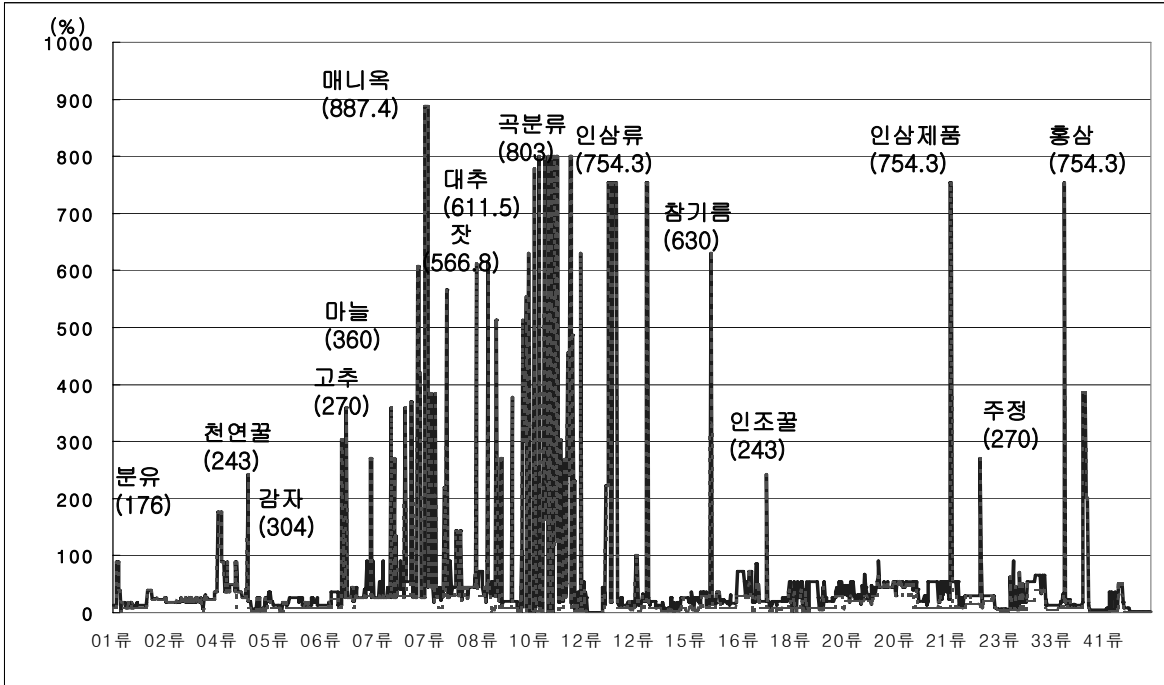
- ▶ '01년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 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당초 협상일정 :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 3)
 -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 9, Cancun 각료회의)
 - ③ 협상완료('04말)
- ▶ '03.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 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 8. 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 '05.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 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 유지
 - ▶ '06.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종단을 선언
 - ▶ '06.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진전을 위해 두 차례 의장 문서를 제시('07.4월, 5월)
 - ▶ '07.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 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07.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08.2월 세부원칙 수정안을 제시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08.5월19일 세부원칙 2차 수정안 배포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08.7월10일 세부원칙 3차 수정안 배포

참고자료 3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양허관세	품목수	품목예시
500%이상	46	매니옥, 곡분류, 참깨, 인삼류, 맥주보리 등
200~499	62	대두, 전분,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 밤 등
100~199	18	분유, 감귤, 양파, 보리분, 사료용근채류 등
50~99	189	오렌지, 과일혼합주스, 면류, 당면, 고추장 등
40~49	132	과일류, 쇠고기, 버섯류, 수박, 오이, 당근 등
30~39	147	치즈,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등
20~29	249	닭고기, 냉동채소류, 돼지고기, 식용유 등
10~19	381	곡물조제품, 물, 과당, 포도당, 과수묘목 등
0.1~9.9	183	섬유원료, 원피, 모피, 밀, 당밀류 등
0	29	종자류, 가축정액 등
미양허	16	쌀 관련 품목
계	1,452	



II. WTO/DDA 농업협상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 관련 추진동향

1. 민감품목 소비량계산 관련 논의동향

- ▶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지정은 ‘세번 단위(partial designation)’로, TRQ물량은 ‘소비량의 x%’로 산출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전
 - 한편, 세번별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해 품목 소비량을 세번별로 배분하는 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한 논의가 '08년 초부터 지속
 - *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의 관세감축률보다 작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대신 TRQ (저율관세쿼터)물량을 늘리거나 또는 추가부담을 이행해야 함
 - * 민감품목 범위는 전체 세번의 4~6%(개도국은 5.3~8%)수준에서, TRQ물량은 소비량의 3~6%(개도국은 2~4%)수준에서 논의 중임
- ▶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해 주요 6개국(미국,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일정수준의 절충안 도출 (4.3)
 - 수입국들이 주장하던 민감품목 세번별 지정 및 소비량의 세번별 배분의 큰 틀은 유지 하면서,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
- ▶ 의장의 세부원칙(안)에는 소비량 데이터를 세부원칙 합의 전까지 WTO사무국에 제출 하도록 하고, 동 데이터 제출 품목에 한하여 민감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토록 규정
 - 현재까지 미국, EU 등 7개국이 소비량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데이터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진행 중임

| 소비량데이터 제출현황(08.7.13일 현재) |

	EU	일본	미국	노웨이	스위스	캐나다	아이슬랜드	평균
실 품목수	56개	40	21	14	64	18	19	33.1
제출세번비중	57.7%	24.9	18.4	14.1	64.7	6.6	28.8	30.7

- ▶ 기 제출국가 및 수출국들은 나머지 국가(개도국 포함)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소비량 데이터를 제출하여 검증받을 것을 요구
 - 각료회의(7.21일 예정) 전까지 각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소비량계산 작업 추진경과

- ▶ 민감품목 소비량데이터 작업팀을 구성(4.10)하여 민감품목 선정이 필요한 품목 검토 및 소비량데이터 등 기초자료 작성 추진
 - 생산액, 관세율, FTA 체결에 따른 개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품목국 중심으로 품목단체와 협의하여 작성
- ▶ 공통품목범위에 추가할 인삼, 단감 등 12개 품목(38개세번)을 제출(5.12)하였고, 우리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요국 회의 및 양자협약에 적극 대응
 - 인삼 등 12개 추가 요청 품목은 모두 공통품목범위에 포함
 -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6개국은 민감품목 검토대상 품목으로 120개품목 476개세번 (HS6단위)을 제시(4.30)하였고, 공통품목범위를 우선 확정하기 위해 추가할 품목리스트 제출을 요청
 - * 공통 품목범위는 민감품목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품목을 망라, 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는 향후 민감품목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3. 향후 추진 계획

- ▶ 주요 7개국의 제출상황 및 협상동향을 감안하여 총 54개 품목(445개 세번, 전체 세번의 30%수준)의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
 - 세부원칙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허용범위를 감안하되, 여타국 제출 수준, 개도국 동향 등을 종합 고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감품목 범위에 비추어 제출범위가 다소 과하게 넓은 측면이 있으나, 특별품목 논의 등도 고려하여 협상전략 차원에서 다소 넓게 제출
 - * 단, 의장 수정안에 민감품목 4~8% 수준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적임
 - 개도국 등 다른나라 제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 제출

분류	제출 예정 품목(54)	
	TRQ품목(28)	비TRQ품목(26)
곡물류(6)	쌀, 보리, 전분, 메밀, 옥수수, 수수	
야채& 과일류(35)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녹차, 인삼, 감귤, 밤, 대추, 잣, 팔, 녹두, 매니옥, 감자, 기타서류, 고구마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단감, 토마토, 수박, 호박, 오이, 딸기, 배추, 상추, 무, 양송이, 자두, 참다래, 표고버섯, 감, 호두
축산류(5)	낙농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달걀
유지류(5)	참깨, 대두, 땅콩	유채, 들깨
감미료(2)	설탕, 천연꿀	
주류(1)	주정	

* 제출예정 품목의 생산액 합계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86% 이상 차지

▶ 제출 이후 동 데이터에 대한 회원국의 검증 작업에 적극 대응

* 검증 및 협의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음

* 단, 제출된 자료는 회원국 전용사이트에 올려져 WTO 회원국만이 열람 가능하므로 필요시 품목국을 통해 세부통계 자료 열람 및 협의 가능

참고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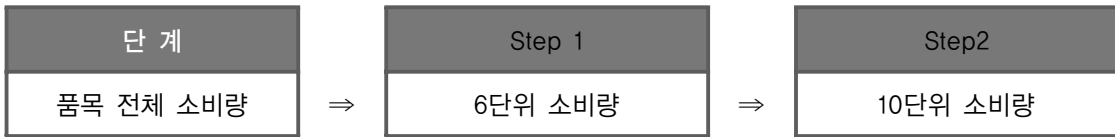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

▶ 계산방식 개요

- 품목 전체 소비량 계산

$$* \text{전체소비량 ('03 ~ '05평균)} = \text{생산량} + \text{수입량} - \text{수출량} - \text{재고변화분}$$

- 품목 전체 소비량을 해당 HS 6단위별로 배분한 후(step 1), HS6단위에 배분된 소비량을 해당 HS 10단위별로 배분(step 2)



- 6단위 배분시 전세계 수입비중을 고려한 전세계 공통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10단위 배분시 각 국별 수입비중에 따라 배분

	Step 1	Step 2
목적	◦ 품목 전체 소비량을 HS 6단위별로 배분	◦ HS 6단위별로 배분된 소비량을 HS 10단위별로 배분
기본 방식	◦ 전세계 공통 배분비중에 따라 배분 - 6단위 전세계 수입액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국별 수입액비중에 따라 배분 - 6단위 수입액대비 해당 10단위 수입액의 비중에 따라 배분
산출 공식	◦ 6단위 소비량 = 전체 소비량 × 6단위 배분비중	◦ 10단위 소비량 = 6단위 소비량 × ($\frac{\text{국별 해당 10단위 수입액}}{\text{국별 해당 6단위 수입액}}$)

▶ 적용 예 (가정 : 품목 전체 소비량이 100)

6단위세번	Step 1		10단위세번	Step 2	
	전세계 수입 비중	소비량 배분		국내 수입 비중	소비량 배분
건조(071290)	5%	5	건조	100%	5
신선(070320)	90%	90	신선탈각	25%	22.5
			신선기타	75%	67.5
냉동(071080)	5%	5	냉동	100%	5
일시저장(071190)	0%	0	일시저장	100%	0

참고 2

우리나라 소비량데이터 제출품목(안)

- 품목수 54, 세번수 445 (10단위, 전체 1452개 세번)
 - 전체 세번중 비율 : 30.6%

번호	품목	세번수	비고		
1	고추	9	고추	7	
			혼합조미료	2	
2	마늘	6			
3	양파	5			
4	생강	1			
5	인삼	28			
6	참깨·참기름	2			
7	땅콩	9			
8	녹차	4			
9	설탕	35			
10	감귤	4	감귤	2	
			기타감귤	1	
			오렌지	1	
11	낙농품	76	탈지	3	
			버터밀크	1	
			전지	3	
			연유	4	
			치즈	5	
			버터	3	
			밀크크림	2	
			기타	58	
12	밤	4			
13	잣	3			
14	대추	3			
15	서류기타	2			
16	녹두	2			
17	매니옥	6			
18	호박	1			
19	수박	1			
20	토마토	5			
21	오이	3			
22	딸기	4			
23	돼지고기	24			
24	가금류	56			

번호	품목	세번수	비고
25	표고버섯	3	
26	호두	2	
27	감	2	
28	고구마	5	
29	옥수수	7	
30	수수	2	
31	달걀	9	
32	배추	1	
33	상치	2	
34	단감	1	
35	사과	1	
36	배	1	
37	포도	1	
38	복숭아	1	
39	쇠고기	20	
40	천연꿀	1	
41	무	1	
42	양송이	5	
43	들깨	4	
44	자두	1	
45	참다래	1	
46	유채	10	
47	쌀	28	
48	보리	19	
49	주정	1	
50	대두	5	
51	감자	9	
52	전분	6	
53	팥	2	
54	메밀	1	
합계		445	

참고 3

공통품목범위 (attachment A)

▶ 실품목 : 159개, 세번수(HS 6단위 기준) : 596개

분류	품목	세번수	해당 세번
동물 생산물	사슴벨벳	1	050790
	가금류 내장	1	050400
	돼지 내장	1	050400
곡류	보리	14	100300, 110290, 110319, 110320, 110419, 110429, 110710, 110720, 190120, 190190, 190410, 190420, 190490, 210690
	메밀	1	100810
	옥수수	5	100510, 100590, 110220, 110313, 110423
	변성전분	4	290543, 290544, 350510, 382460
	귀리	4	100400, 110412, 110422, 230240
	쌀	23	100610, 100620, 100630, 100640, 110230, 110319, 110320, 110419, 110429, 110819, 180690, 190120, 190190, 190211, 190219, 190220, 190230, 190410, 190420, 190490, 190590, 210690, 220600
	호밀	2	100200, 110210
	수수	1	100700
	전분	7	110812, 110813, 110814, 110819, 110820, 190120, 190190
	라이밀	3	100890, 110290, 110319
낙농품	버터	3	040510, 040520, 040590
	버터밀크/사워크림	1	040390
	카세인/염	2	350110, 350190
	치즈	5	040610, 040620, 040630, 040640, 040690
	가당연유/무가당연유	2	040291, 040299
	액상우유	2	040110, 040120
	아이스크림	4	180620, 180690, 190190, 210500
	기타 낙농품	22	040130, 040390, 040410, 040490, 170490, 170211, 170219, 180620, 180631, 180632, 180690, 190110, 190120, 190190, 210112, 210120, 210610,

분류	품목	세번 수	해당 세번
동물 생산물	사슴벌벳	1	050790
	가금류 내장	1	050400
	돼지 내장	1	050400
			210690, 220290, 230990, 350220, 350400
	탈지분유	1	040210
	유장분말	1	040410
	전지분유	2	040221, 040229
	요구르트	1	040310
달걀	난각이 있는 달걀	1	040700
	가공란	9	040811, 040819, 040891, 040899, 190220, 190230, 210690, 350211, 350219
	부화란 & 살아있는 병아리	2	040700, 010511
청과류	아몬드	2	080211, 080212, 200819
	사과	5	081330, 080810, 200971, 200979, 200899
	살구	3	081310, 080910, 200850
	빈랑나무열매	1	080290
	양영경귀	4	070910, 071080, 200190, 200590
	아스파라거스	2	070920, 200560
	애버카도우	2	080440, 200899
	대나무	3	071190, 200490, 200590
	바나나	1	080300
	콩	19	071350, 070820, 071022, 071333, 071390, 200490, 200590, 071332, 071029, 110610, 200490, 200551, 200559, 200600, 210690, 071331, 071339, 200551, 200559
	브라질호두	2	080121, 080122
	방울다다기양배추(신선)	1	070420
	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신선)	1	070490
	당근, 무(신선)	1	070610
	캐슈넛	2	080131, 080132
	꽃양배추, 브로콜리(신선)	1	070410
	샐러리(신선)	1	070940
	버찌	6	081340, 080920, 081190, 200980, 081210, 200860
	밤	2	080240, 081190
이집트콩	1	071320	
치커리	2	070529, 070521	

분류	품목	세번 수	해당 세번
동물 생산품	사슴벌벳	1	050790
	가금류 내장	1	050400
	돼지 내장	1	050400
	클레멘타인	2	080520, 200830
	코코넛	3	080111, 080119, 200980
	커피	6	210111, 090111, 090112, 090121, 090122, 090190
	서양호박	1	070990
	오이	3	070700, 071140, 200110
	절화	1	060310
	대추야자	1	080410
	백합 드라이	1	071290
	가지	1	070930
	무화과	1	080420
	마늘	5	071290, 070320, 071080, 071190, 200190
	생강	1	091010
	인삼	6	121120, 130219, 220290, 220870, 210690, 330190,
	자몽	3	080540, 200921, 200929
	포도	5	080620, 080610, 200961, 200969, 220430
	구아바	1	080450
	헤즐너트	2	080221, 080222
	균질화채소	1	200510
	잼/퓨레	2	200791, 200799
	대추	3	081340, 081090, 081190
	키위	1	081050
	곤약	2	121299, 210690
	리크(부추)	1	070390
	레몬	4	080550, 200931, 200939, 200830
	렌즈콩(건조)	1	071340
	상치(신선)	2	070511, 070519
	여지	1	081090
	용안	2	081340, 081090
	망고	3	080450, 200980, 200899
	매니옥	1	071410
	혼합 조미료	1	210390
	혼합 과일	1	200892

분류	품목	세번 수	해당 세번
동물 생산물	사슴벌벳	1	050790
	가금류 내장	1	050400
	돼지 내장	1	050400
	혼합 주스	1	200990
	혼합 가공 채소	1	200590
	혼합 채소	1	071090
	버섯, 아가리쿠스속	5	071231, 070951, 071080, 071151, 200310, 071239, 070959, 200390, 071239, 070959, 200390
	올리브	2	071120, 200570
	양파	6	071220, 070310, 071080, 071190, 200190, 120991
	오렌지	8	080510, 200911, 200912, 200919, 210690, 220290, 081290, 200830
	기타 감귤	2	080520, 080590
	기타 과일	4	200899, 081340, 081190, 081090
	기타 채소 등	6	071029, 080719, 071490, 070990, 080720, 200600
	복숭아	3	080930, 081190, 200870
	배	4	081340, 080820, 200980, 200840
	완두	3	070810, 071021, 071310
	고추	7	090411, 090412, 090420, 070960, 071080, 071190, 210390
	감	3	081340, 081090, 081090(단감)
	파인애플	5	080430, 081190, 200941, 200949, 200820
	잣	2	080290, 081190
	피스타치오	1	080250
	자두	2	081320, 080940
	파멜로우	1	080590
	감자	10	071290, 110510, 110520, 190590, 070110, 070190, 071010, 071090, 200410, 200520
	화분식물	1	060290
	호박	1	120991
	나무딸기	3	081020, 081120, 081290
	장미	1	060240
	콩소스	1	210310
	샐러드용 근대뿌리, 기타(신선)	1	070690
	시금치	2	070970, 071030
	Starfruit-Fresh	1	081090
	딸기	4	081010, 081110, 081290, 200880

분류	품목	세번 수	해당 세번	
동물 생산품	사슴벌벳	1	050790	
	가금류 내장	1	050400	
	돼지 내장	1	050400	
	스위트 옥수수	3	071040, 200190, 200580	
	고구마	1	071420	
	스위트 스프	1	081090	
	차	4	090210, 090220, 090230, 090240	
	토마토	7	071290, 070200, 071080, 200950, 200210, 200290, 210320	
	호도	2	080231, 080232	
	수박	2	080711, 120999	
	효모	3	210210, 210220, 210230	
	섬유	실크	2	500100, 500200
		쇠고기, 송아지고기	13	010210, 010290, 020110, 020120, 020130, 020210, 020220, 020230, 021020, 021099, 160100, 160210, 160250
육류	설육	12	020610, 020621, 020622, 020629, 020630, 020641, 020649, 020680, 020690, 020734, 160220, 160290	
	돼지고기, 멧돼지고기	18	010391, 010392, 020311, 020312, 020319, 020321, 020322, 020329, 020900, 021011, 021012, 021019, 021099, 160100, 160210, 160241, 160242, 160249	
	가금육	25	010511, 010512, 010519, 010592, 010593, 010599, 020711, 020712, 020713, 020714, 020724, 020725, 020726, 020727, 020732, 020733, 020735, 020736, 020900, 021099, 160100, 160210, 160231, 160232, 160239	
	순록고기	2	010619, 020890	
	면양고기	13	010410, 010420, 020410, 020421, 020422, 020423, 020430, 020441, 020442, 020443, 020450, 021099, 060290	
	유채유	8	120510, 120590, 151411, 151419, 151491, 151499, 230641, 230649	
유지류	피마자유	2	120730, 151530	
	코프라	3	120300, 151311, 151319	
	옥수수유	2	151521, 151529	
	면실유	3	120720, 151221, 151229	
	낙화생유(땅콩유)	8	120210, 120220, 120890, 150810, 150890, 200811, 200819, 230500	

분류	품목	세번 수	해당 세번
동물 생산물	사슴벌벳	1	050790
	가금류 내장	1	050400
	돼지 내장	1	050400
	아마인유	3	120400, 151511, 151519
	마가린	1	151710
	올리브유	3	150910, 150990, 151000
	기타 지방종자유	4	151590, 151620, 151790, 151800
	참깨유	2	120740, 151550
	대두유	4	120100, 150710, 150790, 230400
	해바라기씨유	3	120600, 151211, 151219
	인조기름	7	150100, 150200, 150300, 150430, 150500, 150600, 151610
감미료	과당	3	170250, 170260, 170290
	포도당	2	170230, 170240
	꿀	1	040900
	유당	2	170211, 170219
	단풍당	1	170220
	당밀	2	170310, 170390
	설탕	22	170111, 170112, 170191, 170199, 170290, 170410, 170490, 180610, 180620, 180631, 180632, 180690, 190110, 190120, 190190, 190410, 190531, 190590, 210112, 210120, 210690, 220290
	담배	9	240110, 240120, 240130, 240210, 240220, 240290, 240310, 240391, 240399
와인&주정	맥주	1	220300
	에틸알콜	2	220710, 220720
	진(제네바)	1	220850
	리큐어	1	220870
	럼	1	220840
	Samsu	1	220890
	보드카	1	220860
	위스키	1	220830
	와인주정	1	220820
	와인	6	220410, 220421, 220429, 220510, 220590, 220600
합계	159개	596	



Ⅲ. FTA 농업협상 동향

1. FTA 개요

-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의 한 형태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 FTA는 WTO 규범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는 배치되나, 아래요건 충족시 예외로 인정

| WTO 인정 FTA 요건(1994 GATT 24조 및 양해, GATS 5조) |

-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90~95%이상)으로 하며, 특정분야 전면 제외는 안됨
-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
-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 FTA 협상분야 범위 확대 : 상품분야 무역자유화(관세인하) → 서비스·투자 자유화 →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 ▶ WTO RTA 위원회의 최신 자료('07.7월 현재)에 의하면, 약 38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WTO에 통보되었고, 그 중 205개가 발효

2. 추진경과

- ▶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아세안('07.6)과의 협정이 발효
 -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미 FTA는 '07.4.2 타결하고, 6월 말 협정문에 서명, 현재 국회 비준동의절차 진행 중
 - 캐나다('05.7 협상개시), 인도('06.3), EU('07.5)와는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있고,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쟁점이 압축되고 있음
 - 멕시코와는 SECA*로 추진('06.2 ~ 6)하다가 FTA로 전환('07.12)
 - *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 : FTA보다 자유화 정도가 낮은 지역협정

- ▶ FTA 대상국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병행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금년중 마무리 추진 및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중
 - 금년 하반기, 중국·일본과의 FTA 추진 여부 검토 예정
 - 걸프협력회의*(GCC)와는 '08. 7월 협상개시(7.9 ~ 10, 서울)
 - *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가 체결한 관세동맹
 -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페루 등과는 '09년 이후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 중
 - * MERCOSUR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3. 한·EU FTA

가 추진 현황

- 협상출범('07.5.6) 이후 모두 7차례 협상을 개최
- 제7차 협상(5.13 ~ 15, 브뤼셀)에서는 6개 분과 협상(서비스,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및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진행
 -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관세와 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

- 다만, 일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했고, 전반적으로는 협상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평가

나 분야별 주요결과

▶ 농업(상품양허) (제6차 협상까지)

- 우리측은 농산물 수정양허안과 함께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를 묶어서 제시하는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을 제시('07.11)
 -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EU FTA는 농산물 민감성 고려 원칙에 이미 합의했음을 강조
- EU측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양허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자율관세물량(TRQ),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우리측의 예외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 EU의 상업적 이익이 있는 품목은 한·미 FTA와 동등한 대우 요구

▶ 위생·검역(SPS)

- 지역화 인정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분쟁해결절차 논의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음
- 지역화 인정절차는 2년간 상호 이해 제고 등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수출작업장 승인은 위원회 논의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 중

▶ 지리적 표시(GI)

- 보호범위는 일반 농식품은 양측 기등록 품목을 약식절차를 거쳐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의견이 접근되고 있으나, EU측 보호품목이 많은 포도주·증류주에는 대해서는 입장 조율 중
- 보호수준은 지리적 표시를 상표에 우선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우리 상표법 및 제3국의 상표와의 관계 설정이 주요 변수
 -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법률상 쟁점이 될 요소를 점검해 대응할 예정

다 향후 계획

- 제8차 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시기는 미정이며,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소규모 협의 추진
- 앞으로 분야별 협의를 통해 농산물 양허 등과 관련한 EU측의 구체적 요구가 있을시 농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4. 한·캐나다 FTA

가 추진 현황

- ▶ '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6차례 협상 진행
 - 세차례 상품분야 실무협상('07.6월, 9월, '08.5월) 포함
 - 2005년 이래 3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협상 전체적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
- ▶ 농산물 소수 핵심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양허유형 합의
 - 쌀(16개 세번), 일부 낙농품·가금육, 고추·마늘, 양파, 인삼 등 상당수 민감품목 양허 제외 합의
 - 쇠고기·돼지고기 양허기간 및 대두·천연꿀·사료용근채류·맥주맥 수입쿼타(TRQ) 물량 등 미합의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요구
- ▶ 협상 최종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대안을 마련
 -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및 수입쿼타 물량 등은 국내 수급상황, 수입실적, 여타 FTA 협상내용 등을 감안하여 협의
- ▶ 제14차 협상은 '08. 10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5. 한·인도 CEPA

가 추진 현황

- ▶ '06. 3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12차례 협상 개최 (2차례 실무협의 포함)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논의
 - 2차 ~ 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상품 자유화 방식 등 논의
 - '07. 7월 7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에 대한 논의 시작
 - 인도측은 당초 쌀·육류·사과·배·감귤 등을 포함한 대부분 민감농산물의 양허 개선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이 부정적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자 현재 양허개선 요구대상 농산물을 상당부분 축소
 - 농산물은 여타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높지 않을 전망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협상을 통해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낮춤으로써 양허개선 요구대상 농산물 수를 대폭 감소 시킨 것은 성과로 평가
 - 다만, 인도측이 양허개선 요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협상 종료시까지 신중한 대응 필요
 - * 우리측은 인도 공산품 분야, 인도측은 우리 서비스분야 양허개선에 관심
- ▶ 농산물 양허는 품목별 민감성, 개방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인도의 농업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계획
- ▶ 제11차 협상은 '08. 7월중 인도에서 개최 예정

6. 한·멕시코 FTA

▶ '05. 9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SECA* 협상 추진에 합의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

- '06.2월 협상을 개시, 연내 타결 목표로 추진하다가 제3차 협상('06.6) 이후 양허범위에 양국 입장이 대립, 협상 중단
- 우리측이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공산품의 일부만을 포함한 양허안 제시

▶ '07. 7월 멕시코측이 SECA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 추진을 희망하여 제1차 FTA협상 개최('07.12.5 ~ 7)

- 1차 협상에서는 멕시코 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을 검토하고, 양허협상 일정 등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

▶ 제2차 협상('08.6.9 ~ 11, 서울)은 멕시코가 내부사정상 상품양허를 마련하지 못해 협정문만 협의

- 우리측은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한 보호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전달
- SPS 협상에서는 양측의 SPS 제도를 상호 설명하는 데 주력
 - 멕측은 지역화 인정, 위험평가 및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협정문안을 제시했으며, 우리측은 WTO SPS 협정 이상의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대응

▶ 제3차 협상은 멕시코에서 9월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7.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가. 추진 경위

- ▶ 04년말 ASEAN+3 계기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진행 ('06.11 종료)
 - 간사기관 :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중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
- ▶ '07.3월 이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8차례에 걸쳐 논의 (본회의 5회, 농업전문가 회의 3회)
 - SPS, 제조업,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대부분 합의하였고 농림수산업 영향, 결론 및 권고 등이 잔여쟁점

나. 전망

- ▶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
 - 우리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강조
- ▶ 정식협상 시작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정부차원에서 결정될 전망

'08. 제6차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7.28)

WTO/DDA 각료회의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I. 협상 총괄

II. DDA 농업협상 잠정 타협안 주요내용

III. DDA 잠정 타협안 수산물분야 주요내용





1. 협상 총괄

가. 협상 현황

- ▶ 라미 사무총장과 회원국들은 '08년내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7.21일부터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원칙 합의 모색
 - 각료회의 초반에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이 커 타결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7.25(금) 저녁 주요 7개국 소규모 회의에서 세부원칙(Modalities)의 핵심쟁점에 관한 잠정 타협안 도출
 - Lamy 사무총장은 동 잠정 타협안에 대해 30여개국 각료가 참가하는 “Green Room” 회의에서 의견 수렴 확인
 - ※ 주요 7개국 :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브라질, 중국
- ▶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이 개도국긴급수입관세(SSM)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나, 합의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동 타협안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잔여쟁점사항은 7.26(토)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타협안 협의 중

나. 향후 협상 전망

- ▶ 향후 잔여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라미 사무총장은 새로운 의장문서를 제출 (7.28일 경)하고, 전체 회원국의 회의인 무역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에 상정하여 7.29-30일 경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할 전망
- ▶ 동 세부원칙 타결시 금년말 마무리 협상 진행 예상
 - 금년 하반기 중 각 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품목별 이행계획서(관세 감축 및 보조금 감축 계획 등)를 제출 및 검증
 - 이와 함께,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추진

II. DDA 농업협상 잠정 타협안 주요내용

- ◇ 최상위 구간 관세감축률
 - 선진국 70% (3차 수정안 : 66-73%)
 -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 ◇ 관세상한
 - * 선진국기준만 규정
 - 민감품목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 이상 유지 가능
 -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세번의 1%까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 이상 유지 가능
- ◇ 민감품목(선진국 기준)
 - 개수 : 전체 세번의 4% (3차 수정안 : 4-6%)
 - * 개도국은 1/3 추가
 - TRQ 증량 : 국내소비량의 4% (3차 수정안 : 4-6%)
 - * 개도국은 2/3수준
- ◇ 특별품목(SP : Special Product)
 - 전체 SP 개수 : 전체 세번수의 12% (3차 수정안 : 10-18%)
 - 관세감축면제 SP : 전체 세번수의 5% (3차 수정안 : 0-6%)
 - 평균감축률 : 11% (3차 수정안 : 10-14%)
- ◇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 연간 2.5% 세번에 한하여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 UR 양허관세 초과가능한 SSM은 수입량이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 수입량)의 140% 초과시 발동,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세율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세율의 15% 또는 15%p 중 높은 수치로 한정
 - 단, 수입량 증가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는 SSM 발동 제한
- ◇ SSG(특별긴급관세)
 - * 선진국기준만 규정
 - 발동가능품목수를 이행 첫날 1%에서 시작하여 7년간 철폐
 - 단, 추가관세 부과시 UR 최종양허관세 초과 금지 제한
-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 선진국기준만 규정
 - EU는 80%(3차 수정안 : 75-85%), 미국은 70%(3차 : 66-73%) 감축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 감축률

[잠정 타협안 내용]

- ▶ 선진국 최상위구간 감축률을 70%로 제시(따라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2/3수준인 46.7%가 되는 것임)
 - 이는 3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범위의 중간수준인 것으로 평가

| 관세 감축률 |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 양허관세 ≤20%	50%	0< 양허관세 ≤30%	33.3%
2구간	20< 양허관세 ≤50%	57%	30< 양허관세 ≤80%	38.0%
3구간	50< 양허관세 ≤75%	64%	80< 양허관세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기존 논의동향]

- ▶ 양허관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감축방식을 적용토록 했으며, 최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률이 가장 큰 쟁점
 -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최상위구간 외의 나머지 구간 감축률은 단일수치로 제시(선진국 최상위구간감축률은 66-73%)
 - ※ 동 의장 3차 수정안에서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적용

나. 관세상한(Tariff capping)

[잠정타협안 내용]

- ▶ 선진국의 경우 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 중 전체 세번의 1%는 100%이상 관세유지가 가능 (관세상한 면제)하나 일부 보상 필요
 - 기존 3차 수정안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타협안

- 수출국들이 관세상한을 강하게 주장해온 상황에서 일부 제한 및 보상은 있으나 일률적인 관세상한은 도입되지 않은 점은 수입국 입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임

▶ 다만 개도국 특별품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으로 추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세 100% 이상 세번수가 약 9% 수준

[기존 논의동향]

▶ 미국·EU 및 호주를 비롯한 수출국그룹인 케언즈그룹 등 선진국들과 브라질·인도 등 수출개도국그룹인 G20 등 대부분 국가들이 관세상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상황

- G10(수입국그룹)은 이미 관세감축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고관세품목은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관세상한은 이중적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 G20는 선진국 100%, 개도국 150% 관세상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옴

▶ 의장 3차 수정안에서 관세상한은 도입하지 않았으나 100%(개도국 150%) 이상 고관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는 방안 제시

- 민감품목 : 100%(개도국은 150%) 초과시 TRQ 추가 증량
- 비민감품목 : 100% 초과 세번수를 한정(1~2%)하고 추가적인 부담 규정(단, 일본·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만 인정)
- 특별품목 : 적용 배제(보상없이 관세 150%이상 유지 가능)

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적용 가능

[잠정 타협안 내용]

▶ 민감품목 개수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세번의 4%(개도국은 5.3%), TRQ 증량수준은 국내 소비량의 4%로 제시(개도국은 2.7%)

- 민감품목 개수는 3차 수정안 제시범위(4~6%) 중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TRQ 증량 수준도 3차 수정안 범위(4~6%) 중 낮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 농산물 세번수(1,452개)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감품목은 약 58개

| 3차 수정안과 잠정타협안 내용 비교(선진국) |

조 건	3차안	타협안
Deviation 1/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2/3수준 적용)	[3] [5]	(3)
Deviation 1/2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2수준 적용)	[3.5] [5.5]	(3,5)
Deviation 2/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3수준 적용)	[4] [6]	4

- ※ deviation(이탈수준) :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하는 정도
- ※ () : 나머지 경우의 TRQ증량수준은 구체 내용이 없으나 동 수치로 예상
- ※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 TRQ 증량수준의 2/3수준으로 예상

[기존 논의동향]

- ▶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품목의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해야 함
 - 민감품목 개수 및 TRQ 증량수준이 쟁점사항인바,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수치 범위로 제시하였음
 - ※ TRQ(저율관세쿼터) :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하는 것

라.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 개도국에만 적용

[잠정타협안 내용]

- ▶ SP의 개수는 12%(3차 수정안 : 10 ~ 18%) 평균감축률은 11%(3차 수정안 : 10 ~ 14%), 감축면제범위는 5%(3차 수정안 : 0 ~ 6%)로 제시
- SP 개수는 3차 수정안 범위의 중간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G33의 핵심 이해사항인 반면 선진·수출국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감축면제범위를 비교적 높게 제시한 점은 긍정적

| 특별품목 관련 3차 수정안과 잠정타협안 내용 비교 |

	3차 수정안	잠정 타협안
SP 개수(세번)	10 - 18%	12%
평균감축률	10 - 14%	11%
감축면제 범위(세번)	0 - 6%	5%

※ 우리나라 농산물 세번수(1,452개)를 기준으로 볼 때, 특별품목은 약 174개

[기존 논의동향]

- ▶ 개도국은 일부품목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이슈에 비해 선진국·개도국간의 이견 대립이 더 큰 상황
- 이에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특별품목 개수 및 감축률 등 대부분 사항에 이견차가 있어 개수 및 감축률 등은 범위로 제시
- 특히 SP에 대한 관세감축면제여부가 핵심 쟁점인 바, 선진국 및 수출국들은 감축면제를 반대해왔으며,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은 감축면제 필요성을 주장해옴

마. 특별긴급관세(SSG : Special Safeguard)

(잠정 타협안 내용)

- ▶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해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7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 철폐
- 단, SSG 발동시 추가관세를 부과한 결과가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발동요건 일부 강화
 - ※ UR 양허관세 초과 제한규정은 SSM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후술 참조)

| 연도별 발동가능 품목수 (최단기 철폐 가정) |

이행 시작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전체 세번의 1%	전체 세번의 0.86%	전체 세번의 0.71%	전체 세번의 0.57%	전체 세번의 0.43%	전체 세번의 0.28%	전체 세번의 0.14%	철폐

- ▶ 개도국 SSG 감축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바, 향후 논의 예상
 - ※ 우리나라는 현재 SSG 발동가능품목이 120개(전체 세번의 8.3%)이나, 실제 발동품목은 27개(1.9%, '95 ~ '06)임

[기존 논의동향]

- ▶ 당초 수출국들이 SSG의 완전철폐를 주장한 가운데 EU가 발동가능 품목수를 1.5%로 감축 의사를 표명
- 3차 수정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철폐 또는 1.5%로 감축하는 안 제시(개도국은 3%로 감축)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수준은 현행 SSG 규정을 유지

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잠정 타협안 내용]

- ▶ 연간 세번수의 2.5%에 한하여 추가관세를 UR 양허관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G33과 수출국 주장의 절충안을 제시
 - 다만, 수입량이 최근 3개년 수입량의 40%이상 증가시 허용되며,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수치로 설정
 - ※ 한편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SSM 발동을 제약

[기존 논의동향]

- ▶ 개도국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도록 인정
 - 개도국 긴급수입관세의 발동요건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대립이 큰 상황으로, 특히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수준을 초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
- ▶ 3차 수정안에서는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수준은 G33제안과 선진·수출국제안의 중간수준을 제시
 - 한편, 추가관세의 상한을 UR 양허관세로 설정하면서 예외적으로만 UR 양허관세를 일정수준 넘을 수 있도록 제한
 - UR 양허관세 초과 SSM은 2~6개 품목으로 한정, 초과수준의 상한은 현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것으로 설정

	발동기준	추가관세 (실행관세에 부과)
물량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초과 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초과 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85% 이하로 하락시	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85%

국내보조 분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상황으로, 이번 타협안에서는 OTDS 감축률만 제시

[잠정 타협안 내용]

- ▶ EU의 OTDS 감축수준은 80%(3차 수정안 : 75 ~ 85%), 미국의 감축수준은 70%(3차 수정안 : 66 ~ 73%)로 3차 수정안의 중간수준 제시
 -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OTDS 한도액이 482.2억불에서 144.7억불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 한편, 기타 선진국 및 개도국의 OTDS 감축수준은 아직 구체 수치가 미제시된 상황으로 추후 논의 예상

[기존 논의동향]

- ▶ 개별 보조금 한도뿐만 아니라 그 합계인 OTDS도 감축토록 하며, 구간을 나누고 보조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
 - 미국의 보조총액 감축수준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개도국들은 100 ~ 130억불수준(약75%)으로 감축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170억불(약65%)로 감축의사를 표명하여 의견대립이 큰 상황
 - 이에 의장 3차 수정안은 OTDS 감축률을 수치범위로 제시

| OTDS관련 의장 3차 수정안 내용 |

구 간	OTDS규모 (억달러)	OTD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600 초과	[(75)(85)]%	첫날 총 OTDS의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선진국의 2/3, [33.3] [40]%
2구간(미국, 일본)	600~100	[(66)(73)]%		
3구간(기타 국가)	100억 미만	[(50)(60)]	첫날 총 OTD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첫날 총 OTDS의 20% 감축,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

참고 ①

국내보조분야 3차 수정안 내용

| 보조금의 체계 |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 GB)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 DM)	④블루박스 (Blue Box : BB)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③ 최소허용보조(DM) : AMS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④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
- ⑤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 AM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하며, 3차 수정안에서는 단일수치를 제시하여 대체로 동 수치를 중심으로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
 - 한편, AMS 총액뿐만 아니라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하게 됨
 -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95 ~ '00년 평균 지급액을 한도로 하며, 미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
 - 개도국은 ① '95 ~ '00년 혹은 '95 ~ '04년 평균 통보된 AMS지급액, ② '95 ~ '00년 혹은 '95 ~ '04년 평균 생산액의 20%, ③해당연도 총 AMS의 20% 중 선택하여 품목별 AMS 상한 설정 가능

| OTDS관련 의장 3차 수정안 내용 |

구간	AMS규모 (억달러)	AM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 초과	70%	첫날 총 AM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30%(선진국의 2/3)
2구간(미국, 일본)	400~150	60%		- 첫날 총 AMS의 3.3% 감축, 나머지는 8년동안 균등 감축
3구간(기타 국가)	150억 미만	45%	첫날 총 AMS의 7.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 ▶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de minimis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황
 -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이행은 이행 첫날부터 적용
- ▶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 불특정 de minimis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감축하는 방향으로 논의
 - 개도국 감축이행은 선진국보다 3년 긴 이행기간 부여

다. 블루박스(Blue box)

- ▶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 외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비생산시에도 지급)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도입하면서, 블루박스 보조 총액과 품목별 보조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 선진국은 '95~'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은 '95~'00년 또는 '95~'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를 한도로 설정
 -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되,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시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초과 가능(전체 BB한도는 유지)
 - ※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BB로 전환시 BB 전체 상한 초과 가능

라. 허용보조(Green box)

- ▶ 현행 허용보조 규정보다 개도국의 신축성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직접지불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 개도국에 대해서는 농촌개발 관련 지원도 허용보조로 인정하며, 자연재해 구호 지원 관련 요건을 완화
 - ※ 개도국의 경우 재해손실이 평균 생산액의 30%이하인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선진국은 30%이상일 경우만 지급가능)

- 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서는 수혜자격 설정 기준년도를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기간 변경을 인정
 - ※ 예외적 변경요건으로는 생산자의 생산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재배면적당 지급단가 증가와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 규정

참고 ②

수출경쟁분야 3차 수정안 내용

※ 수출경쟁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상황

가. 수출보조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홍콩각료회의 합의사항)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

나. 식량원조

- 식량원조는 완전 무상공여로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재수출 금지
- 수혜국의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

참고 ③

DDA 협상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 ▶ '01.11월 DDA협상을 개시한 이후, 특히 농업협상의 입장차가 커 세부원칙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기본골격에만 합의('04.8)
 - '05.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 철폐에 합의하여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을 유지
 - ※ DDA협상은 개도국이익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
- ▶ '06.7월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07년부터 협상이 재개되어 '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되면서 논의 활성화
 - '08년 들어 EU·미국·브라질 등 주요국들은 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 진전을 이룸
 - 이에 논의의 진전을 반영하여 '08년 2월 세부원칙 수정안, '08년 5월 2차 수정안, '08년 7월 3차 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 세부원칙 :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세부원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함
- ▶ 라미 사무총장과 회원국들은 '08년내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7.21일부터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원칙 합의 모색
 - 각료회의 초반에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이 커 타결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주요국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핵심 이슈에 대해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
 -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에 최종 합의할 경우 각국은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
 - ※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외 서비스, 규범 등 협상도 동시에 진행 예상



Ⅲ. DDA 잠정 타협안 수산분야 주요내용

- ◇ 수산물 관세 (NAMA에서 공산품, 임산물과 같이 협상)
 - *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비농산물 시장접근
 - 관세감축공식 계수 : 선진국 8, 개도국 20/22/25 중 선택
 - 계수는 관세상한으로 작용. 계수 8을 사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감축 (신축성 미적용시)
 - * 우리나라는 선진국 계수를 사용하되, 수산물은 신축성(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율) 부여를 통해 공산품보다 관세감축폭을 작게 할 계획
 - 개도국 신축성
 - 낮은 계수를 사용할수록 높은 수준의 신축성 부여
 - *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세번의 14% 그리고 수입액의 16%를 넘지 않는 범위내 공식감축율의 50% 이하 적용 가능. 또는 세번의 6.5% 그리고 수입액의 7.5%를 넘지 않는 범위내 미양허하거나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계수 25를 사용할 경우 신축성 사용 못함
 - 신축성 제한요건 (anti-concentration)
 - 최소 세번 기준 20% 혹은 수입액 기준 9%에 공식감축율 적용
 - 분야별 자유화 (무세화)
 - 주요 교역국은 최소 2개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 필요
 - * 우리나라는 수산물 자유화에는 불참한다는 입장
- ◇ 수산보조금
 - 잠정 타협안은 농업과 NAMA에 국한 ⇒ 수산보조금 미포함
 - 농업/NAMA 잠정 타협안에 최종 합의할 경우 수산보조금 협상은 9월초에 진행될 예정

수산물 관세

가. 관세감축공식 및 신축성(formula and flexibility)

[잠정 타협안 내용]

- 선진국 관세감축공식 계수 : 8
- 개도국 관세감축공식 계수 및 신축성 : 아래 표 참조

개도국 계수	신축성(A, B 중 선택)			
	A. 일반 감축율의 50% 적용		B. 감축 면제	
	품목수 %	수입액 %	품목수 %	수입액 %
20	14	16	6.5	7.5
22	10	10	5	5
25	0	0	0	0

[설명]

- 수산물 관세인하는 공산품 관세인하와 함께 NAMA에서 논의
 - 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 시장접근
 - WTO에서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비농산물로 분류
- 관세감축공식 계수는 최종관세의 상한으로 작용
 -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가 8% 이하가 됨
-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에 선진국 계수를 사용하되,
 - 수산물은 신축성(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율 적용)을 부여하여 공산품보다 관세감축폭을 작게 할 계획
 - * 관세 10% 품목의 경우 계수(8) 적용시 4.4%로 떨어지지만 신축성(관세감축율 50%)을 적용하면 7.2%가 됨
 - *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축성 부여는 NAMA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향후 양허안 작성단계에서 양자협상을 통해 본격 논의될 예정

나. 신축성 제한요건(anti-concentration)

[잠정 타협안 내용]

- 개도국 신축성으로 HS 2단위 전체를 제외할 수 없음
- HS 부류(chapter)별로 최소 세번의 20% 또는 수입액의 9%에 공식감축율 적용 의무

[설명]

- 수산물 HS 부류는 주로 3류 및 16류(가공수산물)
- 수산물에 신축성 사용시 동 제한요건이 적용됨

다.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잠정 타협안 내용]

- 주요 WTO 회원국(명단은 추후 결정)은 최소 2개 분야의 자유화 참여
-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는 개도국은 관세감축 공식 계수 상향조정

[설명]

- 수산물, 임산물,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분야별 자유화(무세화) 대상으로 제안됨
- 우리나라는 수산물 자유화에 불참한다는 입장

수산보조금

- 금번 잠정 타협안에 수산보조금 관련 내용은 없음
- 농업/NAMA 세부원칙에 최종 합의할 경우 수산보조금 등 기타 DDA 쟁점에 대한 협상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9월에 2주간 수산보조금 협상을 개최하여 금지보조금의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

'08. 제7차 DDA/FTA 농수산물협상 동향 설명회자료('08.8.8)

WTO/DDA 농업협상 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 I.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 II. 주요 협상내용
- III.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I.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 ▶ 농업 및 비농산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지난 7.21(월)부터 개최된 WTO/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
 - 7.25(금)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이 도출된 이후 타결전망이 밝아졌던 가운데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해 회의기간을 연장하면서 집중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7.29(화) 결렬됨
 -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과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인도·중국이 협상 막판까지 의견대립이 커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함
- ▶ 향후 DDA협상 일정 및 재개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
 - 이번 협상 결렬로 향후 DDA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어 1~2년 내에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 금년 11월 미국 대선, 내년 인도 총선, EU 집행위원 교체, Lamy WTO 사무총장 임기 종료 등 여건 감안
 - 한편 최근 미국 및 브라질 등이 향후 1~2개월 내 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 이번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논의 진전사항을 기술한 농업 및 비농산물분야 의장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



II. 주요 협상내용

- ▶ 주요 논의내용 및 잔여쟁점
 - 관세감축률,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관세상한, 보조금감축률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룸
 - 주요 잔여쟁점으로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면화보조금, TRQ 신설문제, 관세단순화, 블루박스 및 AMS 품목별 상한 등이 있음

| 잠정 타협안 주요내용 |

	선진국	개도국																						
관세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5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70</td> </tr> <tr> <td>50% ~ 75%</td> <td>64</td> </tr> <tr> <td>20% ~ 50%</td> <td>57</td> </tr> <tr> <td>20%이하</td> <td>50</td> </tr> </tbody> </table>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8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130% 초과</td> <td>46.7</td> </tr> <tr> <td>80% ~ 130%</td> <td>42.7</td> </tr> <tr> <td>30% ~ 80%</td> <td>38.0</td> </tr> <tr> <td>30%이하</td> <td>33.3</td> </tr> </tbody> </table>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 ~ 130%	42.7	30% ~ 80%	38.0	30%이하	33.3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 ~ 130%	42.7																							
30% ~ 80%	38.0																							
30%이하	33.3																							
관세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 *단, TRQ증량 등 추가 보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예상) *단,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 																						
민감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4% TRQ증량 : 소비량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5.3% TRQ증량 : 소비량의 2.7% 																						
특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전체 세번의 12% 감축면제범위 : 전체 세번의 5% 평균감축률 : 11% 																						
S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G : 이행초 1%로 감축, 7년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G : 12년간 2.5%로 감축(예상) 																						
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M : 적용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M : UR양허관세 초과 제한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한정, 수입량이 140%증가시 발동, 초과 한도는 당해연도 양허관세의 15% or 15%p 중 높은 것으로 설정 																						
OTDS, AMS, De minimis, 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감축률(%) (예상) (잠정타협안은 미국·EU의 OTDS 감축률만 제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h>De minimis</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80</td> <td>70</td> <td rowspan="3">50</td> </tr> <tr> <td>미국·일본</td> <td>70</td> <td>60</td> </tr> <tr> <td>기타국가</td> <td>50 ~ 60</td> <td>45</td> </tr> </tbody> </table> BB한도 : '95 ~ '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80	70	50	미국·일본	70	60	기타국가	50 ~ 6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감축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h>De minimis</th> </tr> </thead> <tbody> <tr> <td>개도국</td> <td>33.3 ~ 40</td> <td>30</td> <td>33.3</td> </tr> </tbody> </table> BB한도 : '95 ~ '00년 or '95 ~ '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 	국가	OTDS	AMS	De minimis	개도국	33.3 ~ 40	30	33.3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80	70	50																					
미국·일본	70	60																						
기타국가	50 ~ 60	45																						
국가	OTDS	AMS	De minimis																					
개도국	33.3 ~ 40	30	33.3																					



Ⅲ.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가. 평 가

- ▶ 이번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 실패는 실무협상을 통해 쟁점 이슈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쟁점사항이 각료회의에 회부된 점 등이 주요 요인
- ▶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는바, 인도·중국·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이 선진국과 대립하는 양상 전개
 -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

나.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협상 재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협상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G10 및 G33 등과의 공조방향 모색
 - 금번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최종 협상 타결시까지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
 - ※ 특별품목 관세감축면제범위 확보, 일률적인 관세상한 도입 저지 등
- ▶ 각료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을 감안하여 DDA협상 타결시 농어업분야 전체 및 품목별 영향 분석 작업 보완
 - 금번 각료회의 논의내용이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될 가능성

참 고

각료회의 추진 경과

7.20(일)

- 그룹내 공조회의 개최

- G10 및 G33 그룹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공동 대응방향 모색

7.21(월)
~ 7.24(목)

- TNC회의 및 그린룸회의 등에서 각국 기존 입장 반복
- 소그룹회의를 통해 SP/SSM, 인쿼터관세 등 집중 논의
- 주요 7개국(미·EU·브·인·일·호·중) 회의를 통해 절충안 모색

- TNC 회의 및 그린룸회의에 참여하여 관세상한, 특별품목, SSM 등에 있어 우리입장 강조
- SP/SSM 및 인쿼터관세 소그룹회의에 참여하여 집중 논의 참여
- G10 및 G33 회의를 통해 소그룹회의 및 그린룸회의 등 공조방안 모색

7.23(수)
~ 7.25(금)

- 노르웨이 양자 면담(7.23)
- 중국 양자 면담(7.24)
- 대만 양자 면담(7.25)

- G10 공조국인 노르웨이 및 대만과 양자면담을 통해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 공조방안 논의
- G33 공조국인 중국과 양자면담을 통해 특별품목 및 SSM 공조 모색

7.25(금)

- 그린룸회의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 타협안' 도출

7.26(토)
~ 7.29(화)

- 주요 7개국 회의 및 그린룸회의, 소그룹회의 등을 통해 핵심쟁점 및 잔여쟁점에 대한 추가논의 진행

- 그린룸회의 및 소그룹회의 등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 반영 노력

7.29(화)

- 라미 WTO 사무총장 '협상 결렬' 선언

| 소규모 각료회의 주요 논의내용 |

[잠정타협안(7.25) 주요내용]

- ◇ 최상위 구간 관세감축률
 - 선진국 70% (3차 수정안 : 66 ~ 73%)
 -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 ◇ 관세상한
 - * 선진국기준만 규정
 - 민감품목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 이상 유지 가능
 -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세번의 1%까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 이상 유지 가능
- ◇ 민감품목(선진국 기준)
 - 개수 : 전체 세번의 4% (3차 수정안 : 4 ~ 6%)
 - * 개도국은 1/3 추가
 - TRQ 증량 : 국내소비량의 4% (3차 수정안 : 4 ~ 6%)
 - *개도국은 2/3수준
- ◇ 특별품목(SP : Special Product)
 - 전체 SP 개수 : 전체 세번수의 12% (3차 수정안 : 10 ~ 18%)
 - 관세감축면제 SP : 전체 세번수의 5% (3차 수정안 : 0 ~ 6%)
 - 평균감축률 : 11% (3차 수정안 : 10 ~ 14%)
- ◇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 연간 2.5% 세번에 한하여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 UR 양허관세 초과가능한 SSM은 수입량이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 수입량)의 140% 초과시 발동,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세율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세율의 15% 또는 15%p 중 높은 수치로 한정
 - 단, 수입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는 SSM 발동 제한
- ◇ SSG(특별긴급관세)
 - * 선진국기준만 규정
 - 발동가능품목수를 이행 첫날 1%에서 시작하여 7년간 철폐
 - 단,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 초과 불가
-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 선진국기준만 규정
 - EU는 80%(3차 수정안 : 75 ~ 85%), 미국은 70%(3차 : 66 ~ 73%) 감축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 감축률

[잠정 타협안 내용]

- ▶ 선진국 최상위구간 감축률을 70%로 제시(따라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2/3수준인 46.7%가 됨)
 - 이는 3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범위의 중간수준인 것으로 평가

| 관세 감축률 |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 양허관세 ≤20%	50%	0< 양허관세 ≤30%	33.3%
2구간	20< 양허관세 ≤50%	57%	30< 양허관세 ≤80%	38.0%
3구간	50< 양허관세 ≤75%	64%	80< 양허관세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기존 논의동향]

- ▶ 양허관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감축방식을 적용토록 했으며, 최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률이 가장 큰 쟁점
 -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최상위구간 외의 나머지 구간 감축률은 단일수치로 제시(선진국 최상위구간감축률은 66 ~ 73%)
 - ※ 동 의장 3차 수정안에서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적용

▶ 주요품목 감축 후 관세율수준

품목	현행관세율 (%)	선진국 기준		개도국 기준	
		일반품목기준	민감품목기준	일반품목기준	민감품목기준
쌀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고추	270	81.0	207.0	144.0	228.0
돼지고기	25	10.8	20.3	16.7	22.2
쇠고기	40	17.2	32.4	24.8	34.9
분유	176	52.8	134.9	93.9	148.6
마늘	360	108.0	276.0	192.0	304.0
감귤류	144	43.2	110.4	76.8	121.6
가공용 대두	487	146.1	373.4	259.7	411.2
인삼	754	226.3	578.3	402.3	637.0
닭고기	20	10.0	16.7	13.3	17.8
참깨·참기름	630	189.0	483.0	336.0	532.0
양파	135	40.5	103.5	72.0	114.0
밤	219.4	65.8	168.2	117.0	185.3
감자	304	91.2	233.1	162.1	256.7
보리	324	97.2	248.4	173.3	273.6
고구마	241.2	72.4	184.9	128.6	203.7
오리·거위	18	9.0	15.0	12.0	16.0
표고버섯	90	27.0	69.0	51.6	77.4
대추	611.5	183.5	468.8	326.1	516.4
천연꿀	243	72.9	186.3	129.6	205.2
녹두·팥	607.5	182.3	465.8	324.0	513.0
생강	377.3	113.2	289.3	201.2	318.6
에틸알콜	270	81.0	207.0	144.0	228.0
땅콩	230.5	69.2	176.7	122.9	194.6
옥수수	630	189.0	483.0	336.0	532.0
녹차	513.6	154.1	393.8	273.9	433.7
잣	566.8	170.0	434.5	302.3	478.6
신선과일	45	19.4	36.5	27.9	39.3
조란	41.6	17.9	33.7	25.8	36.3
유제품	89	26.7	68.2	51.0	76.3
감자전분	455	136.5	348.8	242.7	384.2

* 관세감축율은 선진국기준시 50/57/64/70, 개도국기준시 33.3/38/42.7/46.7 적용함

** 민감품목의 경우는 deviation 2/3을 적용함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적용 가능

[잠정 타협안 내용]

▶ 민감품목 개수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세번의 4%(개도국은 5.3%), TRQ 증량수준은 국내 소비량의 4%로 제시(개도국은 2.7%)

※ 우리나라 농산물 세번수(1,452개)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감품목은 개도국 기준시 약 77개

| 3차 수정안과 잠정타협안 TRQ증량수준 비교(선진국, %) |

조 건	3차안	타협안
Deviation 1/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2/3수준 적용)	[3] [5]	(3)
Deviation 1/2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2수준 적용)	[3.5] [5.5]	(3,5)
Deviation 2/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3수준 적용)	[4] [6]	4

※ deviation(이탈수준) :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하는 정도

※ () : 나머지 경우의 TRQ증량수준은 구체 내용이 없으나 동 수치로 예상

※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 TRQ 증량수준의 2/3수준으로 예상

[관련 논의사항]

▶ 개도국의 경우 감축률 하향조정하되, TRQ 증량없이 이행기간 단축하는 방안을 세분화 하는 것이 농업의장주재 소그룹회의에서 잠정합의됨

- ① 일반감축률의 3/4 적용, 이행기간 1년 단축, 민감품목 2/3에 한해 적용
- ②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이행기간 2년 단축, 민감품목 1/2에 한해 적용
- ③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이행기간 3년 단축, 민감품목 1/3에 한해 적용

▶ 일본이 TRQ 신설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기존 논의동향]

▶ 민감품목 개수 및 TRQ 증량수준이 쟁점사항인바,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수치 범위로 제시하였음

• 개수 : 4 ~ 6%(개도국 5.3 ~ 8%), TRQ 증량수준 : 3 ~ 6%(개도국은 2 ~ 4%)

- ※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 증량외에 ①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연장, ② 일반 감축률의 3/4를 적용하되 TRQ증량은 없이 이행기간 2년 단축(단, 민감품목 수의 2/3에 한해서 적용 가능)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 개도국에만 적용

[잠정타협안 내용]

- ▶ SP의 개수는 전체 세번의 12%, 평균감축률은 전체 특별품목에 대해 11% 감축, 감축면제 범위는 전체 세번의 5%로 제시
- SP 개수는 3차 수정안 범위의 중간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G33의 핵심 이해사항인 반면 선진·수출국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감축면제범위를 비교적 높게 제시한 점은 긍정적

| 특별품목 관련 3차 수정안과 잠정타협안 내용 비교 |

	3차 수정안	잠정 타협안
SP 개수(세번)	10 - 18%	12%
평균감축률	10 - 14%	11%
감축면제 범위(세번)	0 - 6%	5%

[기존 논의동향]

- ▶ 개도국은 일부품목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히 관세감축면제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선진국·개도국간의 이견 대립이 첨예했음
- 이에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특별품목 개수 및 감축률 등 대부분 사항에 이견차가 있어 개수 및 감축률 등을 범위로 제시
- SP에 대한 관세감축면제여부가 핵심 쟁점인 바, 선진국 및 수출국들은 감축면제를 반대해왔으며,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은 감축면제 필요성을 주장해옴

라. 관세상한 (Tariff capping)

[잠정타협안 내용]

- ▶ 선진국의 경우 보상 전제하에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비민감품목은 전체 세번의 1% 까지 100%이상 관세유지 가능
- 기존 3차 수정안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타협안

※ 3차 수정안의 보상 내용 : ① 민감품목은 100% 초과 세번에 대해 TRQ 0.5% 추가 증량 ② 비민감품목은 100% 초과시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 0.5%를 추가 증량 하거나, 해당 세번의 이행기간 2년 단축 또는 관세감축률 5%p 추가

- 수출국들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상한을 강하게 주장해온 상황에서 일부 보상은 있으나 관세상한 적용에 있어 상당부분 예외를 확보한 점은 수입국 입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임

[기존 논의동향]

- ▶ 미국·EU 및 호주를 비롯한 수출국그룹인 케언즈그룹 등 선진국들과 브라질·인도 등 수출개도국그룹인 G20 등 대부분 국가들이 관세상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상황
 - G10(수입국그룹)은 이미 관세감축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고관세품목은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관세상한은 이중적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 ※ G20는 선진국 100%, 개도국 150% 관세상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옴
- ▶ 의장 3차 수정안에서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 적용에 있어 예외를 두는 한편, 보상하는 방안 제시
 - 민감품목 : 상한 적용을 면제하되 초과시 TRQ 0.5%추가 증량
 - 비민감품목 : 전체 세번의 1%에 한하여 상한 적용을 면제하되 부담 규정(단, 일본·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만 인정)
 - 특별품목 : 상한 적용 배제(단, 보상 없음)

마. 특별긴급관세(SSG : Special Safeguard)

[잠정 타협안 내용]

- ▶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째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7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 철폐
 - 단, SSG 발동시 추가관세를 부과한 결과가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발동요건 일부 강화
 - ※ UR 양허관세 초과 제한규정은 SSM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후술 참조)

연도별 발동가능 품목수

이행 시작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전체 세번의 1%	전체 세번의 0.86%	전체 세번의 0.71%	전체 세번의 0.57%	전체 세번의 0.43%	전체 세번의 0.28%	전체 세번의 0.14%	철폐

[관련 논의사항]

- ▶ 개도국 SSG에 대해서는 SSG 발동대상을 12년간 전체 세번의 2.5%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이 논의되었음
 - ※ 우리나라는 현재 SSG 발동가능품목이 120개(전체 세번의 8.3%)이나, 실제 발동품목은 27개(1.9%, '95 ~ '06)임

[기존 논의동향]

- ▶ 당초 수출국들이 SSG의 완전철폐를 주장한 가운데 EU가 발동가능 품목수를 1.5%로 감축 의사를 표명
 - 3차 수정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철폐 또는 1.5%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개도국은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3%로 감축)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수준은 현행 SSG 규정을 유지

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잠정 타협안 내용]

- ▶ 연간 세번수의 2.5%에 한하여 추가관세를 UR 양허관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 G33과 수출국 주장의 절충안을 제시
 - 다만, 수입량이 최근 3개년 평균수입량의 140% 이상시 허용되며,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수치로 설정
 - ※ 한편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SSM 발동을 제약

[관련 논의사항]

- ▶ 인도·인니 등 G33은 UR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SSM과 관련한 잠정 타협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 등과 대립
 - 연간 세번수의 7%까지 허용하고, 수입량이 최근 3개년 수입량의 110% 이상시 발동 되어야 하며 UR 양허관세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관세의 30% 또는 30%p 중 높은 수치로 설정할 것을 주장
- ▶ 합의도출을 위해 다른 대안이 미국·인도·중국 등 주요 7개국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관련 제안 |

- ① 식량안보 등에 입증 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비례하는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② 수입량이 최근 3개년 수입량의[115~120]초과 [135~140] 미만일 경우 구제조치는 당해년도 양허관세의 33% 또는 8%p 중 높은 것으로 하고, [135~140] 이상일 경우 구제조치는 당해년도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높은 것으로 하는 방안

[기존 논의동향]

- ▶ 개도국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도록 인정
 - 개도국 긴급수입관세의 발동요건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대립이 큰 상황으로, 특히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수준을 초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
- ▶ 3차 수정안에서는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수준은 G33제안과 선진·수출국제안의 중간 수준을 제시
 - 한편, 추가관세의 상한을 UR 양허관세로 설정하면서 예외적으로만 UR 양허관세를 일정 수준 넘을 수 있도록 제한
 - UR 양허관세 초과 SSM은 2~6개 품목으로 한정, 초과수준의 상한은 현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것으로 설정

	발동기준	추가관세 (실행관세에 부과)
물량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초과 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초과 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85% 이하로 하락시	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85%

사. 쿼터내 관세(in - quota tariffs)

[관련 논의사항]

- ▶ TRQ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Quota)까지는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데 쿼터내 관세도 감축 의무
- ▶ 선진국의 경우 쿼터내관세를 50% 감축하되, 감축후 관세가 10%를 초과할 수 없음(이행 기간 5년)
 - ※ 쿼터내 관세의 상한인 10%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대립이 있음(1 ~ 2%p내외)
 - 단, 5% 이하의 쿼터내 관세는 이행 첫해 말에 철폐
- ▶ 개도국의 경우 쿼터내관세를 25%(선진국의 1/2) 감축(이행기간8년)
 - 관세감축이 면제되는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 감축도 면제
 - ※ 개도국의 감축률을 선진국의 1/2보다 다소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기존 논의동향]

- ▶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쿼터내 관세 완전 철폐 등 쿼터내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은 쿼터내 관세의 감축률 등을 일정 범위로 제시함
 - 선진국은 (50 ~ 70)% 감축과 (0 ~ 15)%로 감축 중 결과가 낮은 것을 적용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1/2을 적용하도록 함

국내보조 분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상황으로, 잠정 타협안에서는 OTDS 감축률만 제시

[잠정 타협안 내용]

- ▶ EU의 OTDS 감축수준은 80%(3차 수정안 : 75 ~ 85%), 미국의 감축수준은 70%(3차 수정안 : 66 ~ 73%)로 3차 수정안의 중간수준 제시
 -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OTDS 한도액이 482.2억불에서 144.7억불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 EU는 568억 유로에서 221억 유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 ※ 기타 선진국 및 개도국의 OTDS 감축수준은 구체 수치가 제시되지 않음

[기존 논의동향]

- ▶ 개별 보조금 한도뿐만 아니라 그 합계인 OTDS도 감축토록 하며, 구간을 나누고 보조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
 - 미국의 보조총액 감축수준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개도국들은 100 ~ 130억불수준(약 75%)으로 감축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170억불(약65%)로 감축의사를 표명하여 의견대립이 큰 상황
 - 이에 의장 3차 수정안은 OTDS 감축률을 수치범위로 제시

| OTDS관련 의장 3차 수정안 내용 |

구 간	OTDS규모 (억달러)	OTD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600 초과	[(75)(85)]%	첫날 총 OTDS의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선진국의 2/3, [33.3] [40]%
2구간(미국, 일본)	600 ~ 100	[(66)(73)]%		
3구간(기타 국가)	100억 미만	[(50)(60)]	첫날 총 OTD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첫날 총 OTDS의 20% 감축,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

참고 ①

국내보조분야 3차 수정안 내용

| 보조금의 체계 |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 GB)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 DM)	④블루박스 (Blue Box : BB)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③ 최소허용보조(DM) : AMS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④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
- ⑤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 AM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하며, 3차 수정안에서는 단일수치를 제시하여 대체로 동 수치를 중심으로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
 - 한편, AMS 총액뿐만 아니라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하게 됨
 -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95 ~ '00년 평균 지급액을 한도로 하며, 미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
 - 개도국은 ① '95 ~ '00년 혹은 '95 ~ 04년 평균 통보된 AMS지급액, ② '95 ~ '00년 혹은 '95 ~ 04년 평균 생산액의 20%, ③ 해당연도 총 AMS의 20% 중 선택하여 품목별 AMS 상한 설정 가능

| OTDS관련 의장 3차 수정안 내용 |

구간	AMS규모 (억달러)	AM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 초과	70%	첫날 총 AM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30%(선진국의 2/3)
2구간(미국, 일본)	400 ~ 150	60%		- 첫날 총 AMS의 3.3% 감축, 나머지는 8년동안 균등 감축
3구간(기타 국가)	150억 미만	45%	첫날 총 AMS의 7.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 ▶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de minimis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황
 -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이행은 이행 첫날부터 적용
- ▶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 불특정 de minimis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감축하는 방향으로 논의
 - 개도국 감축이행은 선진국보다 3년 긴 이행기간 부여

다. 블루박스(Blue box)

- ▶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 외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비생산시에도 지급)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도입하면서, 블루박스 보조 총액과 품목별 보조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 선진국은 '95~'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은 '95~'00년 또는 '95~'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를 한도로 설정
 -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되,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시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초과 가능(전체 BB한도는 유지)
 - ※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BB로 전환시 BB 전체 상한 초과 가능

라. 허용보조(Green box)

- ▶ 현행 허용보조 규정보다 개도국의 신축성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직접지불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 개도국에 대해서는 농촌개발 관련 지원도 허용보조로 인정하며, 자연재해 구호 지원 관련 요건을 완화
 - ※ 개도국의 경우 재해손실이 평균 생산액의 30%이하인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선진국은 30%이상일 경우만 지급가능)

- 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서는 수혜자격 설정 기준년도를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기간 변경을 인정
 - ※ 예외적 변경요건으로는 생산자의 생산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재배면적당 지급단가 증가와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 규정

참고 2

수출경쟁분야 3차 수정안 내용

※ 수출경쟁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상황

가. 수출보조

-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홍콩각료회의 합의사항)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

나. 식량원조

- 식량원조는 완전 무상공여로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재수출 금지
- 수혜국의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

〈 참고자료 1 〉 잠정타협안 주요내용 적용 시나리오

가. 관세감축(개도국기준)

- 양허관세 300%, 세번의 국내소비량 100톤인 품목A

※ TRQ 증량기준은 선진국의 2/3 적용

조 건		감축 후 세율	비고
일 반 감 축		(감축률 46.7%) 159.9%	-
민감 품 목	① 일반감축률의 2/3	(감축률 31.1%) 206.7%	TRQ 2톤 증량
	② 일반감축률의 1/2	(감축률 23.4%) 229.8%	TRQ 2.3톤 증량
	③ 일반감축률의 1/3	(감축률 15.6%) 253.2%	TRQ 2.7톤 증량
	④ 일반감축률의 3/4	(감축률 35%) 195%	이행기간 7년 (민감품목 2/3만 사용가능)
	⑤ 일반감축률의 2/3	(감축률 31.1%) 206.7%	이행기간 6년 (민감품목 1/2만 사용가능)
	⑥ 일반감축률의 1/2	(감축률 23.4%) 229.8%	이행기간 5년 (민감품목 1/3만 사용가능)
	⑦ 일반감축률 적용	(감축률 46.7%) 159.9%	이행기간 11년

※ 옵션 ④, ⑤, ⑥, ⑦은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음

- 품목A의 현행 TRQ가 10(30)만톤 이상인 경우 TRQ 0.5(1)만톤 적게 증량

나. 관세 상한 대안(개도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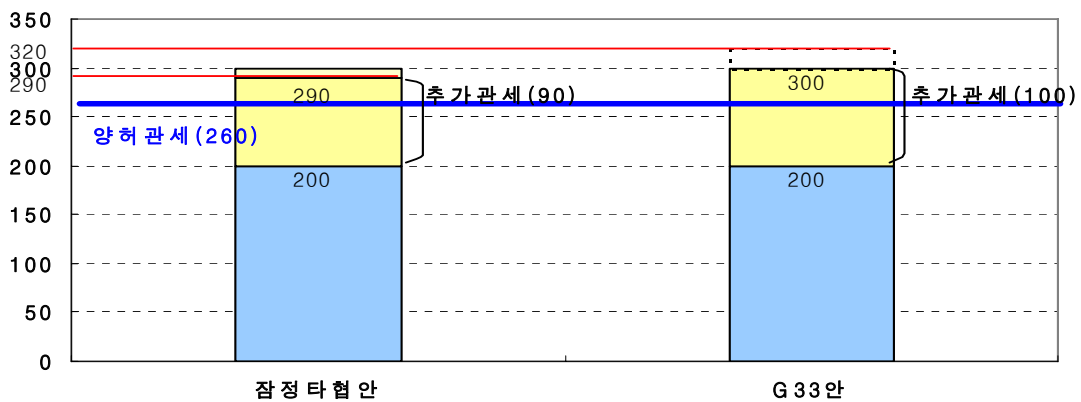
[현행 관세 300%, 국내소비량 100만톤인 품목 A]

- ① 민감품목으로 지정(구간감축률 2/3)시 관세 207%로 감축, TRQ 2.65만톤
 → 감축후에도 150% 초과하므로 관세상한 대안 조항 적용
 ⇒ 세율 207% 유지하되 TRQ 0.33만톤 추가증량 필요
- ② 특별품목으로 지정(10% 감축가정)시 관세 270%(TRQ 증량의무 없음)
 ⇒ 감축후에도 150% 초과하나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 대안의 적용이 면제되므로 추가의무 없음

다.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

[UR 양허관세 260%, 감축4년차 양허관세 200% 인 품목B의 이행 1~3년차 평균수입량 100톤, 4년차 수입량 150톤]

- SSM 발동(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260%) 초과가능 수입량 기준
 - 잠정타협안은 수입량이 140톤 이상, G33입장은 110만톤 이상이면 가능
- 3차 수정안에 따르면 추가관세는 4년차 양허관세 (200%~일반감축률 적용시)의 50%(100%) 또는 50%p 중 큰 것인 100%를 부과하게 되어 전체 관세는 300%(=200%+100%)가 되나 UR 양허관세 초과 정도가 문제가 됨
 - ① 잠정타협안의 UR 양허관세 초과 한도
 - 당해연도 양허관세의 15% ($30\%=200\% \times 0.15$) 또는 15%p 보다 큰 것을 한도로 하므로 290% (260%+30%)가 추가관세 포함한 전체관세의 상한
 - ⇒ SSM 발동시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290%
 - ② G33 입장의 UR 양허관세 초과 한도
 - 당해연도 양허관세의 30% ($60\%=200\% \times 0.3$) 또는 30%p 보다 큰 것을 한도로 하므로 320%(260%+30%)가 추가관세 포함한 전체관세의 상한
 - ⇒ SSM 발동시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300%



라. 쿼터내 관세 감축

[쿼터내 관세가 50%인 품목 C]

- ① 선진국 : 50% 감축후 관세가 25%이므로 10%까지 추가감축(이행기간 5년)
- ② 개도국 : 25% 감축하므로 37.5%로 감축 (이행기간 8년)

[쿼터내 관세가 5%인 품목 D]

- ① 선진국 : 쿼터내 관세가 5% 이므로 0으로 감축 (이행첫해말)
- ② 개도국 : 25% 감축하므로 3.75%로 감축 (이행기간 8년)

〈 참고자료 2 〉 WTO/DDA 협상 경과

- ▶ '01.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출범

※ 당초 협상일정 :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 3)
- ② 이행계획서 제출('03. 9, Cancun 각료회의)
- ③ 협상완료('04말)

- ▶ '03.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했으나, '04.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 협상, '04. 8. 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framework) 채택
- ▶ '05.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진전의 추동력을 유지
- ▶ '06.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이 협상 잠정중단 선언
- ▶ '06.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 '07.1.27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
- ▶ '07.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에서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 ▶ '07.7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이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 '08년 들어 EU·미국·브라질 등 주요국들이 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 진전을 이룸
 - * '08.2월 1차 수정안, 5월 2차 수정안, 7월 3차 수정안 배포
- ▶ '08. 7.21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세부원칙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 도출 실패 (7.29)

'08. 제8차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9.30)

DDA/FTA 농업협상 동향

I. DDA 농업협상 동향

II. FTA 농업협상 동향





I. DDA 농업협상 동향

1. 최근 협상동향

- ▶ 7월 DDA협상 소규모각료회의* 결렬 이후, Lamy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
 - 브라질과 호주는 협상 재개에 적극적, EC와 일본은 중립적 입장
 - 인도와 미국이 협상 재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Lamy 총장 방문을 계기로 협상 재개에 참여할 의사 표명
 - *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잠정타협안이 제시(붙임2 참조)되기도 하였으나,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주요국간 이견차로 결렬

- ▶ 9.10 및 9.17 ~ 20일 G7(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중국) 고위급회의가 개최 되어 향후 협상일정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
 - 특히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 <참고 1> SSM관련 최근 주요 논의내용 참고
 - TRQ(저율관세수입물량) 신설, 관세단순화 등 기타 잔여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침
 - EU와 일본이 TRQ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호주·브라질·인도가 반대
 - 관세단순화 관련, EU가 전체 세번의 80%까지 종가세로 전환 제안

- ▶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9.25일 주요 26개국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협상 일정 등을 협의
 - 10.1일 전체회의 이후 이슈별 소규모협의(주요 10개국 참여) 및 주요국 심층회의(주요 30여개국 참여) 등 개최 전망
 - * 향후 논의는 7월 의장 3차 수정안을 기초로 하면서, 7월 각료회의 논의내용을 참고로 하여 진행될 전망

2. 향후 전망 및 추진계획

- ▶ Lamy 사무총장은 금년 11월 미국 대선 전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SSM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음
 - ※ 한편, 향후 협상 타결 전망 관련, 금년 11월 미국 대선, 내년 인도 총선, EU 집행위원 교체, Lamy WTO 사무총장 임기 종료 등 여건을 감안시 조속한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 DDA협상 재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잔여쟁점 논의에 대해 G10(수입국그룹) 및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
 - SSM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바, 여러 제안을 상세히 평가하고 G33 공조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
 - 특별품목 관세감축면제범위 확보, 일률적인 관세상한 도입 저지 등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최종 협상 타결 시까지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
 - * 주요 품목의 관세상한 적용 배제, 특별품목 관세감축면제 확보 등
- ▶ DDA 협상 타결에 대비,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농업분야 영향분석 작업 추진

참고 ①

SSM 관련 최근 주요 논의내용

가. 논의 배경

- ▶ SSM은 수입량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개도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DDA 결과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는 도중에 수입이 증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그 결과가(실행관세+추가관세) 현재의 양허관세(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
 -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을 고려하여 용이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정상적인 교역 증가를 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하에서 발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

나. 최근의 주요 논의내용(G7 논의)

- ▶ SSM이 정상교역(normal trade)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EU·호주·일본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나 중국·인도 등의 반대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함
 - EU는 개도국이 요구하는 발동기준과 수출국이 요구하는 발동기준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관세 수준을 달리하는 타협안을 제시
 - ※ 발동기준(trigger) : 추가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수입물량으로 기준수입물량(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일정비율(예 120%)로 정해짐
 - 일본은 SSM 발동시점부터 수입된 물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UR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SSM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
 - 호주는 SSM이 정상교역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수입증가율을 반영하여 기준 수입량을 산정할 것을 제의

| SSM 관련 G7 세부 논의사항 (UR 양허관세 초과 SSM 관련) |

	주요내용
제안 1 (각료회의시 EU안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품목 수 : 연간 세 번의 2.5%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gger 120 → 구제조치 33% 또는 8%p 중 높은 것 - trigger 140 → 구제조치 50% 또는 12%p 중 높은 것 • 발동기간 : 해당연도 말까지, 연속발동은 불가
제안 2 (일본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SSM의 발동대상 물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 수입량을 매개로 2가지 안을 제시 A. 발동기준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에는 trigger 140을 적용 • 당해연도에 trigger 115를 충족할 경우 다음연도에는 기준 수입량 초과분부터 UR 양허관세 초과가능 B. SSM 발동 후 12개월 내에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부터 UR 양허관세 초과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gger와 추가관세는 3차 수정안에 따르면 SSM은 최대 12개월까지 유지하되 UR 양허관세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SSM 발동 후에 수입된 물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그 물량에 대해서는 UR 양허관세 초과가능
제안 3 (호주 · 브라질 등이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M이 정상교역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수입증가율을 반영하여 SSM 발동 기준물량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물량을 (최근 3개년 평균수입량 × 수입증가율)로 하고 여기에 trigger를 적용 - 수입증가율은 10년간 평균(호주), 3년간 평균 EU 등이 제시되었고, 수입증가율의 상한 또는 하한 설정 등도 언급됨 • 기준물량을 상승시킨 대가로 trigger를 140에서 낮출 것을 고려하는 방안제시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ss-check(수입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SSM을 발동하지 않음) • SSM 발동기간 관련, SSM을 해당 연도 말까지만 발동하되 SSM이 연말 무렵에 발동될 경우에는 다음 해 1-2개월간 추가 조치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

참고 2

7월 소규모 각료회의 주요 논의내용

▶ 주요 논의내용 및 잔여쟁점

- 관세감축률,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관세상한, 보조금감축률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잠정타협안을 도출함
- 주요 잔여쟁점으로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면화보조금, TRQ 신설문제, 관세단순화 등이 있음

| 잠정타협안 주요내용 |

	선진국	개도국																						
관세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5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70</td> </tr> <tr> <td>50% ~ 75%</td> <td>64</td> </tr> <tr> <td>20% ~ 50%</td> <td>57</td> </tr> <tr> <td>20%이하</td> <td>50</td> </tr> </tbody> </table>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8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130% 초과</td> <td>46.7</td> </tr> <tr> <td>80% ~ 130%</td> <td>42.7</td> </tr> <tr> <td>30% ~ 80%</td> <td>38.0</td> </tr> <tr> <td>30%이하</td> <td>33.3</td> </tr> </tbody> </table>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 ~ 130%	42.7	30% ~ 80%	38.0	30%이하	33.3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 ~ 75%	64																							
20% ~ 50%	57																							
20%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 ~ 130%	42.7																							
30% ~ 80%	38.0																							
30%이하	33.3																							
관세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단, TRQ증량 등 추가 보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예상) *단,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 																						
민감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4% ○ TRQ증량: 소비량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5.3% ○ TRQ증량: 소비량의 2.7% 																						
특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전체 세번의 12% ○ 감축면제범위: 전체 세번의 5% ○ 평균감축률: 11% 																						
S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G: 이행초 1%로 감축, 7년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G: 12년간 2.5%로 감축(예상) 																						
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M: 적용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M: UR양허관세 초과 제한적 인정 *2.5% 한정, 수입량이 140%증가시 발동, 초과 한도는 당해연도 양허관세의 15% or 15%p 중 높은 것으로 설정 																						
OTDS, AMS, De minimis, 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감축률(%) (예상) (잠정타협안은 미국·EU의 OTDS 감축률만 제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h>De minimis</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80</td> <td>70</td> <td rowspan="3">50</td> </tr> <tr> <td>미국·일본</td> <td>70</td> <td>60</td> </tr> <tr> <td>기타국가</td> <td>50~60</td> <td>45</td> </tr> </tbody> </table> ○ BB한도: '95 ~ '00년 평균 농업총 생산액의 2.5%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80	70	50	미국·일본	70	60	기타국가	50~6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감축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OTDS</th> <th>AMS</th> <th>De minimis</th> </tr> </thead> <tbody> <tr> <td>개도국</td> <td>33.3-40</td> <td>30</td> <td>33.3</td> </tr> </tbody> </table> ○ BB한도: '95 ~ '00년 or '95 ~ '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 	국가	OTDS	AMS	De minimis	개도국	33.3-40	30	33.3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80	70	50																					
미국·일본	70	60																						
기타국가	50~60	45																						
국가	OTDS	AMS	De minimis																					
개도국	33.3-40	30	33.3																					



II. FTA 농업협상 동향

1. FTA 개요

-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의 한 형태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 FTA는 WTO 규범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는 배치되나, 아래요건 충족시 예외로 인정

| WTO 인정 FTA 요건(1994 GATT 24조 및 양해, GATS 5조) |

-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90~95%이상)으로 하며, 특정분야 전면 제외는 안됨
-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
-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 FTA 협상분야 범위 확대 : 상품분야 무역자유화(관세인하) → 서비스·투자 자유화 →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 ▶ WTO RTA 위원회의 최신 자료('08.8월 현재)에 의하면, 총 21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

2. 추진경과

- ▶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아세안('07.6)과의 협정이 발효
 -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미 FTA는 '07.4.2 타결하고, 6월 말 협정문에 서명,
 -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 다시 제출 준비 중
 - 캐나다('05.7 협상개시), 인도('06.3), EU('07.5)와는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있고,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쟁점이 압축되고 있음
 - 멕시코와는 SECA*로 추진('06.2 ~ 6)하다가 FTA로 전환('07.12)
 - *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 : FTA보다 자유화 정도가 낮은 지역협정

- ▶ **FTA 대상국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한 준비작업 병행**
 -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연내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로도 개시함
 - 금년 하반기, 중국·일본과의 FTA 추진 여부 검토 예정
 - 걸프협력회의*(GCC)는 '08.7.9 ~ 10일간 서울에서 제1차 협상개시
 - *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가 체결한 관세동맹
 - '08년 하반기에 호주, 뉴질랜드와 FTA 추진 예비협의 개최 예정
 - 호주는 '08.10.13 ~ 15. 캔버라, 뉴질랜드와는 '08.9.29 ~ 30. 서울에서 개최하며, 예비 협의에서는 양국의 FTA 추진정책, 제3국과의 FTA 체결현황 및 향후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

3. 한·EU FTA

가 추진 현황

- '07.5.6 협상출범 이후 전체 협상을 모두 7차례 개최
- 제7차 협상(5.13 ~ 15, 브뤼셀)에서는 금년내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고, 통상장관·수석대표간 협의 등 고위급 접촉을 집중하기로 합의
- 최근 분야별 회기간 협상을 통해 양측의 타결 가능성 수준 등 탐색
 - 농산물 양허 회기간 협상(9.18 ~ 19, 서울)에서는 양측 양허안에 대한 수정방향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파악하는데 논의를 집중
 - * 공산품 양허 회기간 협상 : 7.16 ~ 17 서울, 8.6 ~ 7 파리, 8.27 ~ 28 서울)

나 분야별 주요결과

▶ 농업(상품양허)

- 우리측은 농산물 수정양허안과 함께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를 묶어서 제시하는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을 제시('07.11)
 - EU측은 돼지고기, 낙농품 등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양허가 만족스럽다면 저울관 세할당물량(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우리측의 예외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표명
- 회기간 협상(9.18 ~ 19)에서는 EU측이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양허를 할 것을 다시 강조
 - 우리측은 FTA는 양자간 교역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다른나라와 동일하게 양허할 수 없다고 하고,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민감성을 주장

▶ 위생·검역(SPS)

- 지역화 인정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분쟁해결절차로 쟁점 압축
- 지역화 인정절차는 2년간 상호 이해 제고 등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수출작업장 승인은 위원회 논의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 중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GI)

- GI 보호수준, GI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양측 입장 대립
- EU는 농산물·식품 GI도 포도주·증류주와 같이 대중의 오인·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는 강한 보호 방식을 희망
 - 선등록된 상표가 있는 동일·유사한 GI도 보호할 것을 주장
- 우리측은 WTO 지적재산권 협정과 같이 농산물·식품과 포도주·증류주 보호수준에는 차등을 두고, 선등록된 상표가 있을 경우 GI 보호를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다 향후 계획

- 제8차 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시기는 미정이며,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소규모 협의 추진
 - * 10월 초 회기간 협상(원산지·SPS) 및 수석대표간 회의, 11~12월 제8차 협상 등 추진
- 양허 협상 가속화에 대비 쟁점 품목별로 단계적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 추진
 - 농업계, 학계 등에 협상 동향을 수시로 전달,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4. 한·캐나다 FTA

가 추진 현황

- ▶ '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6차례 협상 진행
 - 세차례 상품분야 실무협상('07.6월, 9월, '08.5월) 포함
 - 2005년 이래 3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협상 전체적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
- ▶ 농산물 소수 핵심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양허유형 합의
 - 쌀(16개 세번), 일부 낙농품·가금육, 고추·마늘, 양파, 인삼 등 상당수 민감품목 양허 제외 합의
 - 쇠고기·돼지고기 양허기간 및 대두·천연꿀·사료용근채류·맥주맥 수입쿼타(TRQ) 물량 등 미합의

나 쟁점 및 향후 계획

- ▶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요구
- ▶ 협상 최종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및 수입쿼타 물량 등은 국내 수급상황, 수입실적, 여타 FTA 협상내용 등을 감안하여 협의
- ▶ 제14차 협상은 '08. 10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5. 한·인도 CEPA

가 추진 현황

- ▶ '06. 3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15차례 협상 개최 (3차례 실무협의 포함)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논의
 - 2차 ~ 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상품 자유화 방식 등 논의
 - '07. 7월 7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에 대한 논의 시작
 - '08. 9월 12차 협상에서 실질적 타결

- ▶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한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하에 협상을 진행
 - * 인도측은 쌀·육류·사과·배·감귤·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대부분의 우리 민감 농산물에 대해 양허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해 민감성을 확보함으로써 협상타결로 인한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나 향후 계획

- ▶ 양국간 협정문 및 양허안 내용에 대해 실무 검토·확인을 통해 협상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연내서명 추진 예정
 - 양국은 협정문 및 양허안 등 협상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주요 협상결과를 발표한다는데 합의

- ▶ 협상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농림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

6. 한·멕시코 FTA

▶ '05. 9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SECA* 협상 추진에 합의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

- '06.2월 협상을 개시, 연내 타결 목표로 추진하다가 제3차 협상('06.6) 이후 양허범위에 양국 입장이 대립, 협상 중단
- 우리측이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공산품의 일부만을 포함한 양허안 제시

▶ '07. 7월 멕시코측이 SECA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 추진을 희망하여 제1차 FTA협상 개최('07.12.5 ~ 7)

- 1차 협상에서는 멕시코 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을 검토하고, 양허협상 일정 등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

▶ 제2차 협상('08.6.9 ~ 11, 서울)은 멕시코가 내부사정상 상품양허를 마련하지 못해 협정문만 협의

- 우리측은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한 보호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전달
- SPS 협상에서는 양측의 SPS 제도를 상호 설명하는 데 주력
 - 맥측은 지역화 인정, 위험평가 및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협정문안을 제시했으며, 우리측은 WTO SPS 협정 이상의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대응

▶ 제3차 협상은 멕시코에서 9월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멕시코의 국내사정으로 무기한 연기

7.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가 추진 현황

- ▶ '04년말 ASEAN+3 계기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진행 ('06.11 종료)
 - 간사기관 :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중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
- ▶ '07.3월 이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8차례에 걸쳐 논의(본회의 5회, 농업전문가 회의 3회)
 - SPS, 제조업,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대부분 합의하였고 농림수산업 영향, 결론 및 권고 등이 잔여쟁점

나 쟁점 및 향후 전망

- ▶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
 - 우리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강조
- ▶ 정식협상 시작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정부차원에서 결정될 전망

8. 한·페루 FTA 민간공동연구

가 추진 현황

- ▶ '05.11월 APEC 계기 정상회담시 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제안
 - '06.11월 APEC 합동 각료회의시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 민간공동연구 2차례 개최('07.10 리마, '08.4 서울) ⇒ '08.5월 연구종료
 - * (한국)서울대 김종섭 교수, (페루)CONIEP(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기관)
- ▶ 페루와의 FTA는 시장 진출여건 개선, 자원 부국(은, 아연, 원유, 천연가스 등)과의 경제 협력 관계 강화, 중남미 시장 확대 및 MERCOSUR*와의 FTA 추진 교두보로의 활용 등을 위해 추진
 - *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 남미공동시장)는 남미지역 최대경제 통합체로서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이며 현재 베네수엘라가 가입절차를 진행 중
 - 페루와는 농수산물 교역규모가 미미하여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페루 교역실적('07) : 수출 466백만불, 수입 1,040백만불
 - * 농수산물 교역('07) : 수출 0.1백만불(면류, 베이커리제품 등)
수입 53백만불(커피, 오징어, 캐비아 등)

나 쟁점 및 향후 전망

- ▶ 공청회(10.7 10:00 ~ 12:00, 무역센터 51층)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현재 추진 중인 여타 FTA 협상 진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 개시여부 결정 예정

'08. 제9차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08.12.9)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 동향

- I. DDA 농업 협상 동향
- II. DDA 수산업 협상 동향
- III. FTA 협상 동향





I. DDA 농업협상 동향

1. 세부원칙 4차 수정안 평가

- ◇ 12월 7일 팔코너 의장은 7월 각료회의 및 최근 협상 진전내용을 반영한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제시
 - ◇ 한편, 주요국간 아직 입장차이가 커서 쟁점이 되어온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3개 이슈*에 대하여는 수정안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의장보고서 형태로 제시
-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민감품목(개수), TRQ 신설

- ▶ 의장안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 및 최근 협상 진전내용을 반영하여, 미합의 쟁점 수를 축소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당히 발전된 협상문안이 된 것으로 평가
 -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민감품목, 특별품목, SSG, 쿼터내 관세 감축 등 주요 이슈들에 있어 단일안을 제시
 - 잔여쟁점으로는 관세상한(비민감품목 적용제외문제), 민감품목 TRQ 신설문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관세단순화, 블루박스(미국에 대한 예외조항), 열대작물 등이 있음
- ▶ 그러나 잔여 쟁점 중 SSM 및 TRQ신설문제 등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 대립이 있어, 세부 원칙 문안을 수정하는 대신 별도 문서를 제시하여 의장이 생각하는 절충안을 제시

2.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 ▶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의 잠정타협안 내용이 대체로 반영
 - 관세감축률(최상위구간 감축률 70%(개도국 46.7%))
 - 개도국의 경우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10년으로 연장(기존 8년)
 -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은 관세상한 적용에서 면제하였으며, 특히 특별품목의 경우는 상한 면제에 대한 보상이 없음
 - 특별품목(개수 12%, 평균 11% 감축, 감축면제는 5% 인정)
 - 완전 면제되는 범위를 전체 세번의 5%만큼 인정
 - 민감품목(개수 4%(개도국 5.3%), TRQ증량 소비량의 4%(개도국 2.7%))

-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증량 외 이행기간 조정 옵션을 추가 인정

▶ 잔여쟁점에 대해서는 수출입국 입장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거나 의장이 생각하는 절충안을 제시

- SSM :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SSM에 대해 별도의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 설정, 발동기간 4-8개월, 발동가능 품목수 2.5% 등 제시
- TRQ신설 : 전체 세번의 1%에 한하여 TRQ 신설을 허용하되, TRQ를 추가증량(소비량의 2%)하도록 규정하면서 추가
- 관세단순화 : 증가세로 100% 전환 or 90% 전환(단, 이행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00% 증가세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세부원칙 3차·4차 수정안 주요내용 비교 |

쟁 점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																																								
시 장 접 근	<p>○ 선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66~73</td> </tr> <tr> <td>50%~75%</td> <td>64</td> </tr> <tr> <td>20%~50%</td> <td>57</td> </tr> <tr> <td>20%이하</td> <td>50</td> </tr> </tbody> </table> <p>○ 개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130% 초과</td> <td>44~48.7</td> </tr> <tr> <td>80%~130%</td> <td>42.7</td> </tr> <tr> <td>30%~80%</td> <td>38.0</td> </tr> <tr> <td>30%이하</td> <td>33.3</td> </tr> </tbody> </table> <p>○ 이행기간 :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p>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75%	64	20%~50%	57	20%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4~48.7	80%~130%	42.7	30%~80%	38.0	30%이하	33.3	<p>○ 최상위구간 감축률(70%) 제시</p> <p>- 선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70</td> </tr> <tr> <td>50%~75%</td> <td>64</td> </tr> <tr> <td>20%~50%</td> <td>57</td> </tr> <tr> <td>20%이하</td> <td>50</td> </tr> </tbody> </table> <p>- 개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130% 초과</td> <td>46.7</td> </tr> <tr> <td>80%~130%</td> <td>42.7</td> </tr> <tr> <td>30%~80%</td> <td>38.0</td> </tr> <tr> <td>30%이하</td> <td>33.3</td> </tr> </tbody> </table> <p>○ 개도국 이행기간을 10년으로 연장</p>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75%	64	20%~50%	57	20%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130%	42.7	30%~80%	38.0	30%이하	33.3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75%	64																																									
20%~50%	57																																									
20%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4~48.7																																									
80%~130%	42.7																																									
30%~80%	38.0																																									
30%이하	33.3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75%	64																																									
20%~50%	57																																									
20%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130%	42.7																																									
30%~80%	38.0																																									
30%이하	33.3																																									
관세 상한	<p>○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에 대한 일부 품목 적용 배제</p> <p>- 특별품목 : 보상없이 상한적용 배제</p> <p>- 민감품목 :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되 TRQ를 0.5% 추가 증량</p> <p>* 개도국의 경우는 TRQ 0.33% 증량</p> <p>- 비민감품목 : 상한적용 예외범위를 1~2%로 한정하면서 추가 부담 규정</p> <p>* 모든 민감품목에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해당 세번의 관세감축 이행기간 2년 단축 or 관세감축률 5%p 추가</p>	<p>○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관세상한 적용 배제 및 보상 규정은 동일</p> <p>○ 비민감품목의 상한적용 배제문제는 []으로 처리, 미해결쟁점으로 남겨둠</p> <p>- 상한적용 예외범위 : 1%</p> <p>- 보상방안 :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or 해당 비민감품목의 이행기간 2년 단축 or 관세감축률 10%p 추가</p>																																								
민감 품목	<p>○ 개수 : 전체 세번의 4 or 6%</p> <p>○ TRQ증량 : 소비량의 4-6%</p> <p>- TRQ증량은 이행첫날 1/4, 3년간 증량</p>	<p>○ 개수 및 TRQ증량 단일수치 제시</p> <p>- 개수 : 4%, TRQ증량 : 소비량의 4%</p> <p>*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p>																																								

쟁 점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 개도국에 대해 TRQ증량외 옵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감축을 적용하되 3년 연장 -구간감축율의 3/4 적용하되 2년 단축(단, 민감품목수의 2/3에 한정) ○ 소비량 계산방식 최근 논의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수준 ○ 개도국에 대한 이행기간 조정옵션을 추가 인정하되, 이행기간을 단축 -구간감축율의 2/3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적용 (단, 전체 민감 품목의 1/2로 한정) -1/2적용+이행기간 2년(단, 1/3로 한정) -1/3적용+이행기간 1년(단, 1/4로 한정) 																		
특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 10-18% ○ 6% 감축면제 또는 감축면제불가 -전체 SP를 평균 10-14%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및 평균감축률 등 단일수치 제시 - 개수 12%, 평균 11% 감축, 감축면제범위 5% 																		
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발동기준</th> <th>추가관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물량 기준 SSM</td> <td>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115%</td> <td>양허관세의 25% or 25%p 중 높은 것</td> </tr> <tr> <td>115%~135%</td> <td>40% or 40%p</td> </tr> <tr> <td>135%초과</td> <td>50% or 50%p</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SSM -발동품목수 : 2-6개 품목 -초과가능수준(cap) : DDA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것 적용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위와 동일 		발동기준	추가관세	물량 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115%	양허관세의 25% or 25%p 중 높은 것	115%~135%	40% or 40%p	135%초과	50% or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발동요건은 3차수정안과 동일 ○ UR 양허관세 초과가능 SSM관련 논의내용은 별도문서로 제시 -발동품목수 : 전체 세번의 2.5%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발동기준</th> <th>추가관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물량 기준 SSM</td> <td>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 초과</td> <td>양허관세의 33% or 8%p 중 높은 것</td> </tr> <tr> <td>140% 초과</td> <td>50% or 12%p</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동기간 :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초과 가능)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발동 제한 		발동기준	추가관세	물량 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 초과	양허관세의 33% or 8%p 중 높은 것	140% 초과	50% or 12%p
	발동기준	추가관세																		
물량 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115%	양허관세의 25% or 25%p 중 높은 것																		
	115%~135%	40% or 40%p																		
	135%초과	50% or 50%p																		
	발동기준	추가관세																		
물량 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 초과	양허관세의 33% or 8%p 중 높은 것																		
	140% 초과	50% or 12%p																		
	S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모두 철폐 or 1.5%로 축소 ○ 개도국 : 3%로 축소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이행첫날 1%로 축소, 7년간 철폐 * 단, UR양허관세 초과 금지 ○ 개도국 : 이행첫날에 2.5%로 축소 																	
쿼터 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50-70%감축(단, 0-15% 상한적용) -단, 5%이하 관세는 철폐 ○ 개도국 : 선진국의 1/2(단, 상한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50%감축(단, 상한 10%적용) * 단, 이행첫날 17.5% 이하로 감축하며, 5%이하 관세는 철폐 ○ 개도국 : 15%감축(단, 상한 미적용) * 단, 감축면제 해당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도 감축면제 																		
TRQ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진 쿼터 메카니즘을 제시 * 3년 연속 소진율이 65% 이하일 경우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or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 부여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및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 가능 																		
관세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관세를 100% 증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으로 처리(삭제 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관세를 100% 증가세로 전환, or 90%를 증가세로 전환(단, 이행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00% 증가세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쟁 점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			
국 내 보 조	OTDS, AMS, De minimis	○ 보조금 감축률(%)				○ OTDS 감축률 단일수치 제시			
		국가	OTDS	AMS	De minimis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75][85]	70	50	EU	80	70	50
		미국·일본	[66][73]	60		미국·일본	70	60	
	기타국가	[50][60]	45	기타국가		55	45		
개도국	[33,3][40]	30	33,3	개도국	36,7	30	33,3		
허용 보조	○ 직접지불제에 있어 기준년도를 고정 불변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신축성 인정				○ 3차수정안과 동일				

3. 향후 대응계획

- ▶ 12월 중순 개최가 예상되는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
 -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핵심쟁점 중심으로 대응
 -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 그룹(G33)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의 이익 확보 추구
- ▶ 각료회의 전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세부원칙 타결시 농업협상동향 설명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
- ▶ 효과적인 이행계획서(C/S) 작성을 위한 세부원칙상의 옵션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 및 양자협상 전략 수립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별 관심사항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등
 - * 세부원칙 타결 후 이행계획서 작성 및 검증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

참고 1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분야별 주요 내용

1.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 감축률

- ▶ 관세감축은 최종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구간별 감축 방식(tiered formula)*을 사용해서 감축
 - * 양허관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여 구간별 차등 감축방식을 적용
- 예외적으로 민감품목, 특별품목, 경사관세, 열대작물 등에는 일반 관세감축 공식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
- ▶ 전체적인 관세감축 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감축률(민감, 경사, 열대 포함) 최소 54%, 개도국은 평균감축률(민감 포함) 최대 36%
 - 선진국은 동 수치 이하일 경우 추가 감축하고 개도국은 동 수치 이상일 경우 감축률을 하향 조정
 - 관세감축의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간 균등 감축

| 관세 감축률 공식 |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 < 양허관세 ≤ 20%	50%	0 < 양허관세 ≤ 30%	33.3%
2구간	20 < 양허관세 ≤ 50%	57%	30 < 양허관세 ≤ 80%	38.0%
3구간	50 < 양허관세 ≤ 75%	64%	80 < 양허관세 ≤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 양허관세(bound tariff) : WTO 회원국은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 하는데 이를 양허관세라고 함.

나 관세상한

- ▶ 관세상한(tariff capping)은 관세가 일정수준(예 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원칙에 일률적인 관세상한(pure capping)이 도입되지는 않음
 - ※ 우리나라는 관세 100% 이상 세번수가 8.6%(126개), 150% 이상은 8%(116개)
- ▶ 선진국의 경우 일부 보상을 전제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그리고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비민감품목)는 전체 세번*의 1%까지만 관세 100% 초과 가능
 - * 세번(관세선 : tariff line) : 관세율표에 품목별로 분류되어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관세 부과의 기본단위. 우리나라의 농산물 세번은 1,452개임(HS 2002, 10단위 기준)
 - 민감품목 중 100% 초과 세번에 대해 TRQ 0.5% 추가 증량
 - 비민감품목은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 0.5% 추가 증량하거나, 해당세번의 이행기간을 2년 단축하거나 관세감축률 10%p 추가
(비민감품목의 상한 적용 제외여부는 []으로 처리되어 미해결 쟁점 사항임)
- ▶ 개도국의 경우 일부 보상을 전제로 민감품목은 관세 150% 초과 가능하며, 특별품목은 상한 및 보상 적용에서 배제
 - 민감품목 중 150% 초과 세번에 대해서는 TRQ 0.33% 추가 증량

다 민감품목

- ▶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감축률공식 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해야 함
 - ※ TRQ(저율관세쿼터) :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하는 것
 -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번의 4%(개도국은 5.3%)
 - TRQ 증량수준은 deviation에 따라 소비량의 3~4%(개도국은 2~2.7%)이며, 개도국은 TRQ 증량외 이행기간 조정 옵션 선택 가능
 - 품목별로 하나의 Deviation 사용토록 규정
 - ※ Deviation(이탈수준) :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 하는 정도

개 수		대 우(관세감축 및 보상방안)			
선진국	전체 세번의 4%	▶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증량 (소비량대비 %)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Deviation 1/3 적용)	3.0%	0.5% 감소	1%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Deviation 1/2 적용)	3.5%		
일반감축률의 1/3 적용(Deviation 2/3 적용)	4.0%				
개도국	전체 세번의 5.3%	※ 품목별로 옵션 중 선택적 적용 가능			
		▶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 (소비량대비 %)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Deviation 1/3 적용)	2.0%	0.3% 감소	0.7%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Deviation 1/2 적용)	2.3%		
		일반감축률의 1/3 적용(Deviation 2/3 적용)	2.7%		
		▶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이행기간을 단축			
		관세 감축	이행기간	비고 (적용범위 한정)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년	전체 민감품목의 1/2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년	1/3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1년	1/4로 한정			
▶ 관세감축은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일반감축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행기간을 3년 연장					

- TRQ증량 이행기간은 이행첫날 총 증량분의 1/4만큼 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4씩 추가 증량토록 규정
- TRQ신설 관련, 전체 세번의 1% 범위 내에서 신설 가능하며, TRQ증량수준은 일반적인 민감품목보다 소비량의 2% 추가 증량
- TRQ 증량기준이 되는 소비량 산출방식(Annex C) 제시
 - 세부원칙에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TRQ증량기준)를 첨부토록 하며, 동 품목에 한해 민감품목 지정이 가능토록 함
- *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규정

라 특별품목(SP)

-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표*를 기초로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
 - * 특별품목은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G33(개도 수입국 그룹)이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면제 등을 주장
 - * 열량공급도, 자급률, 생산액 비중, 고용 비중 등이며 최소 세번에 대해서는 특별품목 지정시 지표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음
- 특별품목은 낮은 관세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TRQ 증량 의무가 없고 관세상한의 적용도 받지 않음
- ▶ 특별품목은 전체세번의 12%까지 지정할 수 있고, 평균 관세 감축률 평균 11%를 적용
 - 세번의 5%까지는 관세감축면제 인정

마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 농업의장은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의 배포시 핵심쟁점인 UR 양허 관세 초과 SSM에 대한 별도 문서를 배포

- ▶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 구제조치를 UR 양허관세로 제한하는 경우와 UR 양허관세를 초과 할 수 있지만 품목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를 나누어 규율할 것으로 예상
- ▶ UR 양허관세 초과가능 SSM 관련

품목수	발동 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 실행관세에 부과)
전체 세번의 2.5%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초과	양허관세의 33% 또는 8%p 중 높은 것
	140%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높은 것

- 발동기준 물량 계산시 SSM이 발동된 기간은 실제수입량이 아니라 SSM이 발동되지 않았던 기간의 월평균 수입량을 산출하여 적용
 - 단, 실제수입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실제 수입량을 적용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SSM발동을 제한 (cross-check 도입, 단 예외적인 경우 특례 인정)
 - 발동기간은 최대 [4/8]개월로 하고 한번 발동되면 그 발동기간만큼 경과시까지 재발동 불가
 - 다만, SSM이 연도말 [2/4]개월을 남기고 발동될 경우에는 [2/4]개월 만큼 연도초과 (spill over) 적용 허용
- ※ UR 양허관세가 상한인 경우(품목수 제한 없음), 3차 수정안 >

	발동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 실행관세에 부과)
물량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초과 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초과 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수입가격의 85% 이하로 하락시	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85%

바 특별긴급관세(SSG)

- ▶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째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7년내 완전 철폐
 - * SSG는 UR협상 당시 농산물에 관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입 급증과 수입가격의 폭락에 대응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
- ※ 우리나라는 현재 SSG 발동가능세번은 120개(전체 세번의 8.3%)이나, 실제 발동 세번은 27개(1.9%, '95 ~ '06)임
- 선진국의 경우, SSG 유지 품목(1%)에 대한 추가 규율
 - * 개도국에 대해서는 SSG 발동요건 등에 대해 UR 규정을 유지토록 함
 -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를 상한으로 적용
 - 민감품목으로 지정시에는 2/3 deviation 적용
 - sub-allocation 외에는 TRQ 증량을 완화하는 신축성 사용불가
 -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쿼터내관세 감축 이행기간(3년)과 동일하게 적용
- ▶ 개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째에 전체 세번의 2.5%로 감축토록 함
 - 개도국에 대해서는 SSG 발동요건 등에 대해 UR 규정을 유지토록 함

사 관세 단순화

* 관세단순화는 현행 복잡한 관세구조(종량세, 혼합세, 복합세 등)를 종가세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전환하자는 논의

- ※ 종가세는 수입가격의 일정비율을 관세로 부과
- 종량세는 수입량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
-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가 부과(높은 것 또는 낮은 것)
-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임.

- ▶ 전체 세번을 단순 종가세로 양허하는 안과 최소한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양허하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잔여 쟁점 중 하나임)
 -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경우 비종가세에 대해서 각 회원국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상황을 검토하여 이행기간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 우리의 경우 혼합세 76개(HS 2002, 1452개 세번 대비 5.23%) 보유
- ▶ 전환방식은 AVEs 전환방식(TN/AG/W/3의 Annex A)을 이용
 - 3단계*에 걸쳐 AVEs(기준년도 '99 ~ '01년)가 최근년도 수입단가를 기초로 산출된 Current AVEs에 상응하는 경우 전환(Annex N)
 - * 3단계 실시 : 이행기간 시작, 이행기간말, 이행기간 종료 3년 후
- ▶ 개도국은 2년의 이행기간 부여, LDC는 단순화 의무 면제
- ▶ 고도의 복합세(complex matrix tariffs)는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전환

아 쿼터내 관세

* TRQ(저울관세쿼터)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까지는 저울관세가 부과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적용되는데 쿼터내 저울관세에 대한 관세 감축 필요

- ▶ 선진국의 경우 쿼터내관세를 50% 감축하되, 감축후 관세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행기간은 3년이며, 이행첫날 최소한 17.5%까지 감축
 - 단, 5% 이하의 쿼터내 관세는 이행 첫해 말에 철폐
 - ▶ 개도국의 경우 쿼터내관세를 15% 감축 (쿼터내 관세 감축 이행기간은 3년)
 - 관세감축이 면제되는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 감축 의무도 면제
- ※ 우리의 현행('08년) TRQ 품목은 (실품목기준) 63개, (세번기준) 205개이며, 쿼터내 관세 평균은 17.67%

자 TRQ 관리방안

- ▶ 쿼터관리는 수입허가절차협정상의 수입허가의 예로 보아 동 협정을 적용하고, 아래의 추가적 규정들도 적용

절차 간소화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 공표는 최소한 쿼터 개시 90일 전까지(현규정 21일) ■ 쿼터 신청주관기관을 1개로 제한 ■ 신청 처리기간은 선착순 배분의 경우 30일, 모든 신청서를 동시에 검토할 경우는 60일 이내로 한정 ■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수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하도록 규정
쿼터 소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소진율은 공개되어야 하며, 수입국은 행정적 절차부담으로 쿼터 미소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함 ■ 수입권(licences)을 부여받은 영업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입국은 미사용 사유를 조사하고 새로운 수입권 배정시 이를 고려 ■ 쿼터 미소진에 대한 합리적 경제적 이유가 없는 경우, 수입국은 영업자에게 미사용 쿼터를 다른 자에게 이양하도록 요청

- ▶ 쿼터 미소진시 부속서 E에 따라 「쿼터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 쿼터 미소진*이 일정수준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방식 또는 비조건적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 2년간 유지
- ※ 개도국은 3단계에서 신축성 부여
- 개도국의 경우는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 이외의 TRQ 관리방안을 선택하거나 현행 TRQ 관리방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한 방식은 최소한 2년간 유지
 - 이후 소진율이 연간 최소 비율(소진율 40%초과시: 연 5.3%p, 40%이하시: 연 8%p) 만큼 상승할 경우 미소진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

| 미소진 메커니즘(underfill mechanism) |

시기	해당 조치												
(1단계)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첫째, 수입국이 소진율을 미통보하였거나 65%미만일 경우, 수출국은 TRQ 이행과 관련 농업위원회에 문제제기 가능(메카니즘 발동) ■ 수입국은 시장상황, TRQ관리방식 등 미소진 야기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수출국들을 이해시켜야 함 ■ 수출국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입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위원회에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함. 												
(2단계)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 2년 동안 소진율이 65%미만이거나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면, TRQ관리방식 수정 요구 가능 ■ 수입국들은 요구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진율을 향상시킬 효율적인 다른 조치 필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매카니즘 발동이후 상황</th> <th>결과</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i) 소진율이 65%이상으로 상승시</td> <td rowspan="2">해결(메카니즘 종결)</td> </tr> <tr> <td colspan="2">ii)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td> </tr> <tr> <td colspan="2">i) 소진율이 65% 미만을 유지</td> <td>TRQ 관리 방식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td> </tr> </tbody> </table>		매카니즘 발동이후 상황		결과	i) 소진율이 65%이상으로 상승시		해결(메카니즘 종결)	ii)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		i) 소진율이 65% 미만을 유지		TRQ 관리 방식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
매카니즘 발동이후 상황		결과											
i) 소진율이 65%이상으로 상승시		해결(메카니즘 종결)											
ii)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													
i) 소진율이 65% 미만을 유지		TRQ 관리 방식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											
(3단계) 3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수입국들은 선착순과 비조건적 허가 중 하나로 수입관리방식 변경(최소 2년간 유지) (a) 연속 3년간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유지 (b) 소진율이 직전 3년동안 매년 적어도 8%p(소진율이 40%초과시) 또는 12%p(소진율이 40이하시)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 (c) 미소진 사유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d) 수출국이 미소진 메커니즘의 3단계를 시작할 것을 희망시 												

차 경사관세

- ▶ 선진국들이 원료농산물보다 가공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농산물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바 개도국의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가공품 관세를 추가로 감축
 - 토마토, 유채, 밀 등이 원료농산물과 관련 가공품이 이에 해당
 - 가공품은 차상위 구간의 감축률(최상위구간은 +6%p)을 적용
 - 일반 감축 후 원료농산물과 가공품의 관세차 5%p 미만시 적용면제
 - 추가감축결과 가공품관세가 원료농산물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조정
 - 선진국에 적용, 단 여건이 된다고 선언하는 개도국에는 적용

카 열대작물

- ▶ 열대작물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열대국가의 우대 측면에서 촉발되어 개발을 강조하는 DDA 협상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
 -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류, 참깨 등이 이에 해당
 - 매우 높은 감축률이 적용되나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의무로 논의

1 안	2 안
- 관세감축 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관세 $\leq 25\%$ \Rightarrow 무세화(관세 : 0) • 양허관세 $> 25\%$ \Rightarrow 85%감축 - 민감품목으로 지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간 : 4년 - 선진국의 의무로 규정 	- 관세감축 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관세 $< 10\%$ \Rightarrow 무세화(관세 : 0) • (양허)관세 $\geq 10\%$ \Rightarrow 66-73%감축 *단, 최상위구간은 경사관세감축율에 2%p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품목으로 지정여부에 관한 언급 없음 - 이행기간 : 5년(일반감축시와 동일) - 여건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개도국은 추가감축 장려

2. 국내보조분야

| 보조금의 체계 |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GB)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④블루박스 (Blue Box: BB)	

- ①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 ② 생산과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축 의무가 있는 보조
- ③ AMS와 같은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④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보조(직불)
- ⑤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의 개별보조금 뿐만 아니라 그 합계인 무역왜곡보조총액도 감축 의무
 - 개별보조금 지급의 합계가 무역왜곡보조총액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하되 필요시 최소허용보조를 추가 감축
 -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 ▶ 우리나라는 무역왜곡보조총액을 선진국 기준시 적용시 55%, 개도국 기준시 36.7% 감축 의무

나 감축대상보조(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 UR협정 이행 최종연도의 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하며, AMS 수준이 높을수록 큰 감축률 적용
 -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준 적용시 45% 감축되며, 개도국 기준시 적용시 30% 감축 의무

- AMS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 ▶ AMS 총액뿐 만 아니라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하며, 이행 첫날부터 적용
 - 선진국은 '95~'00년 평균 지급액을 한도로 하며, 기준기간 동안 AMS 지원 품목뿐만 아니라 기준기간 이후 AMS 지급품목에 대해서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가능
 - 개도국은 아래의 옵션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품목별 AMS 상한 설정
 -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통보된 AMS지급액,
 -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생산액의 20%
 - 해당연도 총 AMS의 20%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이상 감축하되, 이행 첫날부터 적용
- ▶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이상 감축하되, 선진국보다 3년 긴 이행기간 부여
- *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는 선진국 기준 적용시 농업생산액의 2.5%로 감축되며, 개도국 기준 적용시 농업생산액의 6.7%로 감축

라 블루박스

- ▶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 외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비생산시에도 지급)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 도입
- ▶ 총 블루박스 한도는 선진국의 경우 '95~'00년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의 경우 '95~'00년 또는 '95~'04년 농업총생산액의 5%를 한도로 설정

- ▶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
- ▶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 전환시 품목별 블루박스 지급한도는 초과 가능(전체 BB한도는 유지)하되, 전환된 만큼 품목특정 AMS 감축되며 전환된 블루박스는 AMS로 회귀 불가
 -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블루박스로 전환시 블루박스 전체 상한 초과 가능

마 허용보조(Green Box)

* 허용보조(농업협정, 부속서2)는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보조로써,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 **현행 농업협정에 비해 직접지불 관련 요건을 강화**
 - 비연계소득보조,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보조,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직불에서 수혜자격 기준을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고 예외적으로 기준기간 갱신을 인정
 - 수혜자격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된 고정불변기간 내의 여러 기준(생산자의 소득, 지위, 생산요소 등)에 의해 결정
 - 기준기간 갱신은 ① 변경기간은 상당히 긴 과거 연도 ② 수확량이나 재배면적당 지급 단가 증가와 연계되어서는 안됨 ③ 국내보조 및 가격보조 관련 의무 회피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 및 공공비축제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일부 확대**
 -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에서 개도국의 경우 손실이 과거 5개년 평균 생산액 혹은 5개년 중 3개년 평균 생산액의 30%이하인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축성 확대
 - 공공비축제는 품목의 구입가격과 외부 참조가격의 차이는 AMS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 자원빈곤층을 위한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은 AMS에서 제외
 - ※ 현행 규정은 관리가격과 외부참조가격의 차이를 AMS로 산입토록 함

3. 수출경쟁분야

가 수출보조

- ▶ 선진국은 2013년 말까지 수출보조를 철폐
 - 금액기준으로는 2010년 말까지 50%를 균등 감축하고 나머지는 균등 감축하여 2013년 말까지 철폐
 - 물량기준으로는 '03~'05년 수출보조가 실제 지급된 물량의 평균을 이행 초부터 말까지 유지(단,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품목에는 수출보조 지급 불가)
-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마케팅 비용, 운송비용 등 수출보조는 수출보조 철폐 시한후 5년간 유지 가능(2021년 철폐)

나 식량원조

- ▶ 식량원조는 완전 무상공여로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재수출 금지
- ▶ 수혜국의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

다 수출신용

- ▶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이행 첫날 또는 2010년(개도국 2013년)말 중 빨리 도래하는 시기부터 180일 적용
 - 개도국은 180일로 하되 4년에 걸쳐 점차적(phase-in) 도입
 - 이행첫날 360일, 이행 2년말 270일, 4년말 180일

4. 기타 이슈

가 수출제한

- ▶ 농업협정 12항을 아래 요소들을 반영하여 개정
 - 새로이 수출제한 조치 도입시에는 그 도입사유(reasons)를 통보
 -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회원국은 이해당사국과 협의 및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진행 상황을 농업위원회에 보고
 - 현존하는 수입제한 조치는 이행년도 1년차까지 폐지. 단, 이해당사국들간의 합의에 따라 18개월 이상 연장 가능
 -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이 통보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농업위원회 주의환기 가능

나 감시·감독

- ▶ 농업위원회는 이행 및 감시를 위한 1년에 적어도 4번 이상 만나야 하며, 산하 조직체(subsidiary bodies)를 둘 수 있음
- ▶ 점검(review) 사항
 - 시장접근 : TRQ 관리방식, 쿼터 이행률, SSG, SSM
 - 국내보조 : OTDS, AMS, 품목특정 AMS 한도, 최소허용보조 수준
 - 수출경쟁 : 수출보조(농업협정 9.4항),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기업
 - 농업위원회에 이행당사국과의 협의 진행사항을 농업위원회에 통보
- ▶ 감시(surveillance) 절차
 - 농업위원회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교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포럼(forum)을 제공
 -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참고 2

DDA 협상 경과

- ▶ '01.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출범
 -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 3)
 - ② 이행계획서 제출('03. 9, Cancun 각료회의)
 - ③ 협상완료('04말)
- ▶ '03.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했으나, '04.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 협상, '04. 8. 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framework) 채택
- ▶ '05.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진전의 추동력을 유지
- ▶ '06.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이 협상 잠정중단 선언
- ▶ '06.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 '07. 1. 27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
- ▶ '07. 7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이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 '08년 들어 EU·미국·브라질 등 주요국들이 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 진전을 이룸
 - * '08.2월 1차 수정안, 5월 2차 수정안, 7월 3차 수정안 배포
- ▶ '08. 7월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졌으나 일부 쟁점의 입장차로 결렬
 - ※ G20 정상회의(2008.11)에서 DDA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임
- ▶ '08. 12.7일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이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배포



II. DDA 수산업협상 동향

1.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가. 협상동향

▶ DDA 출범시('01. 11) 수산보조금 규제가 협상범위에 포함

- 이전에는 수산보조금은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었으나, 수산자원 고갈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수산보조금 특별 규율의 필요성 대두
 - * FAO에 따르면 세계 수산자원의 50%는 남획, 25%는 고갈상태
- 수산보조금은 DDA 7개 협상분야 중 “규범” 그룹에서 반덤핑, 일반보조금과 같이 논의
 - * DDA 협상그룹 :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환경, 지재권, 무역원활화
 - DDA 출범 후 7년간 41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 개최

▶ 수산보조금 별도 부속서 초안 발표('07. 11. 30)

- 연료비 보조(면세유), 어선건조, 어항시설, 어업운영비 지원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이 금지대상에 포함
 - * 개도국의 소규모 영세어업은 연료비 등 어업운영비 지원 허용

◇ 연료비 보조(면세유)가 금지대상에 포함된 배경

- OECD, UNEP 등이 연료비 보조를 대표적인 자원고갈 원인으로 지목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ish Friends Group이 연료비 보조 금지 강력 주장
-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모든 수산보조금 금지 주장

▶ 수산보조금은 금번 소규모 각료회의 논의대상이 아님

- 금번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수산보조금 협상도 급진전 될 전망

나. 대응방안

▶ 적극적인 대외협상으로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 최소화

- EU, 일본, 대만 등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협상
- 적절한 어업관리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할 수 있고, 보조금이 자원고갈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설득
 - 적절한 어업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의 조건부 허용을 주장
- * 동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08. 6. 4 WTO 사무국에 제출. 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리나라 제안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연료비 보조(면세유)의 특정성

- 연료비 보조(면세유)가 금지대상에 포함되어도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님
 - * 면세유 등 어업용 유류비 보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시행 중
- WTO 보조금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에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 등 규제대상이 됨
-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는 일단 개별 회원국이 판단하며,
- 타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WTO 분쟁위원회가 최종 판정

▶ 다각적인 국내대책도 아울러 마련

- 연료 절감 기술 및 어구 등을 개발
- 업종별·품종별 경쟁력 강화
- 협상동향을 보아 필요할 경우, 면세유의 “특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참고자료**WTO/DDA 수산보조금 부속서 초안 주요내용('07. 11. 30)****▶ 금지 보조금(Prohibition)**

- 어선 및 서비스선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등
- 어선의 제3국 이전
- 어선과 서비스선의 운영비용
 - 면허수수료, 연료, 미끼, 얼음, 인건비, 사회적 비용, 보험, 어구, 양륙, 항내 가공활동 관련 비용
 - 어선과 어획활동의 운영 손실 보전 보조
- 해면어업과 관련되는 항구 등 기반시설 및 항구 인근 가공시설
-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 해면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지원
- 입어료
- IUU(불법, 미보고, 미규제) 어업
- 기타 과도어획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금지 예외(General Exception)**〈 어업관리계획 수립·유지·이행 조건 〉**

- 어선(서비스선 포함)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개선
 - 단, 어선의 신규 취득이나 신조선 건조는 제외
 - 어획능력증가(총톤수, 어창크기, 엔진파워, 기타)가 없어야 하고 폐선되어야 할 어선이 유지되는 효과가 없어야 하며, 안전표준에 따라야 함
- 특별한 어업기술 어구 및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도입
-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수산관리제도 이행(예 : 선박감시시스템설치)에 따른 비용이 경우도 어획능력증가 없어야 함
- 어선원의 재교육 및 어업과 관계없는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훈련비
- 어업관리관련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어업인의 조기퇴직, 영구 이직 지원
- 다음을 조건으로 하는 감척 사업
 - 완전 파기 또는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어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감척되는 어선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허가, 면허, 쿼타 등) 포기

- 감척내용이 포함된 어업관리계획 존재(입어제한, 어획쿼타, 어획노력제한 등)
- 어떠한 금지보조금 항목도 자원이용권 및 배타적 쿼타 프로그램에 의한 정부의 쿼타할당 제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

▶ 개도국 특별대우

- 비기계화 어구사용 연안어업
 - 어업인 또는 가족형 어업으로서 어획물을 가구에서 소비 또는 소규모 판매
 - 고용주·고용인 관계 없어야 함
- 확실히 과도어획을 방지할 수 있는 어업관리제도(조건 많음)하의
 - 기반시설, 소득보전, 가격보전
 - 갑판 있는 10m이하 어선 및 갑판 없는 어선에 대한 취득, 건조, 어업운영비
 - EEZ 내 자원을 목표로 국제표준에 의해 자원평가된 어종으로서 FAO 관련기구에 의해 지속가능 수준으로 평가된 어선 비용
- 개도국 EEZ 내 어업을 위한 입어료(UNCLOS, FAO 등 국제협약·기구에서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규범과 합치할 것)
- 모든 회원국은 기술지원 등 개도국이 본 협정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 고려할 것
 - ※ 최빈개도국(국민소득 US\$1000이하)은 제한 없음

▶ 기 타

- 회원국은 어떤 보조금을 이용하든 다른 회원국의 자원고갈과 자원관리제도(쿼타제도 등)에 유해를 초래해서는 안 됨
- 보조금과 관련된 책임은 기국이나 원산지 규정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국에 귀책
- 금지예외(허용) 및 개도국 특별대우 혜택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확실한(조건 많음) 어업 관리계획을 유지하여야 함
- 모든 회원국은 어업관리계획관련 문의처 설치
- 금지예외(허용) 및 개도국 특별대우 혜택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유지 하는 모든 보조금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시받아야 함
- 유예기간 : 발효후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 최빈개도국 10년
- 분쟁해결 절차

2. WTO/DDA 수산물 관세 협상

가. 협상동향

▶ 수산물 관세는 공산품과 같이 NAMA에서 논의

- 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산물 시장접근)
 - WTO에서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비농산물로 분류
-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협상하되, 국내적으로 민감한 수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
 - * NAMA 품목 9,809개 중 수산물은 348개(403개 중 해조류 등 55개는 농산물). 수산물 평균관세는 약 18%로 공산품 평균관세 6%보다 훨씬 더 높음

▶ 관세감축공식 : 2중 계수의 스위스 공식

- 최종관세 = (계수 × 기준관세) / (계수 + 기준관세)
- 제4차 수정안('08. 12. 6)에 따르면 선진국은 계수 8을 적용
- 계수 8일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는 약 70% 감축
 - 수산물 관세 평균 18% → 약 6% 수준으로 감축
 - * 그 간 우리나라는 공산품에서는 공세적이지만, 일부 비 농산물(수산물)에는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
- UR 미양허품목은 Mark-up(25%)을 적용하여 양허
 - 미양허품목은 기준관세가 25% 상향조정되므로 관세감축 초기년도에는 감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참고자료)
 - * 우리나라 수산물 348개 품목(해조류 제외) 중 미양허품목은 228개(65%)

▶ 분야별 자유화 (무세화)

- 자동차, 자전거, 화학, 전기전자, 수산물, 임산물 등을 대상으로 논의
 - 우리나라, 일본, EU, 대만 등은 수산물 무세화에 반대
-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수산물 수출국의 압력이 예상됨
 - * 수산물 무세화 제안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태국

나. 대응방안

- ▶ 일부 민감한 수산물은 신축성(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을 적용)을 부여하여 급격한 관세감축으로 인한 충격 최소화
 - 그 간, 우리나라는 공산품에서는 공세적이지만 일부 비 농산물(수산물)에는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
 - * 관세 10% 품목의 경우 계수(8) 적용시 4.4%로 감축되지만, 신축성(관세감축율의 50%)을 적용하면 7.2%로 감축 폭이 작아짐
 -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축성 부여는 금번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향후 양허안 (C/S : Country Schedule) 작성단계에서 양자협상을 통해 본격 논의될 예정
 - 동 양자협상에 대비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약 및 WTO 사무총장, NAMA 의장 면담시 우리 수산물에 신축성 부여가 필요함을 지속 설명
 - C/S 검증단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우리 수산물 신축성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의사를 최대한 관철

- ▶ 수산물 무세화 : 참여 불가 입장 고수
 - EU, 일본, 대만 등과 공조
 - '07년 EU가 수산물 무세화 불참 입장을 밝힌 바, Critical Mass(교역량 기준 9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Critical Mass가 달성되지 않으면 수산물 무세화는 실행되지 않음



Ⅲ. FTA 협상 동향

1. 한·EU FTA

가 추진 현황

- '07. 5. 6 협상출범 이후 전체 협상을 모두 7차례 개최
- 제7차 협상(5.13~15, 브뤼셀)에서는 금년내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고, 통상장관·수석대표간 협의 등 고위급 접촉을 집중하기로 합의
- 최근 분야별 회기간 협상을 통해 양측의 타결 가능성 수준 등 탐색
 - 농산물 양허 회기간 협상(9.18~19 서울, 11.26~27 브뤼셀)에서는 양측 양허안에 대한 수정방향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파악하는데 논의 집중
 - * 공산품 양허 회기간 협상 : 7.16~17(서울), 8.6~7(파리), 8.27~28(서울)

나 분야별 쟁점

▶ 농업(상품양허)

- 우리측은 농산물 수정양허안과 함께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를 묶어서 제시하는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을 제시('07.11)
 - EU측은 돼지고기, 낙농품 등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양허가 만족스럽다면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우리측의 예외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표명
- 회기간 협상(9.18~19, 11.26~27)에서는 EU측이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양허를 할 것을 다시 강조
 - 우리측은 FTA는 양자간 교역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양허할 수 없다고 하고 돼지고기, 낙농품의 민감성을 주장

▶ 위생·검역(SPS)

- 지역화 인정절차, 분쟁해결절차로 쟁점 압축

- 지역화 인정절차는 2년간 상호 이해 제고 등 점진적으로 접근 하고, 분쟁해결절차는 WTO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중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GI)

- GI 보호수준, GI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양측 입장 대립
- EU는 농산물·식품 GI도 포도주·증류주와 같이 대중의 오인·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는 보호방식을 희망
 - 선등록된 상표가 있는 동일·유사한 GI도 보호할 것을 주장
- 우리측은 선등록된 상표가 있을 경우 GI 보호를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 수산(상품양허 및 원산지)

- 대EU 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 적극적 협상 추진
 - * 대EU 수산물 교역은 지난 '04~'06 평균 20,727천\$ 적자였으나, '07년은 냉동 황다랑어 등의 수출 급증에 힘입어 18,500천\$의 흑자 시현
- 양측은 상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
 - EU측은 자국 수산물 전 품목 관세의 5년내 철폐를 제시
 - * 주요 수출품목 : 냉동황다랑어, 냉동오징어, 생선묵 등
 - * 주요 수입품목 : 냉동참다랑어 필렛, 조제골뱅이, 고등어
- 원산지 협상에서는 16류 조제품(생선묵 등)의 원산지 기준이 쟁점
 - 우리측은 느슨한 기준(4단위 세번변경), EU측은 엄격한 기준(완전생산기준)

다 향후 계획

- 제8차 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그동안 확대수석대표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추진
 - * '08.12.15~17일 확대수석대표회담 및 분과별 협상, '09.1월경 통상장관회담
- 양허 협상 가속화에 대비 쟁점 품목별로 단계적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 추진
 - 농어업계, 학계 등에 협상 동향을 수시로 전달,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2. 기타 FTA

가.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 '08.9월 제12차 협상에서 실질 타결되었고, 양국간 협정문안 법률검토 완료 후 협상 주요 결과 공개 예정
 - 쌀, 주요 육류·과채류·양념류 등 대부분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분류

나. 한·캐나다 FTA

- ▶ '05.7월 협상개시 이후 총 16차례 협상(상품 실무협상 : '07. 6, 9월, '08. 5월 포함)
 - 핵심사항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이나, 향후 협상 일정은 미정

다. 한·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FTA

- ▶ '08.1월 예비협약 후 제1차 협의(7월)를 개최하였으나 향후 일정은 미정
 -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고 농업분야 민감성은 높지 않음

라. 한·페루 FTA 협상개시 선언

- ▶ '08.11.21 APEC 계기, 양국 정상간 “FTA 협상 추진” 선언
 - 민감품목은 거의 없으나 잠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 예정

마. 한·호주/뉴질랜드 FTA 예비협약

- ▶ '08년 상반기에 민간공동연구 종료, 하반기부터 예비협약의 진행 중
 - 호주/뉴질랜드 모두 농산물 수출 강국임을 고려, 우리 농산물 민감분야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 중

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 ▶ '07.3월부터 '08.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논의(본회의 5회, 농업전문가회의 3회)
 - 한·중 FTA 협상은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전달
 - * FTA 협상 개시여부 등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회자료

■ 발행일 : 2008년 12월

■ 발행처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농림수산물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총괄과

Tel : (02)500-1858 Fax : (02)504-6659 www.mifaff.go.kr

■ 인 쇄 : (주)경성 Tel : (02)503-3223 Fax : (02)503-8338